청약예금 520만원 가입하여 90년 4월 21일 미광마린타워 72평형을 분양신청하였는데 당첨되어 90년 4월 30일 계약함. 당시 장세군은 평노조원이었고 사무국장은 90년 9월 5일자로 되었음.

- 계약금 27,490,000원과 1차 중도금 13,722,684원은 장세군의 자금으로, 2차 중도금 13,740,000원은 처형 김영숙의 자금으로, 3차 중도금 14,555,365원은 역시 처형 김영희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자금출처는 현재 계속 조사중에 있음.

③ 수사지연 사유

- 지금까지의 수사내용 및 박창수에 대한 부검결과 등을 종합하면 박창수는 자살한 것으로 보임.

- 자살동기 부분에 대하여는 박창수 사망시까지 간호를 담당한 처 박기선, 동생 황인갑 및 박창수와 함께 노조활동을 같이 한 이정호, 박성호등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여 수사에 진전이 없는 바, 당청은 유가족등이 사인규명을 요구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동인들이 하루빨리 조사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임.

(3) 검찰 수사결과의 의문점

1) 서울구치소에서의
부상 경위에 대하여

① 부상경위에 대한 혼선

박 열사의 사망 직후 서울구치소측은 박 열사가 서울구치소내에서 운동시간중 배구를 하다가 가볍게 머리가 찢겨졌다고 하였고, 노동부장관은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박 열사가 5월 4일 배구시합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검찰은 1차로 "혼자서 공놀이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였다가 5월 1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91년 5월 4일 09:45-10:10경까지 서울구치소 14중동 수용자 69명은 약 70평 규모의 제5운동장에서 공놀이, 달리기, 걷기 등의 운동을 하였고 사방으로 이동하던 중, 박창수는 맨 뒤쪽에서 걸어가다 갑자기 운동장 가운데 사방벽 모서리를 향하여 약 7-8m를 질주, 높이 145Cm 부위 모서리에 이마 충격"하였다고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였다. 한편 검찰은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준비서면에서 "박창수는 5월 4일 10:10경 서울구치소 제5운동장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공놀이 및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운동장 주위 사방벽 모서리를 향하여 약 7-8m가량 뛰어가서 높이 145cm의 벽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구치소에서의 박 열사의 부상경위에 관한 발표 내용이 부처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② 의도적인 자해행위인가 여부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다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인지, 그리고 자해행위로 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즉 반정부투쟁의 일환으로 자해를 하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밝힌 대로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대해 회의를 가져서" 자살할 목적으로 자해를 하였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 이후의 진행상황처럼 부상 이후의 민간병원으로의 이송을 겨냥하여 단순자해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당시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였다는 것인지, 공놀이를 하였다고 하면 공놀이중에 실수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놀이와는 상관없이 자해했다는 것인지, 또한 자해했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은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대해 회의를 가져" 마치 자살할 목적으로 교도소내에서 자해를 하였으나 수술 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박 열사의 부상당시 같이 운동장에 있었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부상경위를 조사하였다. 검찰의 수사자료를 보면 박 열사가 당시 공놀이 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잡으러 가다가 다쳤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자해를 했는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분명한 경위규명을 하지 않았다.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소자 이원철과 이홍규는 공놀이를 하는 것은 보았으나 부상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반해, 재소자 서근철과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 김순구, 유승길 등은 박 열사가 당일 공놀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유승길은 보다 구체적으로 "박창수는 부상 당일 자신과 함께 달리기를 하다가 자신은 다른 재소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 후로 박창수가 어떤 운동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김순구는 "부상 당일 박창수가 어떤 다른 재소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이전에는 운동장을 서너바퀴 뛰어도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김순구, 유승길 뿐만 아니라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었던 이명훈, 최상락 등의 진술에 따르면 "박창수는 평소 운동시간에 주로 걷기 또는 달리기를 하였으며 박창수가 씨름놀이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였다는 진술을 한 이원철과 이홍규의 경우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지도 않았을뿐더러 부상 이전에 박 열사가 누군 지도 몰랐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박 열사는 부상 당일 공놀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이원철과 이홍규는 부상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다쳤는지 자해를 했는지는 이들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조사한 사람들중 당일 부상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재소자 고재성과 서근철인 바, 이들은 사망 당일인 5월 6일 조사를 받은 이후 서근철이 5월 29에, 고재성이 5월 30일에 추가조사를 받았다. 이들의 진술은 대략 일치하는데, 특히 당시 부상장면을 구체적으로 목격한 고재성의 진술에 따르면 ㄱ. 당시 운동시간을 알리는 핸드폰 사이렌소리가 나서 모두 입방하러 들어가는 상황(이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공놀이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ㄴ. 자신과 한방에 있는 김정성이라는 형뻘 되는 사람이 철봉쪽을 향하여 천천히 뛰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도 조금이라도 그곳에 있다가 들어갈 생각으로 당시 입방을 하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재소자들의 맨뒷쪽에서 이들과는 반대로 서 있었는데 자신의 앞쪽에 있는 박창수가 급하게 벽쪽으로 뛰어가더니 벽면 모서리부분에 이마를 부딪히면서 그 자리에 뒤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고재성은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가 다치지 않았다는 근거로 "당시 박창수가 만약 공을 가지고 그것을 받을려고 뛰어가는 상황이라면 위쪽을 쳐다보면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턱부분이 다쳤을 것인데 그 당시 박창수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이마 부위로 벽면 모서리를 들이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박창수가 의도적으로 자해할 마음이었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자료에 비추어 보면 박 열사는 공놀이를 하다가 실수로 다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에서든 지간에 자해할 생각으로 일부러 머리를 부딪힌 것으로 판단된다.

③ 자해행위의 동기

서울구치소에서 부상당한 것을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수사기록 어디에서도 박 열사가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회의를 가졌다"거나 자살할 조짐이나 낌새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구속된 후의 박 열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접견 표와 박 열사와 같은 방(14동중 5방)에서 생활하였던 재소자들의 진술이다.

먼저 접견표를 살펴보면, 박 열사는 면회온 조합간부 등 지인들에게 "조합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위해 노력합시다"(2월 25일), "지내기에 좋습니다. 이 기회에 공부하고 나가렵니다"(3월 4일), "밖에 계신 분들이 고생이 많겠어요. 이 시기에 밖에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안에 시설이 잘돼 있어서 지낼 만해요"(3월 19일), "마음 같아서는 빨리 나가서 회사와 실질적인 대화를 좀 해서 정상적인 분위기를 만들까 하는데 법이 또 그렇습니까"(4월 3일), "조합에서 내 걱정하느라고 일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내 걱정 말고 일에나 신경쓰시라고 해요"(4월 16일), "책좀 넣어줘요. 소설책도 좋구요"(4월 18일), "조합원들과 간부들에게 인삿말 좀 전해줘---조합원들의 활동은 어때?"(4월 26일) 등등 노조운동에 대해 회의를 가졌다고 볼 만한 징후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접견표에 따르면, "면회올 때 화, 목은 조합원과 면회하고 나머지는 가족과 면회 좀 했으면 합니다.---- 저도 가족과 면회를 못해서 가족안부가 궁금합니다"(3월 5일), "(모에게) 오셨어요. 여기 있으니까 가족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는데 가족이 안 와서요"(3월 6일), "(모에게) 신문이나 T.V에서도 모두 나왔으니까 애들이 걱정이예요. 애들이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래요. 당분간은 유치원에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왜 집사람은 면회를 안 와요. 지금 여기에 온지 1달이 넘었는데도 안 와요"(3월 11일), "(부인에게) 면회를 못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걱정도 많지만 네 걱정 때문에 내가 맘이 편치 못하다"(3월 13일), "(부인에게) 왜 그렇게 편지를 슬프게 썼노. 당분간 면회를 자주 왔으면 좋겠어.--- 아버님이 약주 많이 하셔도 네가 이해 좀 해라. 내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너 건강이야. 요근래에 왠지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안정이 안돼. 하여튼 당분간 성남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2번정도 와주라"(3월 16일), "(모에게) 처는 부산에 혼자 못있어예.---- 집걱정을 안할 수 있습니까? ---- 혼자 있으면 더 안먹는다니까요"(3월 18일), "신형, 오늘 내려가시면 집에 전화해서 잘 있더라고 전해주세요.

지금 집사람이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모양입니다"(3월 19일), "(부인에게) 약좀 지어서 먹거라. 애는 잘 있나. --- 병원에도 좀 가봐라. 네가 나 때문에 신경써서 그런 것 다 안다"(3월 20일), "(처보고 이사를 하라고 그랬나라는 어머니의 질문에 대해) 예, 처가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3월 27일), "(지인들에게) 들어왔으니깐 애도 걱정되고 집사람이 또 몸이 안 좋으니깐 여간 걱정되는게 아니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깐 걱정해서 소용없지만 제일 걱정되는게 생계문제지"(3월 29일), "(모에게) 처가 요번에 면회 와서 막 울더라구요. (모가 "울긴 왜울어. 친정가서 있으면서"라고 하니까) 자기도 속이 상하겠지요. 제가 친정가라고 그랬어요"(4월 1일), "(남에게 자주 우리 이야기하지 말아요라는 부인의 말에) 어째 안할 수가 있나, 걱정이 되는데. 왜 이리 철딱서니가 없나"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런단 말이야) 내 말을 안 들으니 그러지. (그럼 요앞에 와서 방 얻어놓고 살까?) 성남에 와서 살란 말이다. (어쨌건 내 걱정은 말고 부모들이나 남한테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네가 걱정이 되고 또 시어머니하고 왜 그리 안 통하나?"(4월 6일), "(부인에게) 임대주택 관계는 일단 유보하자. 성남에 와 있으면 어떠냐? 접견오기도 쉽고. 지난 주는 접견이 한 번도 없어서 그렇더라. (어머니하고 나와의 문제는 둘의 문제이니까 자기는 중간에 끼어들 필요없어요) 내 입장에서 참 힘들다"(4월 29일), "(부인에게) 약간 당분간 자주 와주면 좋겠어. 당신이 힘든 것 알지만. (당신은 아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왜 안하겠어. 조금만 더 신경써 주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5월 2일), "(부인에게) 찬이 엄마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 --- 그래그래 알았다. 당신과 아이들이 잘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고통을 감수해야지" (5월 3일) 등등, 박 열사는 구치소에 있으면서 부인 등 가족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상 전날인 5월 3일 부인에게 한 말 등에 비추어볼 때 박 열사는 가족에 대한 걱정은 많이 하였으나 가족을 버리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도리어 부상 전날인 5월 3일 "당신과 아이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고통을 감수해야지"라고 한 다음 자해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박 열사는 자살을 시도했다기 보다는 무언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일단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검찰은 박 열사와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 8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이들은 "박창수가 평소에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던가요", "박창수가 투신자살했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럴 조짐이 있지는 않았는가요" 등의 수사관의 질문에 한결같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없다", "박창수가 평소에 말이 없고 내성적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자살할 정도로 심적 부담 및 어려움은 없었다고 본다", "평소 대화는 없었고 내성적이었지만 식사도 잘하고 운동도 적극적이었으며 동료들과의 생활도 원만한 것으로 보여 자살한 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박창수가 자신에 대한 비관이나 회사의 노조에 대해 비관적인 말을 한 적을 들어본 사실이 없다", "그가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은 평소 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뜻밖의 일로 여겨진다. 평소에 그럴 만한 느낌을 받지 못했고 밥도 잘먹고 저녁 오락시간에 박창수가 윷놀이를 하자고 떼를 쓸 정도였고 수감생활도 다른 재소자보다 충실히 하여 그가 왜 자살을 하였는지 모르겠다", "박창수가 자살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그럼 낌새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의 성격은 상당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책을 많이 들여다보곤 하였다. 그런 박창수가 자살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등등, 그 어느 누구도 박 열사가 자살할 낌새나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박 열사와 나란히 잠자리를 하였던(재소자 조영석 진술) 재소자 염병기의 진술에 따르면, 접견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자기 아들이 목이 붓는 병에 걸려서 안타깝다든지 자기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중이니 처와 아들이 계속 전세를 살아야할 지 부모가 있는 곳으로 보내야할 지 막막하다는 말을 하고 자기 직장의 임금교섭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하는" 등 가정문제와 노조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였던 사정이 엿보이는 정도이다.

다른 한편 박 열사는 안양병원 이송후 부상경위와 관련하여 안양병원 의사 이충선등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놀이를 하면서 공을 쫓아가다가 벽에 부딪혔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이정호씨에게는 "구치소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으라"고 말을 하면서 말꼬리를 흐렸다고 하여 무언가 다른 경위가 있음을 내비추었다. 이에 대해 이정호씨는 진술 당시(1991년 7월 25일)에도 "지금도 석연치 않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시국사건으로 수감중이었던 대학생 박정규와 이성우는 박 열사가 머리를 부딪힐 당시 "노태우 정권 타도"라는 구호소리가 운동장 앞에 있는 14동 6방에서 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부상 당시 현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박 열사가 구호를 외쳤다고 진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상과 같은 수사자료에 근거하여 구치소내에서의 이마 부상경위를 살펴보면, 박 열사가 공놀이를 하다 실수로 다친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자해행위를 한 것은 틀림없으나, "구속된 후 노조운동에 대해 회의를 가져" 마치 자살할 목적으로 자해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는 전혀 없다.

2) 검찰이 주장하는 자살 동기에 대하여

①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박 열사가 수술 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순간적인 충동심으로 투신자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박 열사가 자살할 목적으로 구치소내에서 자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자살할려고 하였으나 수술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재차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열사가 자살할 목적으로 구치소내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② 검찰이 조사한 참고인들에 따르면, 그 어느 누구도 박 열사가 안양병원 이송후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도리어 박 열사는 안양병원 이송후 재차 서울구치소로 수감되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당시 한진중공업 노조 사무국장으로서 5월 5일 14시경부터 5월 6일 01:00경까지 안양병원에 있었던 장세군을 통해 홍상태라는 부산지역 안기부 요원과의 전화통화 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장세군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5월 5일 17시경 중환자실에서 박창수에게 '그다지 큰 상처가 아니면 구치소내의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교도관의 말을 전해주자 박창수 말이 교도소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교도소내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잠시후 박창수가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여 제가 링게르병을 들고 화장실을 따라갔고 교도관이 저희들을 따라왔으며 화장실에서 박창수가 담배를 한대 피우고 싶다하여 처음에는 교도관들이 난색을 표하였으나 양해를 해주었고 박창수는 저에게 교도관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홍이야기는 잘되나 하면서 홍한테 추진해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저는 18:00시경 병원 1층 응급실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홍상태에게 전화를 하니 홍상태는 자초지종을 설명듣고난 다음 오늘은 휴일이니 연락하기가 어려워 내일 일찍 알아보고 10시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다. 저는 전화를 마친 다음 중환자실로 올라가 계속 간호를 하고 있던 박기선과 박창수에게 홍상태가 내일 10시까지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내용을 알려주고 옆에 있던 이정호(노조 직무대행)에게 같은 내용을 말해주고 계속 추진해보겠다고 하니 이정호도 그게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19:00경 박창수가 화장실을 가자고 하여 링게르병을 들고 따라가니 박창수가 괴로운 표정을 다시 지으며 담배 한대를 피면서 '홍하고 내가 직접 통화할 수 있겠나'라고 물어보기에 제가 걸어주겠다고 하여 중환자실 옆 공중전화로 다시 홍상태에게 전화를 걸어 박위원장이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니 홍상태가 전화를 바꾸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그 수화기를 박창수에게 바꾸어주려고 하니 옆에 있던 교도관이 안된다고 하면서 제지하였고 이에 제가 홍상태에게 안된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자 홍상태는 그러면 교도관을 바꾸어달라고 하여 제가 그 수화기를 교도관에게 바꾸어주니 교도관은 전화를 바꾸어줄 수 없다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난 5분뒤 제가 맨 처음 전화하였을 때 안양병원 전화를 가르쳐준 바 있는데 홍상태는 그 전화번호로 안양병원 중환자실에 전화를 걸었고 제가 들어보니 교도관과 홍상태가 바꾸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싸우는 통화를 하였고 잠시후 교도관이 박창수의 아버지에게 그 전화를 바꾸어주자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약 30분뒤 홍상태가 다시 중환자실로 전화를 하여 교도관과 사과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없어서 전화하는 내용을 듣지 못하였지만 중환자실 앞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사과내용의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들었다."

장세군의 진술과 검찰의 6월 1일자 수사결과 발표 및 이정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박 열사가 구치소에서 자살을 목적으로 자해를 하고 나서 그 수술결과가 비교적 경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기는커녕 안기부의 힘을 빌어 구치소에 재수감되지 않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위 진술들을 종합하여 보면 박 열사가 구치소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은 자살을 목적

으로 했다기보다는 구치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일단 추측해볼 수 있다.

③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열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순간적인 충동심에서 투신자살하였다"는 근거의 하나로 사망 직전 중환자실에서의 초조해한 행적을 들면서 "91년 5월 6일 04:30경 박창수가 침상에서 3회정도 일어나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무엇인가 망설이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왼손에 링게르병을 들고 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 또한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박 열사와 함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자신의 부인 강삼순을 간병하기 위하여 5월 5일 저녁 8시경부터 중환자실에 있었던 안종석씨(당시 76세)가 진술한 내용이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박 열사가 사망 직전 중환자실을 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위 안종석씨, 중환자실 환자였던 허영자씨,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던 홍문숙 간호원 등 3사람인데, 위 내용은 안종석씨만이 진술한 내용이다. 당시 시사저널 잡지의 문정우 기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안종석씨를 만나 인터뷰를 하여 동일한 진술을 들은 바 있는데, 상황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망경위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안종석씨의 진술내용은, 박 열사가 중환자실을 나간 시간이 검찰이 발표한 04:30보다 10분 빠른 04:20일뿐 검찰발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5월 6일 01경부터 한숨을 자고 박창수가 밖으로 나가기 1시간전쯤에 일어나 잠이 오지 않아 처의 침상에 걸어앉아 있는데 04:20경 박창수가 몹시 망설이는 듯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누웠다 하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동작을 3번이나 반복하다 침상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발표한 사실 자체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실 자체만 가지고 박 열사가 "초조해했다"거나 나아가 "수술 결과 비교적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판명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투신자살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 아닐 수 없다.

5월 10일자 검찰의 수사발표는 "5월 6일 4시 10분경 대학생등 20대 성명불상자가 박창수를 면회"했다고 발표하여 박 열사가 사망 직전 무엇인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겼으나, 이는 검찰이 참고인진술등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참고인진술 등 수사기록 어디를 보아도 그와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다만 당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였던 오의순 간호원이 "새벽 4시경쯤 동생이라고 하는 20대 가량의 남자 1명이 들어와 박위원장과 10분 내지 15분 가량 이야기를 나눈 뒤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의순의 위 진술은 당일 중환자실에서 박 열사의 계호근무를 하였던 유영국 교도관의 진술과 비교하여 보면 재확인의 필요성이 있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5월 6일 새벽 4시경을 전후로 하여 안양병원 중환자실 근처에 있었던 사람은 환자들을 제외하면 중환자실 간호원 홍문숙과 오의순, 당일 계호근무를 하였던 교도관 최형식과 유영국, 그리고 박 열사의 이복동생 황인갑 뿐이었다. 그런데 교도관 유영국의 진술에 의하면, "황인갑은 5월 6일 01:30경에 장세군, 이정호를 여관방에 데려다주러 나갔다가 당일 감독교도관이었던 이상희 교감을 만나 술을 한잔 하고 약 02:30경에 들어와 중환자실에 들어가 박창수를 잠깐 보고 나와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약 30분후에 중환자실에 다시 들어가 바로 박창수와 같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으며 (시간이 03:20경이었다) 이 때 화장실 앞에 가서 확인을 하였는데 박창수와 황인갑은 휴게실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5-6분 지체하였으며 이후 황인갑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나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의순과 유영국의 진술은 서로 어긋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오의순의 진술을 근거로 박 열사가 무엇인가에 쫓겨 충동적으로 자살한 듯한 인상을 풍긴 검찰의 위 수사발표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3) 투신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소리에 대한 참고인들의 진술

① 검찰 수사결과는 박 열사가 투신자살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04:40경 위 병원건물 6층 옥상에서 '우-와-'하는 소리를 지르고 2-3분 뒤 '퍽' 소리를 내며 병원건물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②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검찰의 위 수사결과는 안양병원 525호실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진술에 의거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525호실 환자 김경님, 안향수, 전계자 및 지연실에 대해 참고인 진술을 받았는데(김경님의 진술에 따르면 525호 환자는 5명이었다고 하는데 1인의 진술은 없음), 이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검찰 발표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들의 진술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매일 4시 30분경에 머리가 아파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약을 먹곤 하였는데 그 날도 약을 먹은 후 약 10-20분쯤 지나서인데 남자의 '으악!'하는 비명소리가 나더니 땅에 떨어지는 것같은 '퍼억!'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리고 창문이 흔들릴 정도 진동이 있어서 방안에서 창문 밖을 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약 15분 가량 지나서 1층 땅바닥 어린이놀이터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여자가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다..... 525호실에는 5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자신이 깨어서 위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는 지연실이만 깨어있어서 같이 비명소리를 들었고 다른 사람은 비명소리와 떨어진 진동 때문에 모두 잠을 깼다."(김경님)

"당일 머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깊은 잠이 들지 않고 있는데 위 시경에 등산가서 고함치는 것같은 '이야'하는 아주 큰 소리가 나더니 바로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나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끼리 뭐가 떨어졌나보다 하였으며 그 후 약 20-30분쯤 후에 1층 땅바닥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떤 여자가 찬희 아빠, 찬희아빠 정신차리세요 하면서 우는 소리 나서 그 때 사람이 떨어졌나보다 생각하였으며 그후에 제가 화장실에서 내려다보니까 시트만 덮혀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안향수)

"다른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새벽 4시 40분경 갑자기 병원옥상에서 사람이 괴롭고 답답할 때 지르는 '아---아--아--'하는 긴 외침소리가 들려오므로 저는 앞침대에 있는 전계자 할머니에게 '아이구 환자가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면 이 새벽에 옥상에 올라가 저런 소리를 지를까? 환자가 목소리도 크다'라고 하자 전계자 할머니도 '그러게 말이야'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저는 '나도 목이 성할 때는 가끔 산에 가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기분이 좋아지던데----'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퍽'하면서 흡사 쌀가마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같은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 아 하는 외침소리가 난 후 약 3분 후에 퍽하는 소리가 난 것같다."(지연실)

"저도 그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 신문기자가 어찌어찌 알고 찾아왔기에 방금 지연실 할머니가 말한 대로 대답해 주었는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 비명소리라고 기사가 났던데 그 기사는 엉터리이다. 등산을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고함치듯이 '아---'한 뒤 2-3분쯤 지나 퍽하는 소리가 났던 것이다. 절대로 사람이 떨어지면서 내는 비명소리가 아니었다..... 퍽 소리가 난후 10분정도 지나 '여보 정신차려요', '찬이아빠 이러면 안되요'라며 울먹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 때서야 고함치던 사람이 땅바닥에 투신자살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전계자)

이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검찰의 발표내용이 이들의 진술에 충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고함을 지르고 곧바로 퍽 소리가 났는지 2-3분 후에 퍽 소리가 났는지에 대해 525호 환자들 내에서도 진술에 차이가 있는데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2-3분 후에 소리가 난 것으로 보인다.

③ 검찰은 525호 환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박창수씨가 투신자살한 것이라고 결론지었으나, 이러한 결론에는 많은 취약점이 있다. 박 열사가 옥상에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난 '퍽'소리를 5층 환자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땅바닥에서 가까운 1층이나 2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다 큰 소리로 듣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것도 1층에 떨어지는 소리를 5층 사람이 들으면서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을 느꼈다거나 '흡사 쌀가마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로 들었다면 1, 2층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진동과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안양병원은 지하1층, 지상 5층의 건물로서 5층이 가장 높은 층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1, 2층 사람 중에 그러한 소리를 들은 사람은 전혀 없다. 사망당일 1층 정문앞 층층대 바로 밑에서 안양병원 경비인 오순용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오순용씨는 "당시가 고요한 밤인데 변사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떨어졌다고 하는데 못들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당시에 저는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들었다면 그곳으로 즉시 갔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 오순용씨는 "당시에 졸거나 자리를 잠시 피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계호교도관 최형식씨 또한 박 열사가 사라진 것을 알고 찾는 과정에서 "1층으로 내려와 정문안 층층대 바로 밑에 있는 수위에게 환자 한사람 나가는 것을 못보았느냐고 하였드니 못보았다고 하기에 혹시 졸았는가 생각했다가 마침 책상위에 라면이 있어서 졸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사망당일 2층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였던 오의순 간호원도 "혹시 그시경 비명소리같은 것을 못들었는가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전혀 듣지를 못하였

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도 당일 근무를 하였던 최형식, 유영국 교도관, 홍문숙 간호원 등의 경우도 수사관들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면 박 열사를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듣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④ 수사기록에 의하면 525호실 환자를 제외하고 앞에서 언급한 안종석씨와 5월 5일 22시부터 5월 6일 07:30까지 3층 복도 간호사실(박 열사가 있었던 중환자실은 2층)에서 근무를 하였던 강영신 간호원이 525호 환자들과는 다른 시간에 다른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안종석씨는 "박창수가 4시 20분경에 밖으로 나간 후 곧 중환자실옆 테레비가 있는 휴게실(산부인과 휴게실)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쿵, 아악!'하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다 다시 중환자실에 들어와---"라고 진술하였으며, 강영신 간호원은 "5월 6일 04:30쯤 산부인과 병실쪽에서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건이 1층 어린이 놀이터바닥 콘크리트에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들은 소리는 몇가지 점에서 525호 환자들이 들은 소리와는 명백히 다른 것이다. 525호 환자들의 경우 "등산을 가서 산꼭대기에 올라서서 고함치는 듯한" '아--아--아' 소리(전계자씨는 '비명소리가 아니었다'라고 진술할 정도임) 후에 '퍽'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안종석씨는 '쿵' 소리 다음에 비명소리인 '아악!'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강영신 간호원은 둔탁한 '퍽'하는 소리가 아닌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강영신 간호원의 경우 "높은 곳에서 무거운 물건이 1층 어린이 놀이터바닥 콘크리트에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큰 소리로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소리방향이 2층에 있던 산부인과 병실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안종석씨가 '쿵, 아악!' 소리를 들은 곳이 산부인과 병실앞 휴게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525호실 환자들이 들은 소리와는 다른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종석씨와 강영신 간호원이 525호 환자들이 들었던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들었다면 그 진동이나 크기가 훨씬 더 했을텐데 이들의 진술속에서는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없으며, 만약 이들이 들은 소리가 525호 환자들이 들은 소리와 똑같다면 경비와 간호원, 교도관 등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던 시간대도 525호 환자들과 약 10분간의 차이가 있다.

⑤ 검찰이 525호 환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박창수씨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이러한 불가사의한 상황을 해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525호 환자들이 들었던 소리는 박창수씨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으면서 발생된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박창수씨를 다른데서 죽인 후 투신자살로 죽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가 소리를 지른 다음 어떤 물체를 이용하여 옥상 밑바닥을 친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4) 부검 결과에 대하여

① 검찰은 박 열사가 투신자살하였다는 근거로 1991년 5월 7일에 있었던 부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검찰이 가족들의 참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강제부검을 실시한 것의 의문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991년 5월 7일 13:30경 박 열사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안양병원 영안실의 뒷벽을 망치로 부수고 최루탄을 쏘면서 영안실에 난입하여 박 열사의 시신을 탈취한 후 유족과 합의후 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던 약속을 무시하고 같은 날 14:30경 수원지방검찰청 박종환 검사의 지휘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재관, 강신옹 박사팀이 박 열사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였다. 유족이나 노동단체들이 사인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관련자들의 의혹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부검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관련자들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실시하였어야만 할 것이다.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부검의 실시는 의혹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② 검찰이 발표한 부검결과에 따르면 "외표소견으로 양쪽 족관절 부위에 복합골절이 있고, 좌측 수부, 우측 하퇴부, 족부, 좌측둔부 외측에 각 피하출혈이 있고, 내부소견으로는 좌골부위에 복합골절이 있고 흉부 및 요추골절이 있으며 우측폐와 비장, 간에 파열이 있으며, 직접사인은 심폐파열 및 실질내 출혈"이라고 하면서 "본 해부 소견중 양쪽족관절부위의 골절은 거의 같은 정도의 충격을 받아 생긴 것으로 변사자는 추락시 몸의 균형을 이루었고, 이는 추락할 때 점프형태(입위자세)로 뛰어내린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검의들은 부검감정서에서 "본 시체의 경우 외표에서는 전반적으로 경미한 손상이 관찰될 뿐이나 흉복강내 장기 및 골격계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등 손상의 형태는 추락에 합당한 소견"이라면서 "양족부의 분쇄압박 골절 및 골반골의 분쇄골절상태로 보아 추락시 추락면에 의하여 양족부가 일차적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는 입위추락으로 판단되며 전도시 둔부가 이차적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③ 박 열사가 투신자살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부검결과와 검찰의 발표내용를 토대로 추락모습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박 열사는 5월 6일 04:30경 중환자실을 나가 04:40경에 6층 옥상에서 "우-와-와-와"하는 소리를 지르고 약 2-3분뒤 "퍽"소리를 내며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인바, 박 열사는 슬리퍼를 신고서 한팔에 링게르주사를 꽂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링게르 병을 든 채 2층 중환자실에서 계단을 통해(경비 오순용의 진술에 따르면 병원 엘리베이터는 06시이후 21시까지 운행되었음) 6층 옥상에 10여분내에 올라갔다. 그리고 1층 놀이터운동장에서의 발견 당시 모습을 감안할 때 박 열사는 중환자실에서 나온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한팔에는 링게르 주사를 꽂고 다른 한손으로는 링게르병을 든 채 6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뛰어내렸는데 양쪽족관절의 상태로 보아 조금도 경사짐이 없이 똑바로 두발을 내딛으면서 링게르가 꽂혀있는 팔을 든 채로(팔은 부러지지 않았음) 둔부로 주저앉았으며 그러면서 사뿐히 머리 뒷부분과 손을 시멘트바닥에 내려놓았다. (머리는 깨어지지 않았으며, 부검팀도 두개골 골절 등 두부손상은 사망 당시에 발생한 손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박 열사를 부검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도 이에 대한 의문을 의식해서인지 부검감정서의 참고사항란을 통해 추락이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위추락이 31%에 해당된다는, 일본인 학자의 논문을 인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위추락한 이후에 박 열사와 같은 시신상태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검찰도 밝힌 바와 같이 "위 병원 옥상구조는 옥상사방 변두리에 약 70센티미터 높이의 난간을 벽돌로 쌓아 시멘트로 미장되어 있으며" 그 폭도 매우 좁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감안한다면 슬리퍼를 신고 한 팔에는 링게르주사를 꽂고 다른 한손에는 링게르병을 든 박 열사가 난간을 뛰어넘어 똑바로 떨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상상하기 힘들다. 그리고 검찰 발표처럼 박 열사가 순간적인 충동심으로 자살을 하였다고 한다면 왜 슬리퍼를 신고 한팔에는 링게르주사를 꽂고 다른 한손에는 링게르병을 든 채, 조심스럽게 난간에 올라가, 그것도 '우-와-와-' 소리를 지르며 똑바로 떨어졌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박 열사가 양발로 시멘트바닥에 떨어졌을 경우 525호 환자들이 들었던 것처럼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생기거나 '흡사 쌀가마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같은 소리'가 발생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시신 발견 당시 6층 옥상에서 떨어진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경미한 손상이 관찰될 뿐"인 상태에서 유족 등과의 합의도 무시한 채 영안실에 경찰을 투입하여 시신을 빼앗아 강제로 부검한 뒤 "흉복강내 장기 및 골격계가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는 등 손상의 형태는 추락에 합당하다"는 내용의 검찰 발표는 그 자체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아니할 수 없다.

5) 안기부의 개입의혹에 대하여

① 안기부 요원 홍상태가 박 열사와 장세군 등 한진중공업노동조합 간부들과 관계를 맺어왔고, 박 열사가 안양병원에 입원중일 때에 병원으로 몇 차례 전화를 하였으며, 최소한 사망 다음날 안양병원에 있었다는 사실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② 검찰은 5월 10일 발표한 수사결과에서는 안기부 관련 부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진상조사단에서 안기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장세군, 홍상태 등을 소환하여 신문하고 6월 1일에 이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그 발표내용의 요지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검찰의 발표는 전적으로 홍상태와 장세군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고, 홍상태가 안양병원에 전화를 걸어 박 열사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교도관의 거부로 통화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교도관의 진술도 일치한다.

③ 박 열사는 1990년 10월초경 장세군을 통하여 홍상태를 만나 술을 함께 마시고, 홍상태가 박 열사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우겨 할 수 없이 홍상태를 박 열사의 집까지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홍상태는 전세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6만원짜리 단칸방에서 가족 네식구가 어렵게 살고 있는 박 열사에게 "노조위원장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고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결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 열사가 구속된 이후 홍상태는 1991년 4월 25일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카페에서 장세군과 노조 조직부장

한재문을 만나 전노협 탈퇴와 해고자 복직을 맞바꾸자고 제안하였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는 장세군, 한재문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또 같은 달 말경에는 장세군의 주선으로 홍상태와 노조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정호가 부산 남구 민락동 소재 횟집에서 만난 자리에서 홍상태는 "박위원장 문제는 해고되지 않을 정도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 임금인상과 단체협약문제도 최대한 신경을 써보겠다. 주위에서 볼 때 노조가 변한 것처럼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전노협을 탈퇴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회유를 하였다. 홍상태가 4월 말경 장세군, 이정호를 만난 사실은 검찰 수사결과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안기부가 주도하여 한진중공업노조를 전노협으로부터 탈퇴시키기 위하여 공작이 전개한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노조 회계감사인 김주수에 의하면 1991년 5월 6일 19:00경 안양병원옆 공중전화박스 앞에서 홍상태를 만났는데 홍상태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장국장과 약속했는데 급히 만날 수 없겠느냐"고 물으면서 마치 장세군을 자신의 부하처럼 불렀는데, 홍상태는 176센티미터 정도의 키에 금테안경을 쓴 40대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홍상태는 장세군 이외에 노조간부를 만난 바 없다고 하여 김주수의 진술과 상치하고 있다.

한편 홍상태나 아니면 안기부 직원이 5월 5일 저녁에 안양병원에서 박 열사를 만났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 부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한 것은 없고 또한 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발견된 바도 없다.

④ 한편 박 열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박 열사가 있던 감방에는 인신매매범이라는 자가 같이 있었는데, 이 자는 박 열사에게 잔인한 인신매매의 수법을 들려주면서 "전노협, 연대회의를 탈퇴하지 않으면 당신 마누라를 납치하겠다"는 위협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여 박 열사를 협박하였으며, 박 열사는 처(박기선)와 면회할 때 "누가 와도 문 열어주면 끝장이니 문 열어 주지마라. 용찬이 유치원 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니 성남 시댁에 가 있으라"고 말하였고, 병원에 입원한 후 처에게 인신매매범이 같은 감방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고 한다.

검찰은 박 열사가 부상당할 당시에 같은 사방에 있던 재소자들은 모두 조사하였으나, 박 열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당시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 모두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 진상조사 단측에서는 박 열사가 수감될 당시에 같은 방에 있었던 재소자 명단과 특히 인신매매와 관련한 재소자가 있었는지에 관한 자료를 서울구치소측에 요청하였으나 그에 관한 자료를 받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⑤ 결국 안기부가 한진중공업노조에 대해 무언가 공작을 진행했음은 분명한 것 같다. 특히 홍상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노협 탈퇴를 주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자명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안기부의 공작과 박 열사의 사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하다.

2. 이내창 열사 사건

(1) 사건 경위

이내창 열사는 1962년 서울에서 5남 2녀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서울의 청구국민학교, 대경중학교, 중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군대를 제대하고 1986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에 입학하였다. 1987년 만화판화패 동아리 "새길"의 회장, 1988년 조소학과 학생회장을 맡았고, 1988년 11월에 실시된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생회장 선거에서 학생회장으로 당선되어 1989년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열사는 1989년 8월 열의를 가지고 2학기 총학생회 사업을 준비하였다. 8월 10일 평소 친분이 있는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4학년 김정환씨의 방문을 받고 그가 보안사에서 당한 고문과 생매장 위협 및 프락치 강요에 대해 의논하였다(김정환씨는 보안사에 끌려가 프락치를 강요받다가 8월 9일 석방되었다). 김정환씨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머물면서 8월 13일 예술대학 학생회에서 보안사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고 14일 아침에 서울로 올라갔고, 이 열사는 14일 오후에 행적이 묘연해졌다.

14일 10:00-11:00경 학교내의 지리나 상황에 대해 생소한 듯한 신원미상의 남자 1인과 여자 1인이 예술대학 조소학과 실기동에 찾아와 열사의 소재를 문의하였고, 12:00-13:00경 이 열사가 내리 소재 "중앙슈퍼"에서 신원미상의 남녀 2인과 함께 음료수를 함께 마셨다. 이후 이 열사는 안성과 학교를 시내버스로 두어차례 오고갔으며, 최종적으로 16:45경 학교안 예술대학교 앞에서 안성행 시내버스에 승차한 것이 목격된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이 열사의 15일의 행적은 여수에서 발견되었다. 08:00경 여수에서 거문리행 신영훼리호에 승선하여 12:50경 거문리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동행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격자의 증언에 의하면 13:00-13:30경 사이에 방파제 옆에 이 열사가 앉아 있어서 10여분간 대화를 하였다고 한다. 14:00-15:00경 거문리 선착장으로부터 100여미터 떨어진 중국음식점에서 이 열사가 혼자 볶음밥을 먹은 사실을 음식점 주인이 확인하였다. 15:00경 이 열사가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과 함께 거문리 소재 "삼호다방"에 들어왔는데, 신원미상의 남자는 바로 나가고 신원미상의 여자와 함께 음료수를 마시고 별 대화 없이 20여분간 있다가 나갔으며 찻값은 여자가 지불한 것이 다방여종업원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여자는 키가 작았고 머리가 어깨에 닿았다고 한다. 15:30경 이 열사가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과 함께 거문리와 덕촌리를 왕래하는 '덕성호'라는 배를 타고 건넌 사실이 뱃사공에 의해 확인되었다. 뱃사공에 의하면 이 열사가 위 남녀의 사진을 찍어주었고, 세 명의 뱃삯을 여자가 한꺼번에 지불하였다고 한다.

그 후 덕촌리에서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18:30경 덕촌리 유림해수욕장에서 여행객 신선옥이 방가로에서 나와 이를 닦으러 샤워장으로 가다가 나무뿌리에 걸린 상태로 물위에 엎드려 있는 이 열사의 시체를 발견하고 동네 청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김성우, 박정홍, 김적선, 지강선등 4명의 동네 청년들이 이 열사의 시신을 인양하였는데, 사후경직이 없고 배에 물이 차지 않는 등 살아있는 것 같아 2,3회 정도 가슴을 눌러 인공호흡을 시도하였다고 한다. 발견 당시 사체의 상태는 상의, 안경, 혁대 및 시계가 없고 하의와 양말, 신발은 그대로 착용한 상태이며, 얼굴, 팔, 다리, 가슴에는 외상이 있으나 손에는 전혀 외상이 없었다.

부검 결과 사망시간이 식사시간 1시간 내지 2시간 이후로 나타났으므로, 결국 이 열사의 사망시간은 16:00 내지 17:00경으로 추측된다.

사체 발견후 15일 20:00경 경찰 1인, 방위병 2인, 사진사 1인(나하나 사진관)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당시 사체 주위에 20여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22:00경 평소와 달리 보건소장은 익사체 발견 연락을 받고 광주시경 경무계장과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시체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다른 익사체 발견시에는 사진사에게 구체적으로 촬영부위와 매수를 지정하여 지시하였는데 반하여 당일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 16일 오전부터 동행인이 있으면 나와줄 것을 요청하는 새마을방송을 거문도에서 실시하였으나 동행인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여객자들에 대한 검문을 형식적으로 실시하였다. 당시 사체를 본 사람들 대부분이 타살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경찰은 여객자들에 대한 검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16일 10:00경 유가족이 덕촌리에 도착하여 신분을 확인하였다. 16일 16:00경 학생진상조사단이 여수에 도착하고, 17일에는 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18일 03:00경 여수 전남병원에 시신을 안치하였고, 19일 11:40경부터 13:00경까지 부검을 실시하였다. 부검집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팀 소속 이정빈(서울대 법의학), 송재용(중앙대 병리학)이 담당하였고, 유가족 1인(큰형), 학교대표 1인, 학생대표 1인이 참관하였다. 부검결과는 추체뇌 파열, 얼굴·팔다리의 타박상, 몸통의 찰과상, 머리의 가벼운 경상 등이 나타났다. 국과수 부검의는 익사로 추정하였다.

(2) 수사 결과

여수경찰서가 1989년 11월 24일 이 열사의 아버님께 보낸 수사결과 통지에 의하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과장을 반장으로 수사요원 11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서울, 경기도 안성, 여수 거문도 등지에서 3개월에 걸쳐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참고인 81명을 159회 조사하고 거문도 내왕객 1,143명에 대한 우편진술서를 발송 415명으로부터 회답을 받고, 공개리에 사체를 부검하여 가검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하고, 6회에 걸쳐 연인원 120명을 동원 사체 발견장소 부근 산속, 해안, 수중 등을 수색하고 5회에 걸쳐 조류에 의한 부유물이동실험을 실시하고, 서울·안성 등지에 16회에 걸쳐 연인원 29명을 48일간 출장 수사케 하고, 목격자 이현우 등과 참고인 도연주 등 6명에 대한 대질조사를 실시하고, 거문도 주민 및 숙박업소, 민박촌 등에 대한 탐문수사" 결과라면서 실족추락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변사체 부검 결과 사체가 수중에 있었다는 외표 소견으로 수부가 표모피를 형성, 둔부가 아파형성, 폐장에서 프랑크톤 검출, 좌우추체네 출혈, 폐포내출혈, 국소적 폐기종, 폐부종상을 정하고, 혈액, 위 내용물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사인은 익사로 판명되고,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난 피하출혈 및 표피박탈을 동반한 피하출혈은 열상등을 동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위등 물체에 가볍게 충돌하여 생긴 경상으로 인정되고 다만 좌전하퇴부(슬관절하)와 좌후주부(팔꿈치)의 피하출혈상은 상처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아 단단한 바위등 넓은 둔체와의 다소 강렬한 충돌현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부검의 소견,

거문도-여수간 여객선 승선시 작성한 승선자 명부의 필적이 자필로 판명되고 여객선과 거문도 희망식당에서 식사할 때 동행자 없이 혼자라는 것이 판명되고,

이내창군이 신었던 영에이지 랜드로바 신 밑창중 오른쪽 신 밑창은 특이한 흔적이 없고 왼쪽 신발 밑창 앞부분이 미끄러지면서 긁힌 흔적이 있고,

이내창군은 총학생회장으로서 등록금 동결, 총장직선, 하계수련회 개최 등이 뜻대로 되지않아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 있으나 유서나 자살할만한 동기가 없고,

익사 추정지점은 해변으로서 직경 2-5미터가 되는 암석지대로서 보행이 가능하고 간조시에도 수심이 3-5미터가 되는 곳으로 대부분의 암석은 암석에 묻은 흙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미끄러운 지점 등과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이내창군은 총학생회장으로서 등록금 동결문제, 총장직선문제, 학생회간부 하계수련회 개최 등 학내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아 혼자 계속 고민 끝에 괴로운 심정에 학생회 업무를 일시 떨쳐버리고 무작정 하절기 피서지인 거문도 여행을 택한 후 8. 14. 밤에 안성에서 단독으로 출발, 야간 교통편을 이용 8. 15. 새벽에 여수에 도착 8. 15. 08:00 여수항 여객터미날에서 거문도행 신영고속훼리호를 타고 12:50경 거문항에 도착 14:00경 거문도 희망식당에서 점심식사후 15:30경 거문항 여객터미날에서 우연히 만난 피서객 남녀의 요청에 의하여 사진촬영을 해준후 같이 나룻배를 타고 바다건너편 유림해수욕장쪽 연육교 공사장 제방에서 하선 약 750미터 떨어진 유림해수욕장까지 걸어간 후 다시 동쪽 해안 약 200-250미터 지점인 암석해변으로 걸어가서 무더운 날씨에 직경 2-5미터 되는 미끄러운 암석위를 오르내리다가 왼발이 미끄러져 실족 추락하면서 좌전하퇴부와 좌후주부(팔꿈치) 등을 넓은 암석에 강력하게 충격함과 동시에 3미터나 되는 높은 파도에 휩싸이면서 두전부, 전액부사지 등을 다른 암석 등에 강하게 충격하면서 바닷물속에 빠져 질식사망한 후 심한 파도와 바람 그리고 조류에 의해 발견장소로 표류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나아가 공안당국에 의한 유인납치 살해 주장에 대해 "안기부에서 수사한 평축그림 슬라이드 제작송출과 관련되어 구속된 차일환씨, 이태구군등의 사건과는 차일환의 진술과 안기부 확인결과 이 사건과 관련 이내창군을 수배 또는 수사한 사실이 없어 유인납치되었다는 근거가 전무하고, 국민대생 김정환군이 8. 11.부터 8. 14. 08:00간 중앙대 안성분교 주변과 친구 이태형군의 자취방등에서 기거한 것을 근거로 보안사 요원이 깊이 개입 유인납치, 살해한 듯한 주장은 김정환, 이태형 등의 진술에 의하면 김정환이 보안사 요원에게 도피중인 국민대 교지편집장 김정덕의 소재를 대라고 협박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내창군과는 중앙대학 안성캠퍼스에 은신중일 때 단순히 두 번 만나 인사하고 어울렸을 뿐 관계된 일이 없어 보안사에서 수사대상으로 지목되거나 수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보안사에서도 김정환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내창군을 수사 또는 수배사실이 전무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안기부 인천지부에 근무하는 타자수 도연주양과 그의 남자친구 백승희군등이 유인납치 살해했다는 주장도 덕성호 선장 이현우 등과 직접 대질 및 행적수사에서 이 사람들이 덕성호를 타고 유림해수욕장이 있는 서도로 건너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동인등이 이내창군을 유인납치 살해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3) 수사결과의 문제점

1) 이 열사의 행적상의 문제점

이 열사 사건은 보안사에 의해 자행된 국민대학교 김정환씨에 대한 학원프락치 강요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다. 김정환씨가 보안사로부터 석방된 다음날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피신하여 이 열사를 만났고, 피신 도중에 보안사에 전화를 하였으므로 보안사에서 김정환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4일 이 열사의 행동이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의 방문을 받은 후에 평소답지 않게 다급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위 신원미상의 남녀 각 1인은 사망 현장에까지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경찰은 위 신원미상자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였다.

2) 경찰의 수사상의 문제점

사체 촬영을 종전과 달리 촬영부위와 매수를 특정하여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사에게 임의로 찍도록 하였다.

내방객에 대한 검문검색을 허술하게 하여 동행한 것으로 목격된 남녀 각 1인의 신원파악 및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학생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방해하고 진상조사단에 정보를 제공한 유력한 목격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다.

3) 실족에 의한 익사로 볼 수 없는 문제점

사체 발견 당시의 모습은 하의, 양말, 신발만 착용하였고 상의, 안경, 시계, 혁대를 착용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모습은 실족에 의한 익사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한 유림해수욕장은 경사가 완만하여 전방 50 내지 100미터까지의 수심이 약 1.4미터 정도밖에 안되고, 인근 해안에 실족한만한 지형이 뚜렷이 없고, 이 열사가 상당한 수영실력을 가진 점에 비추어 보면 실족에 의해 익사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익사한 것이라면 그곳 바다의 파도가 매우 세고 섬 주변에 바위 지역이 많으므로 사체에 수많은 상처가 남거나 찢겨지는등 파도에 휩쓸린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텐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

4) 타살의 가능성

이 열사 사건의 열쇠는 결국 동행한 남녀 각 1인이 누구이며, 경찰은 왜 이들을 밝혀내지 못했는가에 달려 있다.

상의, 안경, 시계, 혁대 등의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 역시 타살의 의혹을 짙게 한다. 즉, 이 열사와 이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고 그 결과 그 흔적이 남게되자 이 열사의 사망후 이들이 유류품을 없앴다고 볼 수도 있다.

사체의 외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얼굴의 상처(콧등의 피멍과 오른쪽 눈위에 찢겨진 상처)는 안경을 쓴 상태에서 가격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팔과 다리의 상처 역시 사망 직전 가격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처는 사망후 바다에 표류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가격에 의해 생긴 것이다.

손에는 별다른 상처가 없는바, 이 역시 타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지게 되면 바록 자살을 하려고 했더라도 절명 직전에 보호본능이 생겨 손으로 무엇을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손톱이 빠질 정도가 되거나 지문이 없어질 정도가 된다고 한다.

3. 이철규 열사 사건

(1) 사건의 경위

1) 사망의 경위

이철규 열사는 1964년 5월 6일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도리 관동부락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출생하였다. 장성군 삼서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광주 금호고등학교 2학년 재학시 1980년 5.18을 체험하였는데, 부상자를 실어 병원으로 후송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다. 1982년 3월 조선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입학하여 동아리 UNSA 활동하였고, 1985년 11월 외세 반독재투쟁위원회 활동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 복역중 본격적으로 한반도의 미국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987년 7월 6월항쟁이후 사면조치에 따라 가석방 되었는데, 당시 조선대학교는 박철웅 총장의 전횡에 맞서 격렬한 반봉건 학원민주화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이 열사는 출소후 곧바로 복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이 열사는 1988년 8월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학년 2학기에 복적하였고, 1989년 1월 민주조선 교지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1989년 4월 10일경 민주조선 교지 창간호가 발행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4월 20일경 민주조선 편집위원 전원에 대한 수배조치가 내려졌고, 이 열사에 대해서는 현상금 300만원에 1계급 특진이 붙었다.

1989년 5월 3일 후배 생일을 위해 택시를 타고 약속장소로 가던 중 광주시 북구 청옥동에 있는 청암교에서 경찰의 검문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하게 된 이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청옥동 4수원지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1989년 11월 4일 사인진상규명투쟁 178일만에 민주국민장으로 장례식을 거행하여 망월묘역에 묻혔다(묘지번호 28-2).

2) 이 열사의 5월 2일과 3일의 행적

5월 2일 15:00-18:00 : 조선대 "민주조선편집위원회"의 기획회의에 참석. 안경이 깨진 상태로 학교에 옴. 회의가 끝난 후 편집위원들이 남대협 비상간부대회에 참석하러 택시를 타고 전남대학교에 이철규 열사와 같이 도착(18:15-20경).

18:30경 : 점심을 먹지 않았고 수배중이어서 간부대회를 참석치 않고 전남대 후문에서 식사하겠다고 하면서 편집위원들과 헤어짐.

21:00경 : 학동 평화맨션 앞에서 박효(88년도 조선대 여학생회 간부. 당시

카페 '압록강 뚝은 잘 있을까'의 종업원. 후배)양과 '한다름' 카페에서 만남. 이후 지산유원지 '수궁'에서 만나 맥주 한병을 시켜놓고 같이 먹다 한잔 정도를 남김.

23:30경 : 박효양을 학동 집에 데려다 주고, 1주일 전부터 침식을 하고 있던 운암동 94번지 소재 정구이씨(27. 제약회사 영업사원. 선배)집으로 귀가.

5월 3일 01:00경 : 정구이, 윤종남(31. '압록강 뚝은 잘 있을까'의 카페 주인. 선배), 심재수(21. 조선대총학생회 홍보부. 후배), 이 열사 4명이 같이 잠.

09:00경 : 정구이씨 출근. 심재수씨도 곧 뒤이어 나감.

10:00-10:30경 : 9시 30분에 기상, TV 아침뉴스를 보고 세면하고 윤종남씨와 함께 출발. 택시를 타고 양동복개상가에서 이 열사 내리고(11시경) 윤종남씨는 미터기를 다시 작동하여 '압록강 뚝은 잘 있을까'를 향해 출발.

14:00경 : 호남대에서 정후태씨(22. 호남대 사학 3. 후배) 현관앞에서 이 열사 목격. 최영호(호남교육신문 기자)와 정세 이야기중 정후태씨도 잠깐 같이 있다가 헤어짐.

15:00-16:00경 : 호남대 총학생회 복도에서 정후태씨와 이 열사 다시 만남. 정후태씨가 "학생회일 관계로 잠깐 들렀다가 오겠으니 기다리시오"하니까 이 열사 대자보판 앞에서 기다리겠다고 함.

16:30경 : 정후태씨 대자보판 앞에서 만나 안부이야기를 나눔.

17:00경 : 두 사람은 후문앞 영흥식당에서 짜장면을 먹고 17:23경 이 열사를 택시에 태워주고, 정후태씨는 호남대 교지편집위원회 회의에 참가.

20:00경 : 운암동 소재 금호고등학교 버스 승강장앞에서 심재수씨 만남. 박효양 생일 잔치에 같이 가려 했으나 심재수씨가 9시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하얀 바탕에 파란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런닝과 팬티를 건네줌.

20:15-20경 : 중흥파크맨션 부근 공중전화박스에서 카페 '압록강 뚝은 잘 있을까'에 심재수씨가 전화를 걸자 박효양이 받음. 이 때 통화과정 중 윤종남씨가 이 열사에게 산수오거리에 있는 2층 송죽다방에서 만날 것을 제안.

20:30경 : 심재수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전남대 정문 앞에서 심재수씨를 내려주고 20:50경 이 열사 혼자 '길목카페'에 도착. 즉시 '송죽 다방'으로 전화하여 박효양과 통화

21:00경 : '길목카페'에서 이희복양과 이경미양(23. 호남대 의상학과 4 휴학. 후배)을 만남.

22:00경 : 이들과 헤어져 이 열사는 산장쪽으로 걸어가면서 택시를 잡으려 함. 22:06경 산수동 오거리에서 대광교통 이재민 운전기사의 차를 타고, 호반산장까지 4,000원에 가기로 합의.

22:12경 : 대광택시 4수원지 삼거리에서 검문을 받고 실종.

(2) 검·경찰의 수사결과

1) 검문 경찰관들의 검문전 행적

1989년 5월 3일 18:00경 북부경찰서 김자술 경위(수사과 형사계 형사 1반장), 김남태 경장, 박재환 순경, 고재풍 순경, 박윤호 순경 등은 평상근무를 마치고 잔무를 정리한 다음 동일 18:30경부터 20:30경까지 광주시 북구 우산동에 있는 "도시바다"라는 횟집에서 회식을 하고 부근 로얄다방에서 차를 마신 다음 20:50경 제4수원지 부근 야간검문을 위해 동서 효죽파출소로 출발하였고 동 박윤호는 당일 비번이었음에도 근무요령을 배우기 위하여 함께 동행하였다.

2) 검문 경찰관들이 검문 당시 열사의 신원을 알았는지 여부

검문 당시 이철규가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였으며 검문 경찰관인 순경 고재풍이 신원을 확인하자, 자신의 이름은 아명이 "이중규"고 호적상 이름은 "이명규"라고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실제로는"650506-1661416"인데 호적상 "660506-1661416"이라고 다르게 말하고, 무전기를 이용하여 북부경찰서에 신원조회중 갑자기 도주하였으므로 검문 경찰관이 이철규인 줄은 알지 못했고, 경찰서에서도 컴퓨터 조회 결과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이철규인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1989. 5. 8. 광주북부서에서 이철규를 수배함에 있어 담당 경찰관이 李哲揆의 한자이름 "揆"를 "환"으로 잘못알고 수배대장에는 "이철규"가 아닌 "이철환"으로 수배가 되어 있어, 북부서 근무 경찰관들은 이철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고, 89년 5월 10일 이군의 변사체를 발견하고 주민등록증을 수거하여 신원조회를 하였던 경찰관들도 이철규 이름이 "揆"자를 "계"로 잘못 읽어 이군의 본적지 경찰서에 "이철계"로 신원조회했다가 조회가 되지 않아 다시 "이철발"로 신원조회하는 등의 해프닝까지 있었다.

3) 5월 3일의 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

- 1989년 5월 3일 18:30~20:30경 북부경찰서 김자술(수사과 형사계 형사 1반장 경위), 김남태 경장, 박재환, 고재풍, 박윤호 순경 5명이 광주직할시 북구 우산동 소재 바다횟집에서 함께 식사후, 20:55경 효죽동 파출소에 도착하였으나, 경찰차량이 도착되지 않아 대기중, 의경 이치형이 운전하는 차량(광주 5가4833호 24인승 콤비)이 21:25경에 도착하여 승차하였음.

- 21:33경 효죽동 파출소를 출발, 문화동을 경유 청옥동을 향하여 가던 중, 청옥동 사무소 앞에 이르러 박재환이 차량에서 내려 동사무소 앞 청옥상회에서 손전등용 건전지 2개를 구입하여 건전지를 교환하고, 시장에 왔다가 차를 놓쳐 서성거리고 있던 청풍동 신촌부락 거주 윤점례 등 2명의 여자를 차량에 태우고 가다가, 청풍동 등촌 삼거리에서 여자 2명과 봇짐을 내려주고, 21:50경 청암교 삼거리에 도착함.

- 그곳에 있는 공원감시소 바로 앞에 차량 앞쪽을 무등산장 가는 길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경광등을 켜놓은 상태로 정차시켜 두고, 김자술, 김남태, 의경 이치형은 차내에서 대기하고, 박재환, 박윤호, 고재풍 등 3명은 경찰차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문근무를 개시하자, 김삿갓 시비로 올라가는 층층대에서 고사를 지내러온 사람들이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 놓았던 3~4대의 차량과 데이트족의 차량 3~4대가 주변에서 있다가 떠나버리고 그 이후 여러 대의 차량이 일시 정지하였다 가버렸으며, 당시 그곳은 위 차량 5~6미터 후방 좌측 공원감시소 부근 벗나무의 25미터 높이에 우유빛 백열구 전등 1개(100볼트 110왓트)가 켜져 있어 그 주변은 비교적 밝은 상태이나 검문차량을 세워둔 장소에서 10여 미터의 거리가 있어 차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기에는 어두운 상황이었다.

- 자가용 승용차, 남녀가 탔거나 여자만 탄 택시 등 택시강도의 소지가 적은 차량은 검문없이 통과시키고 택시강도의 위험이 예상되는 남자만 탄 택시를 주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하여 동일 22:12경까지 약 10여대의 택시를 검문하였음. 22:12경 광주시내에서 무등산장 방면으로 지나가는 광주 4파4864호(대광택시 운전사 이재민 당 33세)를 박재환이가 신호봉으로 정차시켜 검문 경찰관임을 고지한후, "검문 좀 합시다"라고 말하고 차안을 들여다보면서 피검문자(이철규)에게 "신분증 좀 봅시다"라고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박재환은 택시 뒤쪽으로 돌아가 열려져 있는 우측 차문에 얼굴을 대고 "어디서 무엇하는 사람이요?"라고 물어본바 "전남대학교 학생입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때 고재풍이 "어디 사는 누구요?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하시오"라고 질문하자 이철규가 택시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택시에 기대서고, 고재풍이 이철규의 몸을 손으로 더듬어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다가 쇠소리가 나므로 꺼내달라고 하자 피검문자가 열쇠꾸러미를 꺼내어 보이므로 확인후 넣게 함.

- 계속하여 고재풍이 성명과 생년월일을 말하라고 하자 이철규가 "이중규, 1966. 5. 6. 생"이라고 대답하여 검정싸인펜으로 수첩에 받아쓰고 있을 때 이철규는 자신의 이름은 아명이 "이중규"이고 호적상 이름은 "이명규"라고 하여 고재풍이 "중"자를 두줄로 긋고 그 옆에 "명"자를 쓰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1661416"을 수첩에 기재할 무렵 김남태가 검문차량에서 내려 무전기를 손에 들고 택시 있는 곳으로 다가와 택시기사에게 교통에 방해가 되니 택시를 앞으로 빼라고 하여 택시를 우측 약 3m 전방으로 정차시킬 때 박윤호는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고재풍이 김남태에게 수첩을 보여주면서 신원조회를 한 번 해보라고 하자 김남태는 눈이 어두워서 못보겠다고 하여 약 3m 떨어져 있는 택시 앞 라이트 부근으로 박윤호, 고재풍, 김남태 등이 함께 가 택시 앞 차폭등 불빛에 수첩을 내놓고 몸을 숙여 고재풍은 김남태에게 인적사항을 읽어 주고, 김남태는 북부서 상황실로 무전연락을 하였으며, 당시 북부서 상황실에서는 의무경찰 송재명이 무전연락을 받고 컴퓨터 조회를 하고 있었음.

- 이 때 택시기사는 검문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타코미터기 작동을 정지시키며 김삿갓 시비쪽 도로가로 걸어가서 다리운동 등으로 몸을 풀고 있고, 이철규와 순경 박재환은 원래 검문하던 곳에서 서성대고, 고재풍, 김남태, 박윤호가 택시 앞 차폭등 불빛에 고재풍의 수첩을 비추어 가며 북부서 상황실에서 무전연락을 하느라고 감시가 소홀하자, 22:16경 이철규가 그 틈을 이용하여 택시있는 쪽으로 천천히 약 7~8보 가량 걸어 가다가 갑자기 취수탑 쪽으로 뛰어 도망가기 시작하여 박재환은 그를 보고 약 15미터 뒤에서 "도망친다 잡아라"고 소리치며 추적하기 시작하고 박윤호, 고재풍 순으로 그 뒤를 이어 15~20미터 간격을 두고 추적하기 시작하고, 김남태는 검문차량으로 달려가 의경 이치형에게 "도망친다 따라와라"로 소리치면서 무전기를 손에 든 채 뛰어갔으며, 택시기사 이재민은 박재환의 외침소리를 듣고 그의 택시를 운전하고 쫓아갔으며, 의경 이치형은 김자술과

같이 도주방향과 반대로 서 있던 검문차량을 돌려 추격하기 시작하였음.

- 박재환은 수원지 관리인 집을 지날쯤 날이 어둡고 도로가 구부러진데다가 우거진 숲으로 시야가 가려 이철규을 놓쳤다가 뒤따라 오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으로 앞으로 도주하는 이철규를 발견하고 계속 추적, 삼거리에서 약 170미터 상거된 지점에 이르렀을 때 우측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므로 박재환도 이철규가 뛰어 들어간 산속으로 뒤따라 들어가고 박윤호, 고재풍도 뒤따라. 각각 산속으로 추격하였음.

- 그때 번호미상의 승용차는 이철규를 추적하는 김남태, 고재풍, 박윤호를 추월한 후, 박윤호가 산위로 추적을 시작할 무렵 잠깐 멈추었다가 바로 진행하여 갔고, 택시기가 이재민은 삼거리로부터 약 170미터를 진행하여와 박윤호의 뒤를 따라 막 산으로 오르는 고재풍의 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정차하였고, 그때 맞은편 청옥동 쪽에서 번호미상의 승용차 1대가 잠시 정차하였음.

- 김자술은 그때서야 그곳에 도착 검문차량에서 내려 택시기사에게 "형사들 어디로 갔오"하고 물어 그가 가리켜 준 산위로 4~5보 오르다 어두운 산길에서 미끄러져 우측 하퇴부 부분 파열상을 입고 "아이고"하며 땅에 주저 앉자 검문차량보다 뒤늦게 그곳에 도착하였던 김남태는 "반장님, 왜 그러요, 내려갑시다"하며 부축, 산을 내려와 김자술은 검문차량에 다시 승차하였음.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해와 잠시 서있던 승용차는 삼거리 방면으로 지나가고 검문차량에 오른 김자술이 김남태에게 "산을 올라가 형사들을 찾아보라"고 지시하자, 김남태는 다시 산속으로 약 10여미터 들어가다가 마침 본서 지령실로부터 컴퓨터 조회결과 불발견통보를 받고, 어두워 동료 경찰관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곧바로 하산. 22:26경 김자술은 견디기 어려운 다리 통증으로 김남태에게 "택시기사와 같이 있어, 나 약좀 사러갔다 올께"라고 말하고 검문차량을 타고 청옥동 마을쪽으로 갔음.

- 잠시후 택시기사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지 제방쪽으로 갔다가 차를 돌려 김남태 혼자 서성대고 있는 산속 도주로 입구로 되돌아와 잠시 정차하여 김남태 보고 "아직 못 잡았느냐"고 묻자 김남태가 못잡았다고 하면서, "돈 받기는 글렀으니 일찍가서 돈이나 버시오"라고 하자, "고생하시오"하며 시내쪽으로 갔음. 그 뒤에도 그곳에 서있던 김남태도 얼마 후 걸어서 검문 장소인 삼거리에 이르러 공원감시소 앞에 서 있었음.

- 한편 검문차량을 타고 파스를 사러간 김자술은 청옥동 마을 입구의 구멍가게에서 1,00원을 주고 대일시프파스 2매들이 1갑을 구입한 후, 23:32경 구멍가게를 출발, 22:34경 김남태가 기다리기로 약속한 산속 도주로 입구에 왔으나, 김남태가 없으므로 삼거리쪽으로 계속 진행하여 22:35경 삼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와 있던 김남태를 만났음. 그때쯤 김자술은 수원지 취수탑 방면에서부터 진행하여 와 수원지 관리사 옆 커브길에서 정차하고 있는 소형 군용짚차를 발견하고, 운전사에게 "무슨 차량이냐"고 묻자 그 짚차 운전자는 "군용차량인데 인사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한 후, 운전의경 이치형이 검문차량에서 내려 "검문받던 사람이 도망갔는데 손전등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하면서 서로 제대가 얼마 남았느냐고 하는 등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육군 상사 공상수 등 3명과 민간인 1명이 청암교를 건너와 군용차량을 타고 청옥동 방면으로 출발하였음.

- 박재환은 처음에는 이철규의 모습을 보고 추적하였으나, 어두운 산 속에서 이철규를 놓쳐버리고 좌측 산기슭에는 소나무 잡목이 우거졌을 뿐 아니라 뒤엉킨 숲을 만나 이를 헤쳐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에 박윤호는 박재환의 뒤를 따라 산으로 뛰어 올라가 박재환을 추월하고, 고재풍은 박윤호의 뒤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며 박윤호와 "어디, 어디", "여기, 여기"하는 방법으로 서로 묻고 답하면서 서로의 위치와 방향을 알리며 노씨 묘쪽으로 뛰고, 먼저 산 입구 도로지점으로부터 약 105미터 떨어진 노씨묘 상단부분에 오른 박윤호는 지쳐 그곳에 주저앉고 곧이어 고재풍이 노씨묘 부근에 이르자 박재환도 바로 노씨 묘에 도착하였음.

- 22:20경 박윤호는 박재환, 고재풍이 함께 노씨 묘쪽으로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좌측 산길을 따라 뛰어가고, 박재환, 고재풍은 박윤호를 뒤따라 갔으며 모두 논두렁을 거쳐 약 120미터 상거한 건너편에 이르러 박윤호가 그곳 산 속으로 오르자 뒤따라온 박재환은 "아이고 더 이상 못가겠다"고 말하니 박윤호는 "이제 형님은 밑으로 내려가시오"라고 말하면서 북쪽 산속으로 올라가고, 고재풍은 박윤호를 뒤따라 올라가 위 산중턱에서 만났음. 22:30경 박재환은 혼자 논가 길을 따라 도로쪽으로 내려오다가 도로에서 약 60미터 상거한 길가 바위에 앉아 잠복하고, 박윤호, 고재풍은 계속 산속을 오르다 취수탑 불빛을 보고 하산하였음.

- 22:35경 하산한 박윤호, 고재풍이 수원지 취수탑 정문쪽으로 걸어오자 수원지 취수탑에 있던 청원경찰 홍성하는 고재풍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하며 출입문을 열어주자, 박윤호, 고재풍은 취수탑으로 들어가 물 1컵씩을 마시며 "택시강도 용의자 한사람이 산으로 도주하였는데, 혹시 순찰중에 젊은 사람이 나오면 잡아주시오"라는 부탁을 한 후 박윤호, 고재풍, 청원경찰 홍성하, 이행민이 함께 취수탑에서 도로로 약 60미터 가량 삼거리 방향으로 가던 중, 때마침 삼거리쪽에서 김자술, 김남태를 태우고 취수탑쪽으로 오고 있는 검문차량을 만나 22:44경 검문차량에 함께 승차하였음.

- 22:45경 검문차량이 수원지 제방부근을 통과하면서 김자술이 박재환 형사를 못 보았느냐 물으며, "박재환 형사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하면서 운전의경 이치형에게 "차내 방송마이크를 달라"고 하니까 마이크줄이 짧아 줄 수 없다고 하므로 운전수 옆에 있던 김남태가 마이크를 들고 군인관사쪽으로 가면서 "박재환 하산하시오, 박재환 하산하시오"라고 약 5회 방송하고 군인관사 입구 삼거리에서 차를 돌려 산쪽을 향하여 같은 방법으로 다시 약 5회 방송하고 다시 삼거리쪽으로 서행하면서 계속 약 5회 정도 "박재환씨 하산하시오"라고 방송을 하면서 청암교 삼거리쪽으로부터 약 270미터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송을 들은 박재환이 산속 잠복장소에서 손전등으로 신호하는 것을 반견하고 차를 정차시킨 다음 김남태, 박윤호, 청원경찰 이행민이 하차하여 김남태, 박윤호, 청경 이행민 순으로 박재환이 잠복하고 있는 잠복지점을 향하여 약 10미터 갔을 때 청경 이행민은 다시 돌아와 차 밖에서 서있고(당시 검문 차량안에는 운전의경 이치형, 그 뒤 2번째 좌석에 김자술, 수원지 방향 차창쪽 열어놓은 출입구의 뒷좌석에 청원경찰 홍성하, 세 번째 좌석에 고재풍이 앉아 있었음)

- 김남태, 박윤호는 박재환에게 접근, 내려가자고 하니 박재환이 "여기에 잠복하고 있으면 내려올지 모르는데 다 틀려 버렸다"고 하면서 "이젠 틀렸으니 내려가야겠오"하고 하면서 그 지점까지 올라온 김남태, 박윤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음. 22:56경 차안에 앉아 있던 청원경찰 홍성하와 운전의경 이치형이 수원지 다리 청암교 부근에서 "악"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청원경찰 홍성하가 바로 이어 들려온 "풍덩"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하차하여 그경 산속에서 내려와 검문차량 우측 뒷편에 서있던 청원경찰 이행민에게 저 소리를 들어보라고 일러주는 순간 "어푸 - 어푸"하는 소리가 연이어 나고 이를 이행민도 들었음.

- 그경 박재환, 김남태, 박윤호가 산에서 내려와 검문차량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이행민이 큰일났다고 하면서 사람이 빠진 것 같은 소리가 다리쪽에서 들렸으니 빨리 가보자고 독촉하여 빠른 속도로 삼거리 방향으로 출발, 22:57경 삼거리에 도착하여 이행민, 홍성하와 경찰관들은 하차하고 운전 의경 이치형은 쌍라이트를 켜 방향을 세 번 바꾸면서 청암교 아래쪽을 비추고, 박재환, 김남태는 10여분간에 걸쳐 후레쉬로 위 다리 아래쪽을 비추었으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검문차량은 다시 삼거리 쪽으로 되돌아가고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는 위 다리 아래쪽으로 내려가 후래쉬로 수면을 살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다리 위로 올라 왔음.

- 23:20경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가 아무 것도 못 보았다며 삼거리쪽 검문장소 방면으로 오자 그곳에 있던 김자술, 박재환이 수원지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조금전까지 볼 수 없었던 불빛이 보인다면서 그곳에 가보라고 말하여 23:30경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는 불빛쪽으로 향하여 위 다리를 건너가고 23:33경 검문 경찰관 5명 청원경찰 2명이 위 다리 건너 우측 숲을 거쳐 저수지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대로 광주 시내 전망대 쪽으로 출발하여 검문장소를 떠났음.

- 23:35경 청원경찰 이행민, 홍성하가 앞서본 불빛 쪽으로 다가가 그때 수원지에서 주낙을 하고 있던 김현빈, 김오빈에게 조금 전에 다리쪽에서 '풍덩'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고 묻자 낚시꾼들은 듣지 못했다고 하였고 청원경찰 이행민이 그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낚시꾼 김현빈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인적사항을 적으려 할 때 주민등록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버려 이행민이 그들을 보호하는 동안 홍성하는 경찰관들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 삼거리쪽으로 갔으나 경찰관들이 이미 철수하고 보이지 않으므로 취수탑으로 돌아가서 청옥동파출소에 신고하였음. 그경 검문경찰관 5명은 전망대를 거쳐 24:00경 효죽파출소 동료들에게 검문중 용의자를 추격하다가 놓쳤다고 투덜거렸음.

4) 사체 발견과 검시 과정

- 1989년 5월 10일 11:30경 광주시 북구 청옥동 133번지 소재 제4수원지 관리소옆 청암교 다리 위에서 수원지 관리인 최왕균이 관리소에서 사육하는 개가 물가에서 요란하게 짖는 것을 목격하고 내려가 본즉, 청암교로부터 약 76미터, 관리소쪽 물가로부터 약 3미터 떨어진 수심 약 70센티미터 지점의 수면에 얼굴을 위로 향한 모습으로 떠있는 변사체를 발견하였다.

- 최왕균은 즉시 관리소에서 인터폰으로 수원지 취수탑에 있던 수원지관리 청원경찰 나종주에게 연락을 하고, 나종주는 11:45경 북부경찰서 및 청옥동 파출소에 전화로 변사체 발견신고를 한 후 청원경찰 이행민과 같이 변사체 발견 장소로 갔다.

- 12:00경 청옥 파출소장 경위 정왕기, 순경 천대표, 이환기가 변사체 발견 장소에 도착, 변사체를 손으로 인양할 수 없어 최왕균이 관리소에서 가져온 길이 약 154.5센치의 쇠갈퀴에 나종주가 길이 약 192센치의 막대기를 전선줄로 묶고 있던 중 12:15경 북부경찰서 형사계장 경감 주춘근, 당직형사반장 경위 김자술이 도착하였다.

- 순경 천대표가 막대리에 연결된 쇠갈퀴(길이 약 2.5미터)를 날을 위로 향하게 한 채 변사체 밑 물속으로 넣어 오른쪽 허벅지 뒷부분을 걸고 물가로 끄집어 내어 나종주, 최왕균, 이환기 및 천대표가 좌우 다리 좌우 어깨쪽과 마대끝을 각 붙잡아 그곳으로 약 65미터 떨어진 풀밭으로 옮겨 놓았다.

- 12:20경 순경 이환기가 변사체 바지 주머니를 수색하려고 하였으나 사체가 팽창하여 손이 들어가지 아니하자 순경 천대표가 연필깎기칼로 바지 좌측 호주머니를 찢고 순경 이환기가 주민등록증, 도장 및 현금 3,000원(1,000원권 3매)를 끄집어 내었다.

- 14:00경 의사 김세현(37세, 북구청 보건소 관리의사, 전남의대졸업, 가정의학 전문의)이 사체검안. 경감 주춘근이 주민등록증을 근거로 수원지 관리소에서 북부경찰서로 전화하여 유족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변사자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자임을 확인하였다.

- 15:00경 광주지검 검사 문세영이 북부경찰서로부터 변사자가 수배중인 자라는 전화보고를 받고 현장에 임하여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관련으로 수배중인 이철규임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한 후, 변사자의 신분으로 인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7:00경 광주지검 형사 제1부장검사 김각영, 검사 이정웅이 현장에 나가 변사체를 검시하였다.

사체검시중 청옥동파출소 순경 이환기는 북부경찰서 수사계장 주춘근과 청옥동 파출소 소장 정왕기의 감독하에 시신의 호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과 도장 및 현금 3,000원(1,000원권 3매)을 발견하였다.

- 사체검시 이후 검시조서와 압수조서(주민등록증, 도장, 현금 3,000원)는 김자술과 최영조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검시 책임자는 북부경찰서 형사계장 주춘근(김자술 경위는 사체검시에 있어서 보조자에 불과함)이었는데 왜 검시조서는 김자술에 의해 작성되다. 김자술은 국정조사 위원회에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부경찰서 경장 최영조가 자의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최초 검안했던 북구청보건소 의사 김세현(가정의학 전문의)은 사망시기를 사망진단서에서 5일전(5월5일)으로 추정하였으나, 검시조서에는 1989년 5월 3일-5월 4일경으로 추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검시 당시 사체는 전반적 부패현상을 보이고, 얼굴 부위는 짙은 녹갈색을 띄고 있으며, 좌측 눈은 개안상태에서 약간 튀어나오고 우측 눈은 감겨있고, 상의는 검붉은 줄무늬 긴팔 티셔츠, 하의는 쑥색바지 흰면 양말에 밤색구두를 착용하고 있었다.

5) 부검 실시 및 결과

① 부검 상황

- 시간 : 1989년 5월 11일
  11:05~11:50

- 부검자 : 김각영(광주지방경찰청 형사부장), 이정웅(주임검사), 김계수(전라남도경찰청 수사과장)

- 집도의 : 이원태(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고영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한상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마용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고용수(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조규혁(전남대학교 병리학과 교수), 장민기(광주적십자병원 외과과장), 손장신(광주기독병원 병리학과장), 서재홍(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진금남(전라남도경찰청 VTR촬영기사), 최진수(북부경찰서 수사과 경사), 박재선(북부경찰서 수사과장)

- 참관인 : 박태훈(새날의원장)윤장현(중앙안과원장), 김경수(조대의대 4), 김성중(조대의대 2), 유남영(변호사), 김현장(전민련), 정상용(국회의원), 지선(스님), 김병균(목사), 김인원(사업가), 양희승(동문), 이우송(신부), 이인규(유족), 이승규(유족), 하종래(조대 총학부모협의회 부회장)

② 부검 결과

- 사체는 고도의 부패로 거인양외관을 하고 있고 전신에 불규칙 부패수포가 있으며 변사체의 오른쪽 눈은 감겨있고 왼쪽 눈은 안구가 약간 돌출되어 있으며, 오른쪽 눈을 여는 순간 안구가 튀어나왔는데 이는 부패가스 분출로 인한 것이다.

- 왼쪽 종아리, 양 허벅다리, 양 손목, 좌측 뺨 등에 약간 긁힌 자국이 있고 가슴, 팔, 다리 등 전신에 부패로 인한 수포와 박피흔이 있으며 달리 사인이 될만한 외상은 없다. 안면이 검정 또는 녹갈색으로 변하였는데 이는 안면 피부조직이 다른 부위보다 연하고 공기에 많이 노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 사체 외부에 피가 흘러내린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체 인양시 부패체액이 터지면서 흘러내린 것이고, 팔목부위에 가벼운 상처가 나있으나 이는 부패에 의한 표피박리일뿐 끈이나 수갑으로 묶인 자국으로 볼 수 없으며 설골골절, 경부출혈 등 목졸린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또한 양 손과 발 부분에서 표모피(피부가 물에 불어 부풀어 오르고 쭈글쭈글한 현상)가 형성되어 있었다.

③ 가검물 감정 결과

- 폐는 수종과 그 주변의 기종상 및 폐포강내출혈 등 익사폐의 소견을 보이고 혈액과 비의 혼합물 및 위 내용물에서 농약, 의약품, 일반독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혈액과 비혼합물의 알콜 농도는 0.08%이며 각 장기, 즉 좌폐, 우폐, 간, 심, 비, 좌신, 우신에서 공히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며, 간을 재료로 하여 검사한 혈약형은 비(B)형으로 반응하고, 위 내용물은 시금치, 파, 호박, 콩나물, 무조각, 양파, 홍당무, 쌀밥알 등이며 식후 경과시간은 약 2시간 전후로 추정된다.

④ 사인

이상과 같은 부검 및 가검물 감정결과에 따라, 본 시체가 수중에 있었다는 증거로 양수부 및 양족부에 공히 표모피가 형성되었고 양폐, 양신, 심, 간, 비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으며, 폐의 조직학적 검사상 국소적인 수종과 그 주변의 기종상 및 폐포강 내출혈을 보이는 등 익사폐의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시체의 사인은 익사로 사료된다고 발표했다.

6) 경찰의 유류품 수색 및 조치

① 유류품 수색

- 5월 11일 11:00-18:00간 북부경찰서 대공과장 경정 한강택이 형사기동대 134명을 동원, 청암교 3거리에 청옥동으로 통하는 도로 우측 산 일대와 수원지 내 사체 발견 지점 주변 수색을 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 5월 12일 10:30-17:00간 위 한강택이 형사기동대 134명, 북부경찰서 도보대 66명, 계 200명을 동원하여 사체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수원지내 일대와 도주방향 산속을 수색한 결과 11:00경 청암교에서 저수지쪽으로 70미터, 도로에서 산쪽으로 30미터 지점에서 쇠파이프 3개(길이 140센치, 125센치, 113센치, 직경 2센치 스텐레스 중고 흰색)를 발견. 11:45경 취수탑으로부터 청암교쪽으로 약 100미터 지점, 수원지 출입통제 철조망안 도로로부터 약 9미터 떨어진 지점에 서있는 파리똥 나무밑에서 사파리 잠바 1점 {잠바 안주머니에 "길목" 카페 상호가 적힌 성냥갑 1개, 88담배 1갑(6개비), 프라스틱 라이타 1개, 소형수첩 1개(80원 우표 2매가 끼여있음), 열쇠 4개가 들어있었음)과 수면쪽 70센치 상거지점에서 27쪼각난 메모지를 발견하고 검찰에 인계하였다.

- 5월 13일 10:00-17:00간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경위 조영재가 북부경찰서 도보대 67명을 동원, 사체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수원지내 일대와 도주방향과 산속을 수색한 결과 15:00경 피검문자가 도주한 산속 도로로부터 산능선으로 150미터 상거한 지점에서 대변, D.M쏭이 적힌 종이 1점, 대변발견 지점에서 20센치 상거한 지점에서 삼각팬티(백색바탕에 청색 줄무늬) 1점을 발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

- 5월 14일 10:00-17:00간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장 경위 조영재가 북부경찰서 도보대 70명 동원, 사체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원지내 일대와 도주방향 산속을 수색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다.

② 유류품 처리

- 5월 10일 12:00경 청옥동 파출소 순경 이환기가 사체 안양시 주민등록증 1매, 도장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도장 1개, 현금 3,000원(1,000원권 3매)를 수거하여 형사계 경장 최영조가 사무실에 보관중, 5. 12. 조선대학교 학생처장 박열에게 사체와 함께 위 소지품을 인계.

- 5월 11일 사체 부검 종료 즉시 수사과 경사 최진수는 변사자가 착용한 티셔츠, 런닝샤츠, 혁대, 바지, 구두, 양말, 팬티 등을 수거하여 같은 장소에 있는 박스에 비닐을 깔고 넣어 북부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물치장에 보관 중. 경사 최진수가 5월 12일 13:30-14:00경 꺼내어 사진만 촬영하고 넣어두었다가 5월 13일 경장 정관찬이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운반하여 같은 연구소 숙직자 이진훈, 조재홍에게 인계하여 감정의뢰.

(3) 수사결과의 문제점

1) 검문 경찰들의 검문전 행적

검문 경찰들의 검문전 행적에 미심쩍은 점이 있는바, 수사 초반기에는 각 경찰들의 진술이 달랐으나 일정기간 이후부터 진술이 통일되었다.

김자술 등의 검문 경찰관들에 대한 조서를 살펴보면 퇴근시간, 근무명 하달시간, 도시바다 회식에의 참석 여부, 저녁식사 장소, 효죽파출소 집결 과정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 김자술의 2회조서에는 19:00 사무실 잡무처리 후 자택에서 식사, 21:15경에 효죽파출소 출발로 되어 있는데, 5회 조서에는 도시바다 회식에 참석한 것으로 번복되었다. 김남태의 5회 조서에는 잔무처리 후 구 호전 근처의 어떤 회집에서 식사 후 같이 대기장소인 효죽파출소에 도착하였다고 되어 있다. 고재풍의 2회 조서에는 5월 3일 18:00 형사계 칠판을 보고 당일 근무를 알게 되었고, 퇴근하고 집에서 식사하고 조금 쉬었다가 효죽파출소 도착하였는데, 21:00에 이미 4명이 도착하였다고 되어 있었는데, 6회 조서에는 5월 3일 19:30-20:00경 도시바다 회집에서 회, 낙지, 밥을 먹고 로얄다방에서 커피를 마신후 고재풍과 김남태는 고재풍 소유의 포니2(광주 1가 4127호)를 타고, 박재한, 김자술, 박윤호는 박재환 소유의 스텔라 승용차를 타고 효죽 파출소에 집결하였으며, 검문 근무후 고재풍이 김남태를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되어 있다. 반면에 박재환의 1회 조서에는 각자 저녁을 먹고 21:00에 효죽파출소에 집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번복이 없었다. 박윤호는 18:30경 북부서를 출발하여 도시바다 회식에 참가하였고, 20:30경 효죽파출소 도착하였는데, 도시바다에서 검문팀과 함께 식사하였으며 김자술, 박재환과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치형은 21:25경 효죽파출소를 출발하여 21:55경 수원지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서로 다른 진술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극히 미흡했고, 오히려 각 본수사의 의혹마저 있다. 초기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보면 회식 자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사전에 어떤 장소에서 검문에 대한 모의를 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남는다.

한편 위 김자술, 고재풍팀이 5월 1일에도 검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청원경찰 홍성하가 김자술 등이 5월 1일에도 청암교에서 검문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북부서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수사과장의 명에 의거 형사계 1,2,3,5,6반이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하는데, 김자술팀이 5월 1일에 근무하였다면 다음 근무일은 5월 6일이어야 할 것인데, 5월 3일에 다시 근무하였다면 이는 일반적인 검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특별지시에 의한 특별근무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검문전 행적이나 검문 도착시간에 대한 검문 경찰들의 진술이 초기에는 계속 엇갈리다가 5차 조서에 가서야 통일된 것으로 보아 사실은폐조작의 의혹이 짙으며 김자술 팀이 검문근무는 보조근무나 특별지시에 의한 돌발적인 근무로 보여진다.

2) 검문경찰들이 검문 당시 이 열사의 신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검문 당시 경찰관들은 이 열사등 민주조선 관련자에 대한 신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고 검문당시 이 열사의 얼굴 등 인상착의와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근거는 첫째, 4월 28일 조선대 후문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도중 학생들에 의해 잡힌 경찰관 윤항원, 김영덕, 나명수의 자필 진술서와 이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수배자 명단, 사진등이 그것을 입증해준다. 둘째, 이 열사 등 민주조선 사건 관련 수배자의 검거조가 동부서 소속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서부서, 북부서, 전남도경 등의 전 경찰서 및 수사 관련 전부서가 관계되어 있었다. 셋째 4월 18일 민주조선 편집위원 김경애양을 체포현행한 수사팀은 관할인 동부서가 아니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었다. 이처럼 민주조선 관련자 검거는 전 경찰서의 수사과정상 급선무였고, 이같은 경찰의 경쟁적 검거는 단순한 경찰 내부의 선결과제가 아니라 상급수사기관, 즉 공안합수부의 독촉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수배대장에 '이철규'가 아닌 '이철환'으로 수배가 되어있어 북부서 경찰관들은 이철규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수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하지만 동부서 수사과 경장 윤항원으로부터 입수한 수배자 명단에는 분명히 한글로 '이철규'라고 되어 있으며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또한 650506-1661416으로 되어있다.

3) 검문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

① 당시 20명 이상의 경찰병력이 검문현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시민들은 평소 이곳에서 거의 검문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이처럼 대규모 병력(15인 이상)이 동원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또한 5월 3일 박효, 윤종남 일행이 이 열사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통과하던 21:20경에도, 이 열사가 약속장소에 오지 않자 되돌아 나오던 중에도 검문을 받지 않았다.

경찰의 검문시작 시간은 1차 진술때 한결같이 21:20에 검문초소에 도착했다고 진술했다가 뒤늦게야 이치형 의경(운전병)의 진술에 맞추어 21:55경이라고 했으나 정확한 검문시간조차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4수원지의 검문이 경찰에서 말하는 순차적인 검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급박하게 실시된 검문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검문경찰관들은 한결같이 김자술을 중심으로 여섯 명의 경찰관이 검문을 실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여실히 부정된다. 광주고등학교에 재직중인 이대형 교사 일행은 부부 동반모임을 호반산장에서 갖고 저녁식사후 호반산장을 떠나 청암교 근처 삼거리 검문장소를 밤 21:40-50경 서행으로 지나가던중 잠바 차림의 젊은 남자 10-15명 정도가 모여앉아 무언가를 길거리 한쪽에서 먹고 있었고, 관리인 숙소쪽에 봉고차(경찰콤비) 2대가 주차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대형 교사는 "동료 11명과 함께 당일 호반산장에서 식사를 마치고 21:45경 이곳을 지날 때에 열댓명의 사복전경으로 보이는 잠바차림의 젊은이들이 관리인 집근처의 길가에 있었다"면서 "많은 수의 경찰과 봉고차가 밤늦은 시간에 이런 곳에 있는 것이 금방 무슨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며 함께 탔던 동료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 연수교사 정인현, 하정수씨 일행은 그날 새로 산 차량의 고사를 지내기 위해 승용차 5대에 10여명이 분승해 밤 10시경 청암교 근처 삼거리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그곳에서 경찰 25인승 콤비와 12명 정도의 병력이 취수장쪽 도로에서 걸어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대학생 윤을순, 김태홍씨의 증언에도 친구와 밤 22:30에 약속을 하고 근처를 돌다 22:00쯤 드라이브를 시작하여 산장쪽으로 가던중 청암교 다리를 바로 지나면서 25인승 콤비차가 관리인 숙소 쪽에 주차해 있고 차량 옆쪽에 날쌔 보이는 사복 차림의 5-6명이 "야"하는 소리와 함께 취수탑 방향 도로쪽으로 몽둥이를 들고 뛰쳐나가고 곧바로 콤비차가 추격하고, 김삿갓 시비쪽에서 2-3인의 사복차림의 남자들이 뒷따라 뛰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경찰의 검문시간은 정확히 이 열사가 검문지점을 통과하기 직전에 시작됐다. 이 열사가 그곳을 지나던 3일 저녁 삼거리에는 15-20인 이상의 병력과 중형차 2대 정도, 승용차 등이 출동하여 이 열사를 추적하였다. 이처럼 3일 저녁 경찰 또는 공안기관은 이 열사의 이동과정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청암교 삼거리에서 계획된 검거 작전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 열사의 사전구속영장이 5월 3일밤 20:50경에 문세영 검사의 신청으로 발부되었다.

② 검은색 지휘용 승용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거현장에는 단순히 검문경찰차만이 아닌 검은색 지휘용 승용차가 있었다. 관리인 아들 최성배군의 증언에 의하면 5월 3일 저녁 바지를 빨고 손발을 씻은후 막 방에 들어가려는데 "저놈 잡아라"하는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경찰 5-6명이 무전기를 들고 쫓고 있었으며 그 뒤를 따라서 검은 승용차와 경찰 콤비차량이 쫓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또한 이 열사를 태우고 간 택시기사 이재민씨도 이 열사가 산속으로 도망갔다는 지점까지 서행운행하면서 가다가 검은 승용차가 취수탑쪽에서 다가와 자신의 차와 만나는 지점에서 잠시 멈추었다가 검문초소쪽으로 간 것을 증언하였다.

검은 승용차가 검거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경찰의 주장대로 단순히 택시 강도를 예방키 위한 검문이 아니라 이미 정보 수집된 이 열사의 이동과정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검찰은 검은 승용차는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발표했으나 경찰관들의 최초 진술조서에도 박재환 순경은 "승객과의 거리가 10m쯤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 승용차가 라이트를 비추고 추격하여 저의 앞을 지날 무렵 도망하던 승객은 우측산 언덕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박윤호 순경은 "도망치는 청년을 따라 약 100m정도 뛰어가니 승용차가 산속으로 나있는 사잇길 입구에 정차하고 있어 그쪽으로 뛰어올라갔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검은 승용차의 역할은 그 당시의 현장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박윤호 순경은 그 지시에 의해 도주로로 뛰어올라간 것이다. 그렇다면 검은 승용차는 도주와 추격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경은 검은 승용차의 실체를 부정하고 그 당시 목격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전혀하지 않았다.

③ 도주경로에 대하여

검찰은 이 열사가 제4수원지에서 익사한 것이며 익사의 원인은 경찰의 추격을 피해 광주로 되돌아 오기 위해 수원지 철조망을 넘어 수원지 경내에 들어왔다가 다리밑 축대에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검찰은 박재환 순경이 이 열사를 붙잡지 못한 이유로 박재환 순경은 82kg에 36세인 반면, 이 열사는 63kg에 25세이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일정한 주거지를 정하지 못하고 매일 쫓기

는 생활을 하던 이 열사가 음력 3월 28일 달도 없는 한밤중에 지형지물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갑자기 닥친 경찰과 차량의 추격에 놀라고 위축된 상태에서, 강력범을 검거하는 직책에 있는 건장한 형사를 따돌리고 처음 가보는 산쪽 사잇길을 찾기란 극히 희박하고, 설령 산속언덕으로 올라서더라도 커다란 묘가 있고, 소나무 숲이며 잡목만 듬성듬성있는 공터에서 가쁜 숨을 쉬는 상태로 곧 바로 몸을 숨기기란 어려운 일이어서 위 발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열사는 도주시작 시간으로부터 18분내에 산속에서 다시 내려와 수원지 쪽으로 오기 위해 철조망을 통과하게 된다. 만약 숲속에 은신하여 경찰을 따돌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은신하는 시간은 김자술 경위가 10m정도를 오르다가 발목을 삐어 김남태 경장의 부축으로 하산하는 시간까지는 계속되어야 한다. 후레쉬 불빛이 현란한 그곳에서 피해가기란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곳의 지형에 비추어 18분 이내에 철조망을 통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열사가 찾았다는 철조망은 관리인 집으로부터 38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가로 56cm, 세로 30cm 간격으로 다른 곳보다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곳인데 이 열사가 우연히 이를 찾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철조망은 비교적 낡아 녹슬어 있는 상태였고, 군데군데 사람이 기어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했으나, 철조망의 기둥은 2m 간격으로 서 있으며 관리인 최왕균씨에 따르면 사람이 기어들어 갈 수 있는 곳은 두곳 정도가 있는데 한곳은 물이 흐르는 암거이며, 또 한곳은 수원지 관계자들만이 아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칠흑같이 어둡고 추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철조망 사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이 열사의 손목 상처가 도주할 때 생긴 것이라면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맨손으로 숲속 도주로와 철조망을 찾기 위해서는 지형과 수목구조로 인해 오히려 손바닥과 손 등에 찢긴 듯한 수많은 상처들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사의 손바닥이나 손등에는 아무런 상흔도 발견할 수 없었다. 어두운 산길을 달리는 동안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철조망의 가시도 용케 한 번에 피해서 도망을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

④ '풍덩,' '어푸어푸' 소리에 대하여

경찰은 익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풍덩," "어푸어푸"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5월 12일 전남경찰국 보고자료에는 청원경찰 홍성하씨가 '첨벙'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머지 운전하고 있던 의경 이치형과 김자술 경위외 경찰관 2명, 동료 청원경찰 이행민씨 등은 들은 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5월 25일 현장검증시에는 청원경찰 홍성하씨와 의경이 다리부근에서 "악," "풍덩," "푸우" 하는 물을 뿜는 듯한 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려 이행민씨에게 "저 소리 좀 들어보라"며 이행민씨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진술이 어긋나는 점은 의문이다.

한편 이 소리를 듣고 재빨리 청암교 다리 아래쪽을 비추었으나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하나 의문이다. '악' 소리를 듣고 1분만에 차에서 내려 익사현장의 수면을 후레쉬로 비추어 보고 뭔가 흔적을 찾으려 했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수면은 평정을 이루었다고 하나, 이를 믿기 어렵다.

자동차의 엔진이 켜진 상태에서 다리쪽에서 나는 '풍덩'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또한 설령 소리를 들었더라도 구체적인 장소를 식별해 내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상인의 경우 익사의 진행이 4~5분 정도 경과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키를 넘지 않고 한길도 채 못되는 물속에 빠진 이 열사가 허우적거리면서 일으키는 흙탕물이라든가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내는 기포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익사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비약이다.

또한 5월 3일밤 10:56경에 '풍덩' 소리를 듣고 경찰들이 다리 아래쪽에 후레쉬로 비췄다는 것조차도 양희승군(당시 재수생)의 제보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양희승군의 말에 의하면 "공부를 마치고 28번(시내버스) 막차를 타고 청암교에서 내려 청옥동에 있는 집으로 걸아가는데 다리에서 취수탑까지 이르렀을 때는 아무도 없고 사방이 조용했었다. 이때 막 커브를 꺽어(이곳은 지리적으로 길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급커브가 있다) 가는데 갑자기 앞에 쌍라이트를 켜고 오는 콤비차가 자신의 곁을 지나칠 때 갑자기 심한 라디오 소리같은 소음을 일부러 크게 켜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또한 차속에서는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양희승군은 깜짝 놀라 '별 미친놈들 다봤네' 하면서 뒤를 돌아보자 콤비차량은 산에 대고"하산하라"는 방송을 하며 곧바로 광주쪽으로 향하여 그냥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이철규 열사를 체포해서 차에 태웠고 비명소리를 위장하기 위해 차안에 볼륨을 키우고 지나간 것이라는 의혹을 준다.

또한 사건 당일 이 열사를 체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나타난 경찰의 태도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강도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민 기사에게 목적지가 어디인지조차 물어보지 않고 그냥 돌려 보냈으며, 글자 한자밖에 안틀린 주민등록번호와 이 열사의 동생 이름 '이명규'를 대고 전남대생이라고 했는데도 다음날 수배학생들의 명단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이후에 이철규 열사의 주변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당시 현장에서 이 열사를 체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준다.

4) 사체 발견 및 검시 과정

① 평소 수원지 익사체 발견시는 신고와 출동이 모두 청옥동 파출소 정도에서 이루어지고, 이와 유사한 경우에 북부경찰서에서 직접 출동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설혹 북부경찰서에서 출동한다 하더라도 간부 1인(경위급 이상)과 직원 1인이 출동하는 것이 통례이나, 이 날 사체발견 초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북부경찰서에서 형사계장 경감 주춘근, 경위 김자술, 경사 최장열, 경장 최영조와 청옥동파출소의 경위 정왕기, 순경 천대표, 순경 이환기등 간부 3명과 직원 4명이 출동하였다. 이와 같이 조속히 북부경찰서의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은 이들이 이를 예견하거나 다른 무슨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② 최초 검안했던 북구청보건소 의사 김세현(가정의학 전문의)은 사망시기를 3-5일전(5월 5일 내지 7일)으로 추정한다고 했는데, 검시조서에는 89년 5월 3일-5월 4일경으로 추정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부검의 이원태(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육안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지 7일, 물속에 있은지 2-3일된 시체라고 말했고, 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부검결과 발표 당시 "물속에 있은지 2-3일 이상"이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5월 3일 밤에 실족익사를 했다면 최소한 물속에 7-8일 이상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체 발견 이후 검안과 부검을 했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검찰의 발표대로 5월 3일 검문을 마지막으로 실족익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5) 부검과정 및 결과의 문제점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과정상의 문제점

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는 부검의 철칙인 장갑과 메스 등의 교환수칙을 어겼으며 이는 각 장기가 플랑크톤으로 오염되었음을 의미하고 결국 각 장기내 플랑크톤의 발견으로 인해 검찰의 실족익사판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ㄴ. 골절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폐기종을 확인하기 위한 X-ray검사가 행하여지지 않았다.

ㄷ. 과수연은 사망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여러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시간부분에 대해 무엇인가 기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 위장의 내용물은 사망 2시간 전에 먹은 식사로 여겨지는데, 사망뒤의 부패과정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사망 뒤 몇일 경과했는지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국과수는 밝혀내지 않았다.

- 소장의 내용물을 검사함으로써 소화된 짜장면과 단무지 등이 들어 있는지가 확인된다면 5월 3일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경찰 등에 연행당한 후 사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었음에도 국과수는 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 손과 발의 표모피는 5월의 수온에서 2~3일이 경과하면 형성된다. 이원태(국과수)씨도 이철규 열사의 시신에서 진행된 표모피를 보고 최소 2~3일이 경과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신이 7일간 물속에 있으면 장갑상, 양말상의 표피박리가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것은 이 열사가 5월 3일 실족익사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며 5월 6~7일경 시신이 유기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도 국과수는 과학적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다.

- 이 열사가 최초 추격을 당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상처 등의 염증 변화를 추정하면 5월 3일밤에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연행 당한 후 몇일 뒤에 사망하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음에도 국과수는 염증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ㄹ. 고문과 구타에 의한 외상으로 의혹되는 모든 현상을 국과수는 부패현상으로만 단정함으로써 조직검사를 통해 확증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의혹을 크게 하였다는 것은 부검상의 중대한 미비점이며 불성실할 태도였다.

- 두정부, 두피하의 암자색 제리상 물질에 대한 조직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왼쪽 안구만이 돌출된 것에 대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조직검사를 통해 확증할 수 있는데 조직검사도 행하지 않고 부패현상이라 하고 있다.

- 오른쪽 어깨가 좌측에 비해 심하게 부어 있으며, 반점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좌우 비교 조직검사를 행하지도 않았다.

- 양 손목, 양 발목에 끈으로 묶인 듯한 자국이 남아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한 부종 및 염증유무를 조직검사도 하지 않았고 특히 양 손목의 탈색 부분은 물속에서 무엇엔가 감겨져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부분으로써 타살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② 가검물의 봉인과 운송, 채취 및 조작 과정의 문제점

ㄱ. 가검물을 담은 용기의 소독 및 액체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ㄴ. 가검물 운송과정에서의 공개가 행해지지 않았다.

ㄷ. 가검물의 채취, 조작, 슬라이드 제작 과정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③ 익사판정의 문제점

국과수는 각 장기내의 플랑크톤 발견과 익사폐의 소견으로 익사판정을 내렸으나 미비점이 많고, 육안적 소견이 익사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이 있다.

ㄱ. 익사라면 위장과 폐장에서 익수가 발견되어야 하고, 흡수되었다고 할지라도 흙탕물이 흔적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나 위장과 폐장은 매우 깨끗하였다. 익수가 폐로 흡입되는 경우 폐기종 등의 현상으로 폐가 부풀리며 이에 따라 흉곽의 확장과 폐의 전면에 압흔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ㄴ. 각 장기의 플랑크톤 유무보다는 더욱 신빙성을 가진 것이 치수와 골수에서의 플랑크톤 발견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다.

ㄷ. 미국의 법의학계에서는 장기내 플랑크톤의 유무가 익사를 판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아니라는 점으로 찬반 양론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나 명확한 관점이 없이 익사판정을 하였다.

ㄹ. 전문가들도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와 익사를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물고문에 의한 것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ㅁ. 법의학적으로 타살일 경우 익사를 가장한 시신조작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다. 더욱이 소견이 익사가 아닐 경우 이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④ 기타 부검 결과의 문제점

ㄱ. 알콜(0.08%)의 검출에 대해 : 검찰은 "5월 3일 이 열사가 술이 알맞게 취한 채 도주하다가 실족, 익사했다"는 실족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알콜(0.08%)의 검출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신의 부패와 발효 과정에서 알콜이 생성되는데 그 농도는 0.1%를 초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0.1% 이상 검출되어야만이 사망전 음주를 합리화 해주는 것이다. 또한 이 열사는 평소 술을 못하여 그날 마지막까지 만났던 증인들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ㄴ. 왼쪽 안구 돌출과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 : 국과수에서는 왼쪽 눈알 돌출과 오른쪽 어깨의 부어 있는 상태에 대해 단순한 부패 현상으로 답변하였고, 한쪽 부위에서만 그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은 물 속에서 비평형상태(비스듬히 기운상태)로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물 속에서는 시신이 부단히 전위할 뿐만아니라, 좌우어깨의 수온과 수압은 무시 할 수 있으므로 특정부위만 심하게 부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비평형상태에 있었다해도 눈은 왼쪽에서 어깨는 오른쪽에서 부패가 더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ㄷ. 손목과 발목의 띠 형태와 탈색, 표피 박탈에 대해서 : "그것은 단순히 긁힌 상처다"라고 발표했지만 단순히 긁힌 상처라면 '왜 띠 형태로 나타났는지, 또한 다른 피부와는 달리 탈색된 부위가 왜 띠 형태'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띠 형태로 되어있는 발목의 표피 박탈부위는 무언가에 감겨 있었다고 추정될 수 있으며, 손목의 띠형태 탈색부분 또한 물속에서 무엇인가에 감겨 있었음을 의심케 한다.

ㄹ. 두정부의 두피하 암갈색 젤리상 물질에 대하여 : 뇌는 약간 부패된 상태였고 특이한 골절소견은 외견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정부의 두피하 암갈색 젤시상의 물질(숫가락 크기)이 2군데에 국한되어 발견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과수연에서는 결합조직의 부패현상이라고 발표하였는데 만약 그것이 결합조직의 부패에 의한 것이라면 국소적으로 두 군데에 국한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채 결합조직의 부패현상이라고 단정한 점은 비과학적이고 성급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ㅁ. 사망시기에 대하여 : 부검의 이원태(국과수 법의학자)씨는 처음 기자회견에서 육안적 소견을 종합해 볼 때 사망한지 7일, 물속에 있은지 2~3일된 시체라고 말했다(국과수에서는 물속에 있은지 2~3일 이상이라고 수정 발표). 만약 5월 3일밤 실족사에 의한 익사였다면 5월 10일 발견될 때까지 7일 정도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국과수는 사망 전에 발생한 왼쪽 얼굴의 "ㄱ"자 상처, 오른쪽 종아리 상처, 손등 부위의 긁히고 찢긴 듯한 상처들의 사망할때까지의 경과시간과, 내장의 부패정도 또는 시신의 부패정도, 그때의 환경조건으로 사망시간과 물속에 있었던 시간과의 편차를 명백히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망전에 생긴 상처들이 부패로 오인될 수 있는지 여부와 물속(2~3일)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사망시간(7일간)의 추정이 엇갈리는 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ㅂ.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이 현저히 검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 : 국과수는 "공기 중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더 심한 부패로 안면과 목주위가 까맣게 변색되어 있다"라고 발표했지만, 다른 노출 부위나 손에서는 심한 색깔변화가 없었으며 복부팽만 등 익사의 사인이 경미했던 점으로 보아 부패현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외력에 의한 손상, 울혈현상(사람을 거꾸로 매달면 피가 머리로 모이게 되어 나타남)에 의한 색깔변화, 전기고문에 의한 화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ㅅ. 위속의 밥알 검출에 대해 : 이 열사의 위장에서는 사망시간과 식사시간의 간격이 두시간 정도밖에 안되는 밥알과 시금치등이 검출되었다. 5월 3일 이 열사는 짜장면을 먹은 17:30 이후 식사를 한적이 없었다.

검찰이 실족익사했다고 주장하는 22:56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위 내용물인 밥알 등에 대해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설령 그 시간에 익사했다하더라도, 최소한 5시간 전에 먹은 짜장면이 소장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짜장면 대신 밥알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사망전 분명히 쌀밥을 먹었다는 것이며, 검찰은 이 열사의 당일 행적중 17:30~20:00까지의 행적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 시간에 밥을 먹을 수도 있다고 변명을 했으나 웅색하다.

⑤ 재부검의 거부

범국민위는 구체적으로 권위있는 법의학자 로버트 커쉬너 박사를 초청해서 재부검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에 대해 거부하였다.

⑥ 해부 과정

이 열사의 시신 발견후 6개월 이상이 지난 1989년 10월 29일 14:20부터 19:30까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에서 박규호(조대병원 병리학과장. 63세), 김종중(조대병원 해부학. 39세), 전호종(조대병원 병리학. 36세) 교수의 집도로 이 열사의 시신에 대한 해부가 실시되었다. 이날 해부에는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고 이철규열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보건의료인 공동대책위·보건의료계열 학생대책위', '범국민위'등이 참관하여 공개리에 진행되었다. 해부는 신체의 광범위한 피부절개를 통해 자세한 조사가 실시되었고, 각 신체장기에 대한 생화학적,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장기를 채취한 후 해부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의 오른쪽 종아리에서 피하출혈 및 근육내출혈, 허리부위의 근육내출혈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유류품의 문제

① 발견된 안경

1989년 5월 4일 08:00경 광주시 동구 청옥동에 있는 제4수원지 관리사무소에서 취수탑쪽으로 약 60m 간 지점에서 우측 산위길로 약 4m 가량을 올라간 지점에서 장원유치원(광주시 동구 산수3동 소재) 미니버스 운전기사 김수송씨가 발견하여 5월 13일 08:00경에 광주시 동구 산수3동에 있는 동부경찰서 장원파출소에 신고하여 검찰이 압수하였다. 검찰은 안경발견 지점(검문지점으로부터 175m)을 도주로로 추정하였으며 여기에 검문경찰관들의 진술을 번복하여 도주로로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안경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열사의 안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한 특별한 해명없이 도주로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② 발견된 잠바

1989년 5월 12일 11:45경 취수탑으로부터 청암교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 수원지 출입통제 철조망안, 도로로부터 9m 떨어진 지점에 서있는 파리똥 나무및에서 의경 소형민이 베이지색 계통의 잠바를 발견하여 검찰에 인계하였다. 검찰은 이를 이 열사의 것으로 단정하였으나,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이 역시 이 열사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잠바 발견 장소는 위도로변으로 내린 비(5월 6일 8.1㎜, 5월 10일 2.8㎜, 5월 11일 14.7㎜, 5월 12일 5.2㎜)가 흘러내리는 위치인데도 발견된 잠바는 암전히 개어져 있는 상태로 전혀 젖어 있지 않았다.

③ 잠바 호주머니에서 발견된 유류품

당일 검문 받기전 '길목카페'에서 88라이트 담배를 한갑 샀는데 (이는 당일

이회복양이 차 값을 계산하면서 담배값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 발견된 담배 속에는 6개피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평소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는 이 열사의 담배 습관으로 봐서는 카페에 있던 30-40분 사이에 14개피를 피운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도주중에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담배는 성냥처럼 조그만 물방울이나 습기에도 노랗게 변색이 되고 풀어 헤쳐진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상수리 나무밑에 있었기에 점퍼나 담배, 수첩이 비에 젖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하나 의문이다. 3일 이후 서너번의 비가 왔고 점퍼의 발견장소는 위 도로변 등에서 내린비가 흘러내리는 위치였다.

점퍼 발견 당시 안주머니에 들어 있던 수첩은 위로 넘기는 수첩이었으며 찢어진 흔적만 있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열사가 네조각으로 찢어버렸던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는 옆부분에 뜯어진 자국이 있었다. 따라서 발견된 수첩과 찢어 버려진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도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④ 뒤늦게 발견된 20만원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특수물리실에서 5월 14일 09:30경 바지를 개봉한 후 수색하던 중 바지 뒤쪽 우측 호주머니에 10,000원권 지폐 20개가 든 흰 봉투가 반으로 접힌 상태로 들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5월 14일 이전에 경찰이 사체에 대해 7-8 차례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특수물리팀에 의해서 발견된 것은, "이 열사가 택시를 타고 호반산장까지 가려면 차비만해도 4천원인데 어떻게 유류품에서 3천원밖에 나오지 않느냐? 또한 이철규 열사는 반으로 접히는 지갑을 가지고 다녔고 식당에서 1만원권으로 계산한 사실이 2일날 있었다"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된 후에 발견되었다.

⑤ 발견되지 않은 유류품

박효(88년도 조대 여학생회 간부, 후배)양의 증언에 의하면 2일 밤 21:40-50경에 지산유원지 음식점 '수궁'에서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이 열사가 음식값을 반으로 접은 지갑에서 1만원권 지폐로 계산을 했으며, 5월 3일 '길목카페'에서 만난 이희복(24. 호남대 국문과 졸. 후배)양은 볼펜으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한편 심재수(21.조선대총학생회 홍보부. 후배)씨는 4월말경 양동시장에서 런닝과 팬티를 구입하여 학교에 두고 있다가 5월 3일 아침전화를 받고 20:00경 금호고 앞에서 이 열사에게 건네 주었다. 런닝과 팬티는 하얀 바탕에 파란줄이 들어있으며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건네 주었고, 이 열사는 그것을 사파리 주머니에 넣었다고 한다. 그런데 발견된 유류품중에는 지갑과 볼펜 그리고 런닝과 팬티가 없다.

4. 김용갑 열사 사건

(1) 사건의 경위

김용갑 열사는 1966년 2월 28일 강원도 홍천에서 출생하였다. 대명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1982년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고 1985년에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1989년 속초 동우전문대학교 양식과에 수석 입학하였다.

동우전문대학은 1980년에 설립되었고 다른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교육시설이 형편없고 교수가 부족하는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기 그지없어 학생들의 개선요구와 항의가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대학측은 학생들의 개선요구에 대해 학생과 직원들과 깡패를 동원하여 폭력과 협박으로 대처하였다고 한다.

동우전문대 학생들은 1988년에 '동우학원민주실천위원회(동민위)'를 비밀리에 구성하고 학원자주화투쟁을 전개하였다. 김용갑 열사는 동우전문대에 입학한 후 대학신문사 기자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1989년 4월에 편집자율권을 요구하며 항의 사퇴하였고, 9월에는 동민위에 가입하였고, 11월 제5대 총학생회장선거에 운동권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총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한 이후 김용갑 열사를 비롯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지지자들은 엄청난 폭력과 탄압을 당하였으나, 학생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김용갑 열사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김 열사가 1990년 3월부터 총학생회장으로서 활동을 시작하자 학교측은 총학생회장직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지역의 조직폭력배를 학생과 직원으로 영입하여 노골적인 탄압을 하였다고 한다. 3월 6일부터 27일까지 7차례에 걸쳐 납치,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탄압을 받았다고 한다. 김 열사는 3월 27일 학생회장실로 난입한 학원폭력배 5명에 의해 감금되어 무릎을 꿇린 채 학생회장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를 받으며 구타당하였다. 김 열사는 3월 27일 15:00경 자신을 폭행한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겠다며 학생회장실을 나갔고, 이들과 만나 19:00경 속초시 노학동 소재 스넥집, 20:20경 시내 술집, 21:40경 동일갈비, 22:50경 호프집에 들린 후 23:20경 노학동 소재 스넥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로부터 2시간 35분후에 사망한 채 시신이 인도에서 발견되었다.

(2) 경찰의 수사결과

속초경찰서가 1990년 4월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사상황보고(동우전문대 학생회장 교통사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건개요

- 발생일시, 장소

·1990. 3. 28. 02:00경

·속초시 노학동 도로공사 연수원앞 노상

- 피해자

·본적 :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법치리 323

·주소 : 경기도 하남시(광주) 신동 213 동우전문대학생회 회장 (양식과 2년) 김용갑 24세

-. 피의자

·주소 : 속초시 교동 822 무직, 문종식 33세 / '78년 부산해양전문대 졸 / '78년-'88년 외항선 승선 / '88년-'89년 쌀가게 운영 / '89년 9월-90년 2월 서울 비너스패션 외판

* 처 : 국민학교 교사

-. 범죄사실 : 피의자는 1990. 3. 22. 경 피의자 소유 서울1조5102호 엑셀승용차를 도박판에서 빌린 돈 140만원을 갚지 못하여 김봉태에게 담보로 맡겨두었는바, 3. 28. 01:00경 속초시 동명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옆 골목을 지나가다가 그곳에 세워놓은 위 차량을 보고 이를 운전하여 서울로 갈 생각으로 보관자 김봉태의 승낙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스페어키로 시동을 걸어 미시령쪽으로 가던중 정아콘도 부근에 이르러 돈을 구하여 빚을 갚고 차를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돌려 내려오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앞서가는 검은색 승용차를 추월코자 좌측코스로 들어서는 순간 피해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돌렸으나 좌측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하퇴부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 도주한 것임.

2) 사고후 피의자 행적

피의자는 피해자를 충격후 차에서 내려 뒤를 돌아보았으나 피해자의 사체가 보이지 않자 겁이 나고 당황하여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여 피의자가 살고 있는 속초시 교동 소재 로얄아파트 옆 골목에 차를 세워두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서 익일 오후 한미시트카바에 가서 자동차카바를 구입하여 차를 덮어둔 후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매형 최호규(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차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앞유리와 빽미러가 깨졌는데 부품을 사 갖고 오라고 하여 매형이 진주 대동부품센터에서 사갖고 온 부품으로 손수 빽미러 등을 교체한 것임.

3) 사건신고 경위

대명운수 강원1아7008호 운전사 박경호는 원성운수 강원1아4022호와 같이 속초에서 승객 3명씩(일행 6명) 태우고 설악동으로 가던 중 현장 전방 약 400미터 지점에서 마주오는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기 때문에 겨우 충돌을 모면하고 교행하여 사고현장에서 우측 도로변에 사람이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술취한 사람으로 알고 그대로 지나가 설악동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현장에 사람이 계속 누워있으므로 깨워볼려고 가까이 갔던 바 입에서 피가 나오므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3. 28. 02:27경에 교동파출소에 신고한 것임.

4) 검거(자수)경위

- 사건현장에 떨어진 후사경(빽미러)을 확인한바, 신형 엑셀 승용차 좌측후사경으로 밝혀져 강원도 동해파출소에 비치된 차량대장에서 속초, 고성, 양양지역 엑셀차량 331대의 명단을 작성, 차량별 당일 행적 및 차량 손괴여부 확인.

- 사건 당일 01:00경에 본건 사고차량을 보관중이던 김봉태로부터 차량 도난신고를 접수.

- 같은 날 14:00경 본건 피의자(문종석)가 김봉태 집으로 전화를 걸어 그 차를 자기가 갖고 서울로 올라왔으니 찾지 말라는 전화.

- 밤중에 차를 갖고 서울로 갔다는 사실이 의문시되어 전신전화국과 협조, 피의자의 집과 자동차 보관자(김봉태)의 집 전화 수발 사실 확인토록 의뢰함.

- 같은 날 18:00경 김봉태 집으로 서울에서 피의자가 전화를 걸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 결과 서울에서 전화한 것이 아니고 속초에 거주하는 누나 문명옥의 집에서 전화한 것으로 체크되어 문종석을 범인으로 확정.

- 동일 야간에 누나 집앞에 철야 잠복하였으나 출입 사실 발견치 못함.

- 익일(3. 29.) 10:00경 형사계 경사 최영삼 외 1명이 누나집을 확인 결과 문종석이 독소에 없으므로 자수시킬 것을 권유후 명함을 주고 귀서함.

- 같은 날 19:30경 피의자가 손수 수리해 놓은 차량을 갖고 외지로 도주하기 위해 누나집에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할 때 누나가 "형사들이 벌써 찾아와 자수시키라며 명함까지 주고갔다"는 등으로 자수를 권유하여 누나와 같이 경찰서로 출두 자수한 것임.

5) 조치

- '90. 3. 3- 구속영장
- '90. 4. 4. 현장검증
- '90. 4. 6. 사건송치

6) 피해자의 사건 당일 행적

- 19:00 엄지스넥 학생 7명 막걸리
- 20:20 동경클럽 학생 6명 맥주 9병
- 21:40 동일갈비 학생 6명 갈비 및 소주 2병
- 22:50 하이델 호프 학생 6명 맥주 각 1쪼끼
- 23:20경 정윤석과 헤어져 노학동쪽으로 걸어갔음

*사건 직후 동료학생이 피해자가 찾아간 사실 여부를 묻자 왜 그러느냐고 물어 교통사고라고 하자 함구하다가 그날 자기가 집에 없어서 못만나고 갔을 것이라고 주장.

7) 부검 결과

- 부검일시, 장소

·199- 4. 6. 10:00-10:50

·속초의료원 부검실

- 참여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검사 김홍면, 속초경찰서 수사과장 김봉연 외 직원 6명, 피해자 4촌형 이창엽 30세, 지역민주청년회장 이태우 30세, 학생회 간부 박정섭 외 2명

- 집도의사

집도 ; 김봉수 외과원장 의사 김봉수, 입회 ; 속초의료원장 의사 노성익

- 부검결과

·사인 ; 뇌출혈

·외상 ; 하악 개방성골절(열창 3Cm) 좌하지부 골절, 좌측귀 출혈, 우측쇄골상부 찰과상, 우측복부 찰과상(10×15Cm), 요추중앙 및 우요추부 찰과상, 우견갑부 찰과상, 우측흉부 찰과상, 좌측하지부 찰과상

8) 의문점에 대한 해명

① 의문점 ; 피의자는 검은색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나 목격자에 의하면 다른 차는 없었다.

·해명 ; 목격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용의차량으로 보이는 흰색 승용차와 교행하였다는바, 사고차량은 사고현장에서 차를 세우고 내렸다가 갔으므로 앞차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것임.

② 의문점 ; 피의자가 현장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없는가?

·해명 ; 사건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가 나타나지 않음(현장검증시 물을 뿌리고 실험)

③ 의문점 ; 사고현장에 핏자국이 없고 차량 손괴 정도가 적다.

·해명 ; 외상이 크지 않아서 출혈이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비가 왔으므로 혈흔이 남지 않고 자동차와 충돌 각도에 따라 차량손괴가 다름.

④ 의문점 ; 사체가 반듯이 누운 자세이고 한쪽 양말이 반쯤 벗겨져 있다.

·해명 ; 자동차와 충돌 상황에 따라 피해자가 넘어지는 자세가 다르며, 양말은 자동차와 피해자 왼쪽 하퇴부가 심하게 충격(골절됨)하면서 밤바에 스치고 신발이 벗겨져 2-30m 날아갈 때 걸려서 벗겨질 수도 있음.

⑤ 의문점 ; 우측 신발은 후방 23m 지점, 좌측 신발은 전방 30m 지점에서 발견.

·해명 ; 우측 구두는 전방 11.6m, 좌측 구두는 후방 25.6m 지점에 떨어져 있었는바, 자동차 앞 밤바 좌측 모서리에 피해자 좌측 다리가 심하게 충격(하퇴부가 골절되고 3겹으로 된 신발띠가 짤라짐)되므로 좌측 신발은 자동차방향(뒤)으로 멀리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부딪치지 않은 바른쪽 발의 신발은 앞으로 나가 떨어짐.

⑥ 의문점 ; 자동차 앞 유리를 피의자 혼자서 갈아 끼울 수 없다.

·해명 ; 피의자 혼자서 충분히 갈아 끼울 수 있음.

⑦ 의문점 ; 목격자의 진술에 당시 용의차량에 3-4명이 타고 있었다.

·해명 ; 사고 직후 현장 전방 400m 지점에서 용의차량과 교행한 대명택시 운전사(신고자)는 당시 3,4명이

라고 그 차량에 안개등과 뒤에 바람받이가 부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당시 사고차량은 앞유리가 거미줄처럼 금이 가서 시야가 보이지 않아 운전하기 힘들 정도여서 교행하면서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고차에는 안개등 및 바람받이가 없는 점으로 보아 잘못 보았거나 다른 차를 본 것으로 인정.

9) 분석 판단

① 일부 학생 및 지민청측 주장

- 사건 1주일전에 학생과 직원 김진이 학생회장을 조종하고 있는 심용재('89년도 데모주동자로 퇴학)를 만나 "학생회장을 선동하면 죽여버리겠다. 죽이는 방법은 바다물에 빠뜨려 죽일 수도 있고, 차로 갈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사건 다음날이 학생회 발대식 예정일이며, 지역출신 학생모임인 써클 "탑"(학생회측에서는 구학대라 함) 회원들이 평소 학생회 간부들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회장이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닐 정도(사고시 주머니에서 파도 소지)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학교측의 사주를 받은 일부 세력에 의한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이라고 주장.

② 분석 판단

- 계획범이라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나 사건후 피의자가 자동차 보관자에게 차를 갖고 갔다고 서툴게 전화를 걸어서 검거되는 등 치밀성이 없고,

- 공범이나 배후세력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 카바나 부속을 사오도록 하였을 것인즉, 카바를 피의자가 직접 사오고 진주에 있는 매형에게 부탁하여 부품을 사오게 한 점,

- 도주 자금 50만원이 없어서 누나집에 돈을 빌리러 갔다가 누나 설득으로 자수한 점,

- 사건후 누나집 전화를 이용한 점으로 보아,

- 다른 장소에서 죽인 후 현장으로 옮겨 교통사고로 위장하였다면 상처 부위에 생활반응(피하출혈)이 없는 상처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하출혈이 없는 상처가 한 곳도 없음.

* 이상 각 항을 종합해 볼 때 공범이 있는 위장살인이 아니고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실함.

(3) 수사결과의 문제점

1) 사망 직전 행적의 문제점

경찰 수사결과에는 3월 27일 23:20경부터 사망시까지 김 열사의 행적이 밝혀져 있지 않다. 경찰은 김 열사가 27일 23:20경 정윤석과 마지막으로 헤어져 학생회 총무부장 집쪽으로 걸어갔으며, 사건 직후에 동료학생이 총무부장을 집으로 찾아가 김 열사가 찾아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총무부장은 함구하다가 자기가 집에 없어서 못 만나고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총학생회 총무부장에 의하면 당시 찾아온 사람은 동료학생이 아니라 학생과 직원 김진이었으며, 총무부장이 위 김진에게 자기가 없어서 못 만나고 갔을 것이라고 말한 바도 없다고 한다. 또한 총무부장은 21:30경부터 집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 김 열사가 23:20 이후에 자기의 집을 방문하였다면 만났을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김 열사는 총무부장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2) 스키드 마크가 없는 것의 문제점

문종석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당시 검은 물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사고 현장의 노면에는 스키드 마크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비가 왔기 때문에 스키드 마크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장검증시 직접 물을 뿌리고 실험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3월 28일 02:00경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속초기상청의 자료에 의하면 속초에서 비가 온 것은 28일 02:35경부터로 나타나 있다. 또한 비가 오는 경우에도 급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는 스키드 마크가 남는다고 한다. 경찰의 발표대로 문종석이 승용차로 김 열사를 친 것이라고 한다면 충격 지점으로부터 7.6m 떨어진 지점에 시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승용차의 속도는 꽤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상황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스키드 마크가 남아야 할 것이다.

3) 사고 차량 앞유리 교체의 문제점

문종석은 김 열사와 충돌하면서 차량의 앞 유리와 좌측 백미러가 파손되었는데, 이를 도주후에 자기가 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일반인도 혼자서 충분히 갈아끼울 수 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전문 유리시트업체 근무자에 의하면 신형 엑셀승용차는 다른 차종과 달리 본드접착식이어서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기술자도 전문적인 장비 없이 앞유리를 혼자 교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4) 문종석의 행적상 문제점

문종석은 고향이 속초로서 속초의 지리를 잘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발표한 문종석의 행로는 속초의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택할 수 있는 행로가 아니다. 문종석은 서울로 가기 위해 미시령쪽으로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되돌아왔다고 하는데, 문종석이 처음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곳으로부터 미시령쪽으로는 지름길이 있었는데도 문종석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회하여 결국 사고지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5) 시신 발견 당시 상황의 문제점

시신 발견 당시 김 열사는 차도의 우측노면(폭 1미터 정도의 흙길)에 차렷자세로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구두는 한쪽씩 시신의 앞뒤로 떨어져 있었고, 나아가 한 쪽 양말이 반즘 벗겨져 있었다.

과연 차로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반듯하게 똑바로 누운 상태로 있을 지 의문이고 구두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특히 양말이 반 쯤 벗겨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누군가가 땅바닥에 끌고 다닌 흔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2부 평가

1. 네 사건의 성격규정 : 의문사 사건

(1) 정치적 의문사 사건

박창수 · 이내창 · 이철규 · 김용갑 열사 사건은 모두 희생자가 민족민주운동을 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그 사망의 경위와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전형적인 의문사 사건이다.

박창수 열사는 노동자의 신분으로 노동운동에 종사하였고, 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는 대학생으로서 학생회의 간부로 학생운동에 종사하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위 네 사건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사인을 정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정치적 압력과 은폐의 노력의 의해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로서 '정치적 의문사'라고 할 수 있다.

(2) 진실규명이 필요한 의문사 사건

수사기관은 나름대로의 수사과정을 거쳐 박창수 열사 사건은 자살로, 이내창·이철규 열사 사건은 실족에 의한 익사로, 김용갑 열사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하였다. 김용갑 열사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운전자가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나, 박창수·이내창·이철규 열사 사건의 경우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되었고, 수사결과 그 누구도 형사처벌된 바 없다. 다만 박 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계호책임을 맡았던 교도관 2명이 계호감독상의 책임을 지고 파면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수사결과에는 많은 의혹과 모순 및 미비점이 내포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하여 피해자측에서는 수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사인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유족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수긍할만한 해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

결국 위 네 사건은 수사기관이 나름대로 사인을 밝히고 수사를 종결하였지만, 여전히 사망의 원인과 경위가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의문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의문사로서의 특징

(1) 부검과정과 결과의 신뢰성 문제

위 네 사건에서 모두 사체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부검결과는 전혀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많은 의혹만이 제기되었으며, 이러한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체를 일방적으로 탈취하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부검을 실시하겠다던 약속을 파기하고 피해자측의 참여를 배제한 채 부검을 실시하고 부검결과의 완전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일방적인 부검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거부는 그 자체로 부검결과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박 열사의 사망에 국가권력의 개입이 있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검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논거가 된다.

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 사건의 경우 부검과정에 유족측이 입회하였으나, 여전히 수사기관의 부검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유족측이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는 부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검과정에 피해자측이 참가하여 부검이 공개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측이 형식적으로 부검에 참여한다고 해서 부검 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사망사건의 부검에 관하여는 그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측이 추천하는 의학적인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부검소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이들의 견해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부검소견서가 수사기관의 부검의만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의 추천으로 참여한 의학전문가도 부검소견서 작성명의자로 참가하게 되면 그 부검소견서는 피해자측을 설득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사망과정에 대한 국가형사기관의 개입 의혹

김용갑 열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흔적이 없으나, 박창수·이내창·이철규 열사 사건의 경우에는 사망과정에 국가정보기관 또는 형사기관이 개입한 의혹이 짙다.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중 부상을 당하였고 안기부 요원이 전노협 탈퇴공작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의혹이 있고, 이내창 열사 사건의 경우 신원미상의 각 남녀 1명을 만난 이후 행적을 감추었고 안기부 수사관 남녀 각 1명이 사망한 섬에 같이 갔다는 의혹이 있고, 이철규 열사 사건의 경우 경찰로부터 검문을 받고 행적을 감추었다가 사체로 발견되어 경찰에 의해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이 있다. 이러한 국가정보기관 또는 형사기관의 개입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여 의혹을 더 하고 있는 것이다.

(3)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불충분한 해명

위 네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나름대로 수사를 전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해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발표할 당시까지의 수사로서 이미 모든 의혹이 충분하게 해명되었고, 피해자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이나 의혹은 해명할 필요성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여길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위 네 가지 사건에서 피해자측이 제기하는 수사결과의 문제점들은 모두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결정을 내린 후에는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의문사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진상을 밝혀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의문사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

(4) 피해자측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의 부족

위 네 가지 사건 모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측의 주장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된 것도 아니다.

피해자측의 주장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로는 물증도 있을 수 있겠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결정적인 물증이 발견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인이 조작·은폐된 경우 이에 관여한 자들이 양심선언을 하거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진상규명에 결정적일 것이다.

내부고발자 또는 양심선언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서도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3. 의문사 사건의 해결방안

(1) 의문에 대한 진실규명

의문사 사건의 해결의 출발점은 의문에 대한 진실규명이다. 사망원인과 동기, 사망경위가 우선 분명하게 가려져야 그 다음으로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문제이다.

진실규명의 결과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이 제기하는 의문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해명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의문사 사건의 사망동기와 경위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어 타살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피해자를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어떤 방법으로 추모할 것인가 하는 다음 단계로 문제의 초점이 이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제1단계로서 의문에 대한 진실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론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 기존의 수사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의문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민간차원의 진상조사단으로는 수사권이 없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네 사건의 경우 모두 진상조사단 또는 대책위원회가 꾸려져 목격자를 확보하고 기타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활동을 한 바 있으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의 의문과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그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거나 사망의 동기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하였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활동도 이철규 열사 사건에서 궁극적으로 사망의 원인이나 동기를 밝히는 데는 실패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뒤집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은 수사권을 가진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권 차원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측과 협조하여 철저하게 수사를 전개한다면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우리 역사상 의문사 사건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과제로 설정하고 정권 차원에서 전력을 투구하여 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찰이나 검찰 등 일반수사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자기들의 기존 수사결과를 번복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해 처음부터 새롭게 수사를 전개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의문사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법적인 책임추궁

법적인 책임추궁문제는 진실이 규명된 이후에야 가능하게 될 것이다. 진실규명의 결과 타살로 판명이 된다면 직접적인 가해자와 그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기왕의 수사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한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단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것이 증명되어야만 인정되는데, 사망원인이 자살이거나 단순한 실족사 등으로 인정된다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막연하게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심적인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라거나 경찰에 의하여 쫓기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박창수 열사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 계류중이나 수사기록 일체를 입수하여 검토할 수 있게 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으나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는데는 역부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수사결과를 뒤집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관련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4. 결론

의문사 사건은 우리 역사가 한 번은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자 아픔이다. 박창수·이내창·이철규·김용갑 열사의 사건은 대표적인 의문사 사건으로서 개별 사건에 관하여 추모사업회가 설립되어 진실규명을 위한 많은 활동을 하였고 수사결과에 대해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문제를 제기한 몇 안되는 귀중한 사건이다. 피해자측에서 추모사업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전개하여 이 정도의 자료를 정리한 사건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의문사 사건의 해결은 위 네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위 네 사건을 재수사할 전담수사기구를 설치하거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피해자측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기 위한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의문사 규명에 있어서의 국과수의 한계

장임원 (중앙대 의대 교수, 예방의학)

편집자주 > 학술회의 당시 장임원 선생님의 토론을 녹취하여 싣습니다.

먼저 토론의 소주제로 저에게 청해왔던 것이 의문사 규명에 있어서 국과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윤성 교수님께서 잠깐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지만 국과수가 무한책임을 지기에는 그 기능과 역할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책임이라는 용어보다도 국과수의 한계다 저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아까 이윤성교수님께서 의문사라는 법의학적 용어는 없다고 말씀해주셨고 박원순 변호사님께서는 나름대로 의문사의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문사의 정의는 없기 때문에 의문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 의문사의 특징

(1) 타살가능의 정황
(2) 사건발생목격자의 부재
(3) 수사기피 또는 은폐의 의혹

그렇다면 의문사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이유에 따라서 사망원인을 분류할 때 병사, 사고사, 자살, 타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타살이라고 처리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병사, 사고사, 자살이라고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살의 가능성의 정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의문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문사의 경우에는 역시 **죽음의 현장 혹은 사건 발생의 목격자가 부재하거나 혹은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치적, 혹은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해서 수사를 기피한다거나 수사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문사의 정의를 내리기보다 의문사의 특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 의문사 규명을 위한 요건

(1) 사건 전후의 정확 파악
(2) 부검에 의한 의학적 소견

(3) 수사당국의 의문사 진상규명 의지

다음에 우리가 의문사 규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하겠느냐, 무엇을 규명했을 때 의문사가 완전히 규명됐다고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사건 전후의 정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의문사의 특징이 타살가능의 정황이 있을 때 의문사라고 얘기하는데 사건 전후의 정황파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중심에 두고서 얘기되고 있는 **부검에 의한 의학적 소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수사당국의 의문사규명을 위한 의지가 확실히 섰을 때** 의문사는 규명될 수가있습니다.

이 세가지 요건이 동시에 갖춰졌을 때 의문사 규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컨데 부검에 의한 의학적 소견만 있고 사건전후의 정황파악이 안됐다거나 수사당국의 의지부족으로 수사가 기피됐다거나 은폐됐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문사 규명을 할 수가 없는거죠.

3 의문사 규명의 내용

(1) 누가
(2) 언제
(3) 어디에서
(4) 어떻게
(5) 무슨 이유로

그 다음에 의문사 규명의 내용, 어떤 것들이 규명돼야지 완벽하게 그 진상이 규명됐다고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누가 죽였느냐', '언제 죽였느냐', 또는 '언제 죽었느냐', '어디에서 죽였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죽였느냐'**,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을 때 진상규명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박종철 군의 경우를 보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에 대해 규명이 가능했던 겁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수사관들에 의해서 그랬던 거지요. 그러나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 부분들이 감춰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박종철군의 응급조치를 위해서 현장에 갔던 부산대학교 부속 용산병원에 있는 오윤상교수가 한 양심선언이 단초가 되어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까지'가 규명되었습니다. 저는 박종철 열사의 사건도 정말 잘못했으면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내창군의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내창군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박창수 열사 사건에서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별로 할 일이 없었고, 이내창 열사의 사건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었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이것은 규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황도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무슨 이유로' 죽였느냐 이것이 규명이 안된 겁니다.

결국 의문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규명되려면 다섯가지의 내용들이 충족됐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의문사 규명에 대한 국과수의 한계

(1) 법의학적 소견제시에 그치는 제한된 역할
(2) 국과수의 구조적 비독립
(3) 법의학 전공자의 태부족
(4) 법의학 전문의 제도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기회의 부족

이렇게 의문사를 규명하려면 다섯가지 내용을 규명해야 하는데 국과수가 다섯가지 내용을 규명하는데 있어서의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의 한계가 **법의학적 소견제시에 그치는 제한된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런 것들을 규명하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흐는데 그 수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이윤성 교수님께서 미국의 경우를 말씀하셨지만 선진국에서는 00 제도라 해서, 법의관제도, 000 검시관제도, 수사권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법의학부와 법과학부로 분재되어 있고 법의학부내에 법의학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검을 주로 담당하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편재상으로는 내무부장관 직속입니다. 그러면서 감독권은 경찰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찰청의 추천에 의해서 형식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권과 소장에 대한 실질적인 임명권이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에 의해서 경찰이 수사를 집행하기 때문에 경찰청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집무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구조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의학 전공자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태부족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96년도 부검을 해야할 변사가 2,500건이었습니다. 추세를 보면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의가 일곱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명 중에 두 사람은 행정책임을 맡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부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수사권을 줘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수사권을 줘도 수사권을 담당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대학에 계시는 법의학 선생님께 부검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법의학자의 상황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3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8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법의학 전공자가 법의학적 소견만 내는데도 엄청나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분들에게 수사권까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수사권을 감당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학 전공자를 많이 양산할 필요학 있는데 지금 법의학전문의 제도조차도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부인과, 내과 전문의가 있는데 법의학 전문의 제도가 없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부검율이 낮은 나라도 드뭅니다. 병사라 하더라도 부검을 해서 사망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법의학적 지식을 축적하는데, 그리고 의학의 지식을 축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권에 있는 탓으로 해서 '두번 죽는다' 해서 부검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타살로 추정되지 않은 병사, 자살, 사고사가 타살의 정황이 있으면 의문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병사의 부검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병사 가운데도 엄청난 타살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네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의문사 진상규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데는 이러한 요건들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덧붙일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소견을 발표하는 것하고 경찰에서 수사종합결과를 발표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검소견하고 수사종합발표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검소견에다 수사에서 얻은 것을 종합해서 사고사냐, 병사냐, 타살이냐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부검소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서 발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 개선대책

(1) 국과수의 구조적 독립 및 수사권 확보
(2) 법의학 전공자 확보 및 전문성 제고의 제도장치와 기회의 확대
(3) 정의로운 국가권력

그렇다면 이러한 한계는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국과수의 독립성이 보**

장되어야하는데 천정배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사권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 대학의 법의학자들에게 검시관, 법의관 등의 제도를 도입해서 수사권을 줘야합니다. 이것은 전문성 제고의 제도적 정착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됐다고 하더라도 **정부권력이 정의롭지 못하면 전부 사상누각입니다.**

더불어 저는 의문사의 진상규명보다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문사가 발생한 다음에 규명하는 것은, 아까운 생명이 죽은 다음에 뒷북치는 겁니다.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권력이 서야합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내창 열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학술제 자료집 55쪽에 있는 "안기부 인천지부에 근무하는 타자수 도연주양과 그의 남자 친구 백승희 군 등이 유인납치 살해했다는 주장도 덕성호 선장 이현우 등과 직접 대질 및 행적수사에서 이 사람들이 덕성호를 타고 유림해수욕장이 있는 서도로 건너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16일날 여수에 도착해서 17일날 현장세 가서 이현우 선장을 맨먼저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분명히 도연주양과 백승희군이 일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타살의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소견을 보면 두부에 치명적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중상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물에 빠뜨렸을 때 자구책을 쓸 수 없을 정도의 구타를 가해서 물에 빠뜨린 다음에 익사로 변형시킨거다 이렇게 주장했스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회 내무위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타살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정황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시한 소견 등을 봤을 때 제 주장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되고 있던 겁니다. 이이것은 정의로운 국가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천정배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1. 서 론

의문사는 장기간에 걸친 독재정권 지배의 산물이다. 개개의 의문사 뿐만 아니라 김구 살해사건 등 우리의 역사에 있어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진상이 은폐되고 조작된 사건이 다수 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인권을 신장시키는 차원에서 정치적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문사 문제를 올바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의문사 문제는 바로 과거청산의 문제이고 역사왜곡의 시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군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라는 것을 자랑하는 김영삼 정부는 군사쿠데타 단죄 및 광주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등과 함께 반드시 의문사 문제도 해결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정권은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

진정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려면 반드시 의문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 땅에 의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포괄적인 청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제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다.

진상조사를 담당할 주체(또는 기관)은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먼저 진상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진상조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강제 조사권'이 주어져야 한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을 구인 또는 구속 등의 방법으로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의문사 진상규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관은 검찰과 국회가 있다.

검찰의 경우는 능력은 충분하지만 무엇보다도 '의지'가 전혀 없기에 진상조사의 주체가 되어서는안된다. 또한 검찰이 형사사건의 일부로서 의문사 문제를 수사하기에는 공소시효의 문제 등 현행법상 맞지 않는 점이 많다.

국회의 경우는 의지, 능력, 권한 등 세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다.

먼저 '의지' 문제의 경우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심조차 없는 신한국당이 다수이기에 이에 관련된 기관을 구성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국회의 결의에 의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더라도 지난 번 한보청문회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한으로는 그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하지만 의문사 규명을 위한 특별기구가 구성되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조사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민여론의 수렴·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국회가 의문사 진상규명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별도의 전담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 기구는 전문적인 수사 및 조사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반드시 포함하여 국회, 대법원, 대한변협,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신망있고 중립적인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이 기구는 첫째, 검찰 수사권에 필적하는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둘째,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기구의 협조 요청에 반드시 협력하도록해야 한다. 셋째, 조사과정을 매 분기별 또는 월별 보고 등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3. 결 론

진상규명 등 의문사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범국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말로만 과거청산을 외치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는 김영삼정부하에서는 안될 것이다. 의문사 진상규명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의지를 가진 새로운 정권 하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의문사

허영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장).

의문의 죽임을 당한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자살로는 인정 할 수 없다 라는 믿음 때문에 16년의 긴긴 세월을 사망의 원인과 죽인 자를 찾아 헤메이고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이 과연 자살일까? 타살일까 하는 것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의 양심 선언이나 고백에서 밝혀진다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지금에 와서는 특별법을 만들어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으나, 부검 의학자가 사건 기록을 본다고 하면 이것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는 확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군정 하에서 이루어진 녹화 사업을 시발점으로 하여 각 대학 학장에게 지도 휴학(일명 특수 학적 변동자) 이라는 권한을 부여시키고 강제로 휴학을 시켜서 지원 입대케 하고 또는 시위 현장에서 강제 연행하여 입영시켜 죽여 놓고 부모가 나같이 무식하면 자살로 처리하고 부모들이 똑똑하고 법을 알면 사고 사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1988년10월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군대에서의 죽음은 군기 사고에 의한 사망자 2,670명이고, 안전사고로 죽은 군인은 3,723명 있다고 하였고 군기 사고 가운데 2,254명이 자살이고 폭행에 의한 것이 2백90명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에 신고된 군대 의문사 관련자 18명중에 사건 기록이 있는 10명중 8명은 자살이 아니고 저네들의 철저한 거짓으로 인한 은폐 행위에 의하였다는 것을 부검 의학 서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의 죽음" 자체는 "부모의 무지"와 "국과수의 철저한 거짓말" "강력한 공권력"이 만들어 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10월부터 시작하여 135일이라는 긴 겨울 동안 기독교 회관 3층 세멘트 바닥에 모포를 깔고 추위에 시달리면서 전경과 부딪치면서 줄기차게 투쟁한 결과 5공 청문회에서 의문사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급기야 특위일정이 잡혔으나 가해자 측 증인이 나오지 않고 TV 중계도 하지 않는다 하여 우리의 거부로 무산시키고 말았으며, 계속되는 농성 속에서 4명의 어머님이 감옥에 끌려가는 일도 발생되었다. 1990년부터 10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 마저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현 대통령 김영삼씨는 3당 합당하기 위하기 직전에 여러 어머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힘이 생기면 꼭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나 아무런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당 합당으로 대통령이 된 뒤에는 옛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니 식언을 하는 인물이 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정치인의 말을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바보였겠지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안기부법 철폐하고 특검제를 도입하라 하시던 분

이 지금은 안기부법이 필요하다고 하니 조석지변의 지조를 가지고 무슨 대안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별검사제를 주창하며 야당3당을 방문하여 평민당 총재 김대중씨와, 민주당 총재 김영삼씨는 서로 자기 당의 주장이라 했었는데 유독 공화당 총재 김종필씨만은 특별 검사제를 반대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우리 의문사는 특별검사 제도가 꼭 필요 하느냐 하면 사건 당시에 관련되었던 사람이 지금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죽을 일을 재조사하며 그 진실을 밝혀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건 당시 육군본부 범죄수사대를 방문하였는데 예하부대 누구는 몇 기생 누구는 동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선후배의 잘잘못을 파헤쳐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나더러 "죽인 사람을 데려 오라", "죽인 사람을 본 사람도 데려 오라" 했다면 얼마나 황당하며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지금은 육군본부에서 높은 자리에 있답니다,

검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땅히 검사 지휘 아래 부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부모의 참여 하에 부검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배제하고 사건을 처리하였던 사례가 있었고 "참여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찾아갈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회 유명 사립 필적 감정소에서 필적을 감정한 결과 서로 상이하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국립 과학 연구소에서는 동일 필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첫번째 자료를 회사에 입사하면서 제출한 각서 원본, 두번째, 세번째 자료는, 경찰서에서 쓴 각서와 진술서를 가지고 대조한다는 설명을 잘 하여 놓고 원본을 배제시키고 두번째, 세번째 자료만 가지고 필적을 대조하여 동일 필적으로 발표하여 버린 예가 있습니다, 우측 전 두부에 길이 15cm 크기의 두개골 파열상이 사체에서 발견되었는데 두번째, 세번째 자료인 각서와 진술서를 써 줄 수 있었겠습니까?

부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연, 지연, 선후배 관련 때문에 선배의 잘못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기왕 죽어 버린 자를 위해 살아 있는 동료를 다치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검 의사가 두개골이 크게 파열된 것을 모르고 지나칠 리는 없었고, 부검 의사가 "세상이 좋아지면 밝혀지겠지요" 라고 하는 말을 부친에게 하였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상의 사례로 보아 군, 검, 경이 모두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안이며, 80년 이후 군정 속에서 이루어진 군 총기 사고자 2,254 명에 대한 재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인명이라고 하는데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언젠가는 모두 다 같은 운명에 처한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경험한 내 아들, 허원근 사건을 소개한다면 1980년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으로 광주 항쟁에 참여한, 아니 고등학교에서는 제일 먼저 봉기한 학교였다고 하며 전남지구 5.18항쟁에 참여한 학생이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15명중 9명이 대동고등학교 학생이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81년 부산 수산대학에 입학하여 83년 3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고 한달을 학교에 다니다지도 휴학에 의하여 83년 10월에 군에 지원 입대하였습니다. 1984년 4월 2일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철책선에서, 앞가슴에서 어깨뼈를 관통하여 갈비뼈가 어깨 등뼈를 뚫고 나왔는데, 어떻게 팔을 움직여 다시 총을 잡아 자신에게 제2, 제3의 총을 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육군 과학 수사 연구소 대위 박우의는 "총을 일곱 발이나 맞고도 살아 있다"고 하며 보여주라 말한 적도 있습니다. 좌측 가슴 총상에서 흘러나온 피는 검게 굳어 있는데 우측 가슴 총상에서는 붉은 색깔의 피가 굳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왜 피의 색깔이 서로 다르냐?"하는 물음에는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말로 답을 하여 너 같은 사람에게는 부검을 거부한다고 하여 당일에는 부검을 못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아야겠다고 요구하여 사고 현장을 가는 조건으로 부검을 허락하고 나는 철책선에 가서 중대 본부 막사와 사고 현장 중간 지점에서 흘린 피를 발견하여 헌병 대장이 사병을 시켜 삽으로 떠서 봉투에 담아 가지고 검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기록에서는 볼 수 없었으며, 육군본부 범죄 수사대에서는 죽인 사람을 데려 오라 하는 말과, 생명에 지장이 있다는 말로 협박했습니다. 사고 당시 10시52분에 총성 2발이 들렸다고 하고 사망 시간에도 10시52분으로 기록되어 있고 개인별 진술 조서에도 10시52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헌병대 조사서에만 9시30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동 수사자 헌병 준위 이해교는 주위에 탄피 2개가 있고 총에는 실탄이 13발(약실에 1발)남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병기계 손명조는 탄창 3개는 탄입대에 끼워 두고 주위 땅속에 실탄 1발을 흙속에 살짝 묻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대장 김석홍을 1988년에 만났는데 "아버님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중대 본부에 있던 자로 피복에 탄혼이 우리 아들 다음으로 많았던 일병 권오진을 만나서 우리 아들 다음으로 탄혼이 많이 있기에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하여 왔다 라고 경남 양산까지 찾아갔더니 하는 말이 "나는 파견 근무자로 중대 본부에 가서는 사격해 본 일이 없다."라고 답하면서 탄약 검사가 엉터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요?

1996년 국민 고충 처리위원회에 탄원을 하여 여러 차례 보완 보정 가운데 자살로는 인정할 수 없으니 재조사하라고 하며 사건기록 일체를 육군본부로 이송한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시 수사관들이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 내 의문사 중에서 내가 탄원서를 쓰면서 목격하고 느낀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교사(絞死)자는 2명으로 김용권 박필호는 사진 상으로도 목 전체를 한바퀴 도는 교흔(絞痕)을 볼 수 있는데 목을 매어 죽었다고 발표 하였는데 '목 전체를 돌아간 자욱이 있는 것은 교흔으로써 자살이 아니다'라고 부검 의학 서적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2) 이이동, 노철승은 총살인데 사출구 보다도 사입구가 더 크다 라고 주장하는 육과수 부검의들의 주장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이동군은 총구가 2개로 서로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한 아버님이 한을 품고 자결하셨습니다. 총의 원리를 완전 배제하고 자연 법칙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박상구 하사의 죽음입니다. 우측 목 부근에 칼자국이 어머님이 손가락을 넣어도 끝이 닿지 않았다고 하였고, 좌측 어깨와 팔에 칼자국이 있고, 목에는 손가락으로 눌린 자욱이 3개가 있고, 얼굴이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었고, 검안 장소가 부대내 영선반인데 농약을 먹고 신음하는 것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였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병원에서조차 방금 죽어서 들어온 사람이냐고 간호사가 말했다고 한다면 자살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4) 최우혁 .박종근의 경우는 소사(燒死)로써 자료상에는 찾아 볼 수 없으나 박종근은 소방관이 사체를 끌어 낼 때까지 등뒤에는 불이 붙지 않은 상태였고, 눈에 안경이 녹아 있었다는 것이 자살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손목을 잡고 경찰에 자수시켜 군대에 보낸 최우혁 어머님은 자식의 죽음이 자기로 인한 것이라는 마음의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한강에 투신하여 자결하셨습니다.

5) 이상준의 경우는 6만 볼트 고압 전주에 올라가 감전 자살한 걸로 처리하였으나, 6만 볼트의 고압에는 사람의 접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전되었다면 재로 변하여 있어야 합니다.

6) 정연관은 87년 대통령 선거 시기, 군 부재자 투표시에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경우인데, 이 사건은 단순한 군 내부의 상관에 의한 구타에 의한 죽음이라고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6월 국민 대항쟁의 성과인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공포의 분위기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군대내의 분위기에서 이를 거부하고 야당 후보를 찍은 이유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7) 유가협에 접수되어 있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산재된 걸로 믿고 있으며 유격 훈련중 탈영 처리된 김소진을 10년이 넘는 오늘까지 혹시나 하는 기다림 속에서 대문을 잠그지 못하고 낙엽만 뒹굴어도 아들이나 아닌가 하는 바램에서 문밖을 나가 본다는 부모의 마음을

국방부는 헤아려 국민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말로만 민주 군대라 하시지 말고 진실을 국민 앞에 하루 빨리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8) 군대내 의문사로 유가협에 접수된 사건은 82년1명, 83년 5명, 84년 1명, 87년 9명, 88년 2명등 1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의문사로 유가협에 접수된 18명중에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문영수, 김상원, 신호수, 김성수, 우종원, 정경식입니다.

가) 문영수는 82년8월19일 전남 광주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불명되어 그 동생 문덕수가 각 병원을 수색하여 전남 대학교에서 행려환자로 취급하여 대학 실습용으로 사용한 형의 사체를 찾고 연행 경찰관을 고발하였으나 미국으로 도망갔다며 연행하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김상원은 86년 5월 16일 사망하였는데, 영등포 경찰서에 연행되어 유치장 안에서 3명의 경찰관에게 구타당한 후 실신하자, 서울 시립 병원에 행려 환자로 입원시켜 식물 인간이 된 상태에서 70여일 만에 동생 김상모가 찾았으나 뼈와 가죽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한마디 말도 들을 수 없이 운명하였습니다. 동생의 끈질긴 노력과 박원순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국가 배상을 받았습니다. 허위 진술을 한 경찰은 위증죄로 고발하여 8년의 형을 받았고 구타하던 경찰관을 기소하였으나 완강한 거짓으로 지금도 재판에 계류 중에 있으나 위암으로 수술을 받아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 신호수는 방위병 근무 시절 삐라 수집으로 인하여 장홍1호 작전의 대상에 올라 7개월 동안 수배중 부친 신정학에게 주소 확인 이후 경찰관 차덕수가 인천 연안까스에서 연행한 뒤로 30분 후에 여비 2,000원을 주어 서울역까지 보내 주었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여수 돌산 대미산 정상 동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곳 새마을 지도자가 처음 목격하고 진술한 내용에 흰 양말이 시뻘건 피로 실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양다리에는 긁힌 자욱이 1-2cm 깊이로 움푹 패여 길게 있었다 하는데 혼수상태에서는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하고, 8개월만에 부모의 입회 없이 재부검한 사진의 머리 부분을 400% 확대한 결과 오른쪽 두개골이 크게 손상을 받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신호수의 죽음 처리과정을 경찰청 교본으로 사용하였고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혁대가 팔 관절 아래가 묶여 있는 점과 신발에 혈흔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팔 관절 아래는 자기가 혼자서 묶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목을 매고 난 후에 팔을 묶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되는데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관절 아래를 묶었다면 제3자는 바로 경찰관 차덕수입니다. 신발에 혈흔이 없다는 말은 신을 신지 않고 산에 올라갔으며, 누구에겐가 들려 가야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 손을 대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게 구두에도 혈흔이 있어야 합니다.

라) 김성수는 서울 대학생으로 전화로 부름을 받고 나간 후 부산 송도 앞바다 방파제에서 익사체로 발견 인양하여 위와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됨으로 자살로 경찰이 발표하였는데 사후 익수도 위나 폐에서 플랑크톤이 있을 수 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마에는 붉은 색의 피가, 입가에는 검은 피가 굳어 있는데 두개골에서 피하에 출혈을 볼 수 있었다는 것 등을 볼 때 익수시에 생겼을 것이라는 발표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익수 이후에는 피가 응고되지 않는다는 학설을 무시하고 조사한 것이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마) 우종원 역시 서울대 복학생으로 깃발사건에 연루되어 수배중 학생으로 철로변에서 발견 추락사로 발표하고 있으나, 120km로 달리는 열차에서 추락하였다면 머리에 조그마한 외상 외에는 아무 상처가 없겠는가 하는데 착안하여 가족의 진술을 듣고 보니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가슴에 멍이 들어 있다는 것은 소생 시술을 시도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자살이 아니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바) 정경식은 창원 대우 중공업 노동자로 노조 지부장 선출 이후 불협화로 인하여 제2공장에서 1공장으로 불려 간 이후 행방 불명이 되어 백방으로 수색하였으나 찾을 길이 없었고, 실종 10개월 이후 천주산에서 습득한 유골을 놓고 기자회견을 하려던 하루 전날인 88년 3월 2일에 발견 된 점이고, 이 장소는 87년 가을 친족, 마을, 사람을 총동원 하여 수색할 때 정경식의 삼촌이 그 돌 위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매었다는 밤나무 밑에 밤을 따던 대나무(홀대)가 있었다면 지난 가을에 발견했어야 하고 어떻게 약한 가지에 목을 맬 수 있겠느냐고 항의하자 나뭇가지를 잘라가 버렸다는 것이고, 사방에 흩어진 뼈를 본 부검 의사가 뼈에 짐승이 침범한 흔적이 없다라고 하였다면 무엇이 뼈를 옮겨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뼈는 당연하게 옷속에 뼈가 있어야 하는데 옷 위에 뼈가 모여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죽음이 이미 경찰에 실종 신고가 되어 있고 8개월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도 성실한 조사를 하였다면 한 권의 수사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만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마) 이태춘은 1987년 전두환 정권의 4.13호헌 조치에 반대하여 6월 18일 민주화 투쟁 당시 5만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 부산시 좌천동 소재 육교를 통과하던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직격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고가도로 아래로 추락, 6월 26일 사망하여 부산 시민장으로 영결하였습니다.부산 시청 등의 보상 요구에도 전두환 노태우 등의 독재하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거부한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민 정부가 도래하였다고 하나 이를 자리매김할 정치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산시장 문정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광일씨 등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이 이 나라를 주도하고 있건만 죽은 자의 공은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사건들이 사체를 유기하였고 형태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불을 질러 버리는 등 악랄한 수법 등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3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1998년 제1차 학술회의 중

• 기조연설

민주의열투쟁의 역사적 위치와 명예회복의 위치
(한국현대사에서 열사·희생자들의 지위와 역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원칙과 방향) (강만길, 교수, 고려대학교)

• 발제

1. 한국현대사의 청산문제에 대하여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 **언제** : 1998년 5월 22일 · **장소** : 종로성당
· **주최**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후원** : 한겨레 신문사, 내일신문

민주 의열 투쟁의 역사적 위치와 명예회복의 문제

한국 현대사에서의 열사 · 희생자들의 지위와 역할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명예회복의 원칙과 방향

강만길 (고려대학교 교수)

1. 민주 의열투쟁의 배경은 항일 의열투쟁

일제 강점시대의 민족해방운동 노선에는 이른바 실력양성운동이나 외교 독립론 등이 있었지만, 무력적 강압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무력투쟁 즉 독립전쟁 방법이었다.

그러나 해방구를 못 가진 완전 식민지 상태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할 공간을 국내에서 가지기 어려웠고, 이웃 중국지역을 해방구로 삼아 독립군을 양성했으나, 세계의 제국주의 강대국 대열에 선 일본의 군사력과 싸워 독립을 쟁취할만한 독립군을 양성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독립전쟁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하여 민족해방운동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기에 독립전쟁적 · 무력투쟁적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등장한 투쟁방법이, 일제 강점 이전 안중근의 이등박문 저격 및 이완용 저격을 본 딴 의열 투쟁이었다.

일제 강점 이전의 갑오농민전쟁 및 의병전쟁 방법을 계승한 것이 3 · 1운동 후의 청산리전투 및 봉오동 전투에서 보는 독립전쟁 방법이었다면, 안중근을 계승한 의열투쟁은 김원봉 중심의 의열단 투쟁 및 김구 중심의 한인애국단 투쟁 등이었다.

일제 강점 시대를 통해 윤봉길 · 이봉창 · 김지섭 · 김상옥 · 나석주 등의 활동으로 이어진 의열 투쟁은, 적의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강대한 반면 우리의 군사력 투쟁이 거의 불가능했던 일제 강점 시대 상황에서 민족적 정기를 유지하고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제 강점시대의 의열투쟁이 개인 차원의 투쟁이었다 하여 그 방법을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그 효과를 의심하는 경우도 없었다. 비록 개인 차원의 투쟁이라 해도 의열투쟁이 민족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컸다.

일제 강점시대 의열투쟁의 전사들이 해방 후의 역사적 보상을 기대하면서 목숨을 버린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해방 후의 민족사는 당연히 그들의 역사적 공적을 높이 평가했고, 일본 제국주의의 법률에 의해 살인범 · 파괴범 · 방화범 등으로 규정되었던 그들의 명예를

회복했으며, 그 후손들에 대해 일정한 물질적 보상도 곁들여졌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2. 해방 후에도 의열투쟁이 계속된 이유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사회에 최초로 성립되는 정권은 대체로 민족해방운동 세력에게서 나오게 마련이며, 그러므로서 정권의 정당성 및 정통성이 수립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군정을 거쳐 성립된 이승만 정권은 일제 강점시대와 반민족적 세력을 숙청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성립됨으로서 역사적 정통성이 약한 정권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정통성이 약한 정권은 곧 국민들의 지지를 잃게 마련이며,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도 억지로 유지되려 하는 경우 독재체제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값진 희생을 치르면서라도 그 독재체제를 용납하지 않았다. 경찰의 공식발표만으로도 186명이 목숨을 바친 4·19가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잘못 들어선 역사를 바로 세운 4·19 희생자들이 그 역사적 정당성을 인정받고 명예가 회복되고 국가유공자로서 보상되며, 그 묘지가 국립묘지로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식민지배에서 해방된 민족사회에 처음으로 성립된 정권이면서도 역사적 정통성을 상실했을 때, 그것을 무너뜨린 4·19는 독재세력과 반민족세력을 숙청하고 정권담당세력을 철저히 교체하는 혁명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4·19 주체세력이 정권을 수립하지 못하고, 역사 침입세력이 포함된 야당정권이 성립하므로서 4·19는 혁명이 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4·19주체 세력은 4·19가 혁명이 되게 하는 길을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데서 찾으려 했으나, 그것에 위협을 느낀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군국주의 일본군 장교출신 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쿠데타 세력의 통치가 독재체제로 간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며, 여기에 저항하는 의열 활동이 다시 계속된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유신' 체제로까지 이어진 박정희 정권 근 20년간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이 바쳐졌고, 그 결과가 10·26 사건으로 나타났다. 10·26사건을 치르고도 다시 군사독재정권이 후속되려 하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거대한 민중저항으로서의 5·18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났고, 진압군의 발표만으로도 14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같은 희생을 치르고도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 등 두 차례의 군사정권이 계속되었지만, '광주사태'는 결국 광주민주화운동 내지 광주민중항쟁으로 되어 그 올바른 역사적 위치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 희생자들도 명예가 회복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진 30년간의 군사독재정권 기간을 통한 희생은 광주민중항쟁 희생자에 한정되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 정권이 '유신'체제로 간 기간과 광주민중항쟁을 탄압하고 성립된 전두환 정권 기간, 그리고 그 후속 정권으로서의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혹은 '유신'체제에 반대하면서, 혹은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대항하여, 혹은 노태우 군사정권을 청산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분신하거나 가혹한 고문에 희생되거나, 시위현장에서 최루탄 등에 맞아 희생되거나,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사를 한 경우가 많았다.

군사정권 시대가 끝나고 민주적 정권이 성립되면서 4·19 희생자와 5·18 희생자들이 모두 그 명예가 회복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국가가 그 희생에 대해 일정하게 보상한 데 비해, 그 수가 3백명이 넘은 이들 민주열사들은 그들의 역사적 정당성이 공식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역사적 위치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3. 국민정부와 의열투쟁 명예회복 문제

박정희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까지로 이어지는 30여년간의 군사독재시대에는 부·마항쟁과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1987년 6월항쟁과 같은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났으며, 이들 항쟁이 박정희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거나 전두환 정권의 성립을 저지하려 했거나, 또 그 연장 기도를 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 아래서 이들 대규모 민중저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들 대규모 민중저항이 일어나기까지에는 수많은 개인차원의 의열투쟁이 계속되었고, 이같은 개인차원의 의열투쟁이 계속 공백을 메워줄 수 있었기 때문에 대규모 민중항쟁이 일어날 수 있었다.

이 개인 차원의 의열투쟁은 첫째 윤봉길·이봉창·나석주 등 일제 강점시대 개인 차원 항일열사들과 그 역사적 역할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둘째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했던 4·19 희생자나 군사독재정권의 재등장에 대항했던 5·18 희생자와도 그 역사적 역할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만 그들이 희생된 경위가 다를 뿐이다. 4·19 희생자나 5·18 희생자들은 시위와 '전투'의 현장에서 희생되었지만, 개인 차원의 민주열사들은 시위현장에서 희생된 경우도 있지만 혹은 고문실에서 희생되거나 희생된 장소가 분명치 않은 의문사의 경우도 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더 조사해야 하겠지만, 사인이 분명한 경우는 그 역사성이 4·19 희생자나 5·18 희생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일제 강점시대의 경우 가령 한국광복군과 같은 집단적 항일 투쟁에 가담한 공로자나 윤봉길·이봉창과 같은 개인 차원의 공로자에 대한 유공자 포상에는 공적의 경중에 따르는 차별은 있을지언정, 집단적 저항과 개인 차원 항쟁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해방 후 민주열사의 경우도 4·19나 5·18과 같은 집단적 희생과 개인 차원의 희생 사이에 차별을 둔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명예회복 사업이나 보상 사업은 당연히 민주적 정권일수록 더 적극성을 띄게 마련이다. 군사정권 이후의 민간정권으로서는 김영삼 문민정권에 이어 김대중 국민정권이 두 번째로 수립되었다.

그중 김영삼 정권은 군사정권과의 타협에 의해 성립된 정권이면서도 국민적 여망을 거부하지 못해서 '역사바로세우기'를 내세우고, 군사정권의 집권자들을 일단 단죄하며 감옥으로 보내는 한편,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위상을 한층 더 바로 세웠다.

그러나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희생된 민주열사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 및 명예회복 문제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 역사적·민주주의적 정통성이 강한 정권일수록 양심수 및 민주열사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기 마련이라 생각해보면, 양심수 정책이 거의 답보상태였고 개인차원 의열투쟁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없는 점은, 김영삼 문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서의 한계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 역시 독자적으로는 성립될 수 없었다. 5·16 세력 일부와의 연합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역사적 제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 지금은 이른바 외환대란 뒤처리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5·16 세력 일부와의 연합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이 짊어진 역사적 과제의 중요한 부분은, 역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과 평화적 통일에의 적극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민주주의의 획기적 발전 문제 속에는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김영삼 정권이 군사정권 집권자들을 사법처리하고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정당성을 회복한 후에 성립된 김대중 정권으로서는, 이제 개인차원에서 활동한 민주열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 사업, 그리고 양심수 석방의 과감한 확대를 통해서 김영삼 정권과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청산문제에 대하여

(반민특위부터 5·18 명예회복까지 과정에서의 문제점)

김봉우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글머리에

청산과 극복은 역사발전의 근본적 과제이다. 잘못된 흐름에 대한 청산과 극복이 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구성원 전부를 고통스럽게 만들며 결국은 파탄에 빠지고 만다. 청산이란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단절을 부정적으로 보고 오직 계승과 상속만이 지상의 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단절과 극복이야말로 역사발전의 기본 동력이다.

한국에서는 유난히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이 많이 쓰인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하여 사는 것인데 왜 유난히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가. 미래지향적이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경구가 따라붙는다. 이 말은 과거의 잘못에 눈을 감고 그것을 고치거나 바로잡으려고 들지 말라는 뜻이다. 과거의 상황을 미래에까지 그대로 끌고 가려는 역사발전을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경구가 세간에 유행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세력과 가치관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이다. 미래는 현재를 기반으로 뻗어가는 것이고 현재는 과거의 잘못이 그대로 쌓여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서 지난날의 역사와 단절하지 않으면 그 문제점이 그대로 앞날을 규정한다.

한국사회는 그 출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역사적 비리를 극복·청산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의 청산문제에 엄청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에서 주어진 3차례의 역사청산 기회는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부터 그 과정을 살피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반민특위와 식민지유제 청산문제

한국은 1910년부터 일본의 무단적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은 1905년부터 실질적으로 일본의 독점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를 식민지기로 잡는다면 40년이 넘는 기간을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셈이다. 식민지배기간 일제는 조선의 자연자원과 인력을 체계적으로 수탈하였으며 식민지 노예의식을 주입하고 고유문화를 파괴하였으며 앞잡이 집단을 대대적으로 양성하고 엄청난 폭압적 제도를 수립하였다. 극단적인 폭압과 간교한 식민정책 도 한 원인이 되어 조선은 자력으로 해방을 쟁취하지 못하고 강대국간의 세력쟁탈전에 얹혀서 독립되었다. 그러나 강대국에 얹혀서 얻어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조선을 두동강으로 만들고 새로운 강대국의 간섭과 지배를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적 조건에서 당시 조선에 요구되었던 역사적 과제는 하루바삐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고 식민지 유제와 친일파를 청산하는 것이었다. 이 두 과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굳이 선후를 따지자면 친일파의 청산이 가장 긴급한 과제였다. 왜냐하면 친일파는 지난날 민족의 원수요 모든 비극을 몰아온 장본인이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폭압기구를 장악하고 여전히 식민지 시절과 다름없는 폭압을 행사하는 주체였을 뿐 아니라 모든 조선의 재산을 장악한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일제로부터 당한 피어린 고통이 원인이 되어 해방 이후 일제 권력기관과 경찰, 관료를 비롯한 친일세력에 대한 처단 요구는 열화같이 들끓었으며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실력행사에 돌입하는 사태도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파에 대한 처벌요구는 해방직후부터 수많은 사회단체와 정당들의 화두가 되었다. 이런 요구가 일차적으로 집대성된 것이 미군정 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된 '친일파 처리를 위한 특별법'이다. 입법의원은 그 구성상 친일파 청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음에도 이러한 법안이 가결된 것은 당시 친일파 청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대단히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통과된 법안은 미군정의 거부로 한 장의 휴지가 되고 말았다. 미군정의 핑계인즉 한국인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미군정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반민특위의 구성과 문제점

1945년 8월 15일 민족과 강토를 양단한 분단정부가 내외에 그 수립을 선포하였다. 38선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만들어졌지만 분단정부는 어떤 형식이건 우리 민족이 개입하여 이를 민족내적인 경계선으로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분단정부가 들어설 당시의 정세는 내전으로 대단히 엄혹했음에도 정부수립 선포식을 끝내자마자 친일파 청산작업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당시의 친일파 청산요구는 절박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조건으로 볼 때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기에는 이미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러다보니 친일파에 대한 정의나 법적 규정, 처벌조항 모두가 본격적인 청산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느슨한 조항들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런 면피성 조항마저도 당시의 정세에선 제대로 집행될 수 없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들어진 헌법기관인 반민특위는 대통령과 정부기관의 협공으로 공중분해되고 친일파 청산작업은 역사적 과제로 넘겨지고 말았다. 오히려 반민특위로 인하여 친일파들에게 법적 면제부만 주고 만 꼴이 되었다.

친일파 청산에 가장 좋았던 시기는 해방의 함성에 친일파들이 공포에 떨었던 8.15 직후가 적격이었으나 타력에 의한 해방이 일러주듯이 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조직된 역량이 우리에게는 없었다. 당시의 사회단체들은 대개 치열한 투쟁속에서 성장한 단체들이 아니라 해방의 함성 속에서 과거의 명성에 기대어 한자리 차지하려고 급조된 단체들이었다. 따라서 근거없는 기계론적 낙관에 사로잡혀 있었고 일의 순서를 제대로 잡지 못해 친일파 청산보다는 자파의 헤게모니 쟁탈에 열중하였다. 그러다가 이 단체들은 친일세력에게 일망타진 당하고 말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반민특위는 이미 친일파들이 국가적 장치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출발했고 당시 국회의원이나 정부구성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치열한 민족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특위를 지탱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나갈 도덕적 자격과 열의가 없는 인사들이 특위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특위는 정부기구와 마찰을 빚으면서도 민심을 조직하여 이를 배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단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았다. 이미 불가능해진 사회정치적 조건에서 반민특위에다 친일파 미청산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못할지도 모른다.

어쨌건 당시 한국사회의 최대과제였던 친일파 청산에 완전히 실패함으로써 국가기구가 민족의식을 말살하는 폭압장치로만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이로부터 민족분단

의 고착화와 민주주의의 말살, 역대 반민족 폭압정권의 출현과 외세의존형 정치·경제구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사월혁명과 독재유제의 청산문제

이승만정권은 민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력으로 정권을 창출해낸 것이 아니고 민족과 강토를 양단한 미국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외생적 정권이다. 때문에 이승만정권은 반민족적인 친일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친미파라 하더라도 결국은 식민지기의 특권적 지위덕분에 미국에 유학까지 갈 수 있었던 인물들이 일시적인 미·일 갈등구조에 편승하여 지난날의 범죄를 면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친일파의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선 이승만이 저지른 범죄는 실로 엄청나다. 민족분단과 동족살상을 초래·추진한 죄,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민족경제를 파탄시킨 죄, 무엇보다 식민지배기의 폭압적 구조를 더욱 강화하고 반민족적 이념과 세력을 번성케 한 죄를 비롯하여 수도 셀 수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다. 부정부패는 그에 비하면 가벼운 경범죄에 지나지 않는다. 이승만은 결국 지나친 권력욕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한국 최초이자 유일한 민중봉기의 희생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다.

자유당 시절 한국사회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조항과는 달리 사회적인 조직활동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때문에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은 학생들이었다. 야당이 있었지만 권력으로부터의 소외감 때문에 오는 불만을 제외하면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차이가 없었다. 이승만이 쫓겨난 후 권력을 계승한 것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권이었으며 그 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인계받은 집단은 이승만정권 후반기 야당으로 변신한 장면, 윤보선의 민주당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승만정권의 구성원으로서 충성을 바치던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기 친일행적 때문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인사들이다.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친일전력자의 구성이 이승만시절보다 오히려 늘어난 사실이 일러주듯이 이승만 시절과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요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승만 정권의 지주이며 실질적인 주인역을 하던 미국이 정권교체기의 혼란을 막고 정권의 내용적 계승을 보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조건들이 4월혁명의 본질을 외면하고 4월혁명을 불러온 범죄집단인 자유당이 혁명정국의 개정헌법과 법률을 심의하고 다시 선거에 나서 유권자의 심판을 묻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집단의 두목인 이승만을 미국으로 빼돌려서 역사적 심판으로부터 면제시켜 세월이 흐른 후 이승만 되살리기 사업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을 조성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4월혁명 덕분에 정권을 잡았으나 이승만정권기의 총체적 범죄는 물론이고 4월혁명을 불러온 직접적 범죄조차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60년 10월 11일 4월혁명 부상학생들을 필두로 한 1만여명의 학생들이 '장면정권 타도'를 외치며 혁명입법을 지연시키는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야 마지못해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 '부정축재 처리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시대에 일어난 엄청난 범죄들이 모두 면책되고 오직 3.15부정선거만이 겨우 심판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으나 그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박정희 군사정권의 몫으로 넘어가 희극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4월혁명이 한국 초유의 혁명적 상황을 연출하고서도 실패로 끝난 것은 4월혁명 정신을 실현할 조직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권을 물려받은 민주당정권이 친일파들이면서 동시에 이승만정권의 한 축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4월혁명의 정신을 구현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친일세력인 박정희 일당의 등장으로 모든 상황이 과거로 회귀해버렸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승만정권이 넘어갔을 바로 그 시점에 상황을 주도할 집단이 나서서 심판을 추진했더라면 최소한 3.15부정선거 관련사항만이라도 어느 정도 청산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의 한국사도 조금은 달라졌을지 모른다. 물론 이것은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건 4월혁명이 외견상 성공한 혁명이면서도 역사적 범죄청산에 실패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은 그후에도 실질적으로 여전히 한국사회를 이어가게 되었으니 그 본질적 내용인즉 식민구조의 지속이다.

광주민중항쟁과 전두환, 노태우 처벌

광주항쟁은 지금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동시대적 사건이고, 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두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으므로 항쟁의 흐름과 의미는 생략한다. 다만 한가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광주항쟁의 위대성은 비폭력에 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

광주항쟁의 위대성은 4.19이후 내내 단순한 시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국의 저항문화를 일신하여 총에는 총으로 무장하고 대응하여 군대를 몰아내고 자치·자경을 일시적으로나마 이룩한 데 있다. 광주가 총으로 무장하고 최후까지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런 행사가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참고로 식민지시기부터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아릇한 단어가 체제언론의 비호하에 난무해 왔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저항을 포기했으면서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위장하려는 분들의 말이거나 아니면 거센 저항을 두려워 한 체제측이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퍼뜨린 말에 지나지 않는다. 저명인사의 경우 간혹 비폭력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데 이것은 폭력을 행사할 많은 일반인들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광주는 박정희정권 20년 지배가 몰아온 크나큰 폐해에 대항해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려오는 본원적인 모순에도 저항한 것이다.

광주항쟁은 오랫동안 공개적인 진상규명이 안되고 있다가 88년 가을 국회에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청문회장이 TV에 생중계되면서 비로소 심판대에 오르기 시작하였으며 폭도나 반란이 아니라 오히려 신군부측이 반란주범이요 폭도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문회는 광주학살의 기술적 측면에만 국한된 채 그 전체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반란주범의 처벌은 꿈도 꾸지 못하고 말았다. 김영삼정권에 들어와서도 광주항쟁은 별다른 해결의 징후를 보이지 않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학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사회의 항의가 거세지고 5·6공세력과 김영삼세력과의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법조계의 새로운 법해석이 나오는 등 여건의 변화가 커지면서 비로소 공식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앞선 역사적 행위의 청산처럼 본질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광주민주화운동의 의미가 대단히 축소해석되어 광주 현장 대립에 국한되어 버렸고 처벌도 그 선에 한정되고 말았다. 한미관계의 문제점과 박정희통치기의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 문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신군부측의 전반적 만행에 대해서도 진실을 규명하고 처벌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광주항쟁이 지역문제로 왜곡된 채 상당한 세월이 흘러 청산에 어려운 조건이 형성된 점 외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찰을 비롯한 집권당, 기타 범죄의 공범자 또는 가해 기득권층이 처벌의 주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다음으로 항쟁직후부터 처벌이 이루어진 시점까지 항쟁의 올바른 뜻을 계승할 제대로 된 정치지도세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끝내면서

처음부터 타율적으로 잘못 출발한 한국 현대사는 계승의 역사만 있고 단절과 극복의 역사는 없었다. 이렇게 계승의 역사만 이어지고 피흘리며 이룩한 항쟁의 성과들이 단순한 정치이용물로 전락하고 만 것은 가해자 범죄집단이 심판자요 처벌의 주역으로 늘 등장했기 때문이다. 올바른 청산이란 항쟁의 주역이 청산의 주역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절대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던 역대 대통령들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쫓겨나거나 총맞아 죽거나 교도소에 간 전례가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간판만 바뀐 채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같은 실패가 계속되는

이유는 인식체계와 사회제도 문제를 개인의 권력행사 문제로 착각한 인식수준의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주인이자 중심축인 외세 문제에 어두웠던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사의 근본적 문제를 올바르게 제기하고 제대로 된 청산을 이룰 수 있는 정치역량을 갖지 못한 것도 그리고 이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사회환경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많은 연구자들이 구조분석에 머무르고 말다보니 청산을 환경의 자연적 성숙의 결과물 정도로 인식하고만 실천인식이 결핍된 탓도 있을 것이다.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대응에만 골몰한 탓에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청산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무시해온 것도 아마 하나의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또 하나 오랜 기간 강대국의 문화적 영향하에 있었고 전투적 해방운동이 부재했던 탓으로 단호하게 응징하고 처단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이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폭력적 응징을 죄악시하도록 길들여져 온 식민지 노예의식의 미청산에도 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분명하고 철저하게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과거가 재생하고 되풀이되며 따라서 발전이나 미래는 없다는 점이다.

덧붙이는 말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문제에 매달려 있으며 반미운동이 열을 뿜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땅에서 미군이 습격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았던 일은 없다. 덕분에 그 열렬했던 운동은 없었던 일처럼 되고 말았다. 한국은 배타적 민족의식이 강하다고 언론에서 항상 대서특필하지만 식민지배를 당한 원수지간임에도 독도문제가, 일본어선 문제가, 망언문제가 아무리 긴장을 초래해도 일본인 관광객이 한국땅에서 구타나 폭언 한번 당한 일이 없는 참으로 양순한 순종형 지역이라는 점은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몇년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북한핵 문제가 보도되었을 때 한복을 입고 다니던 교포 여학생 약 150여명이 일본 청년들에게 길거리에서 칼로 옷이 찢기는 만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중동이건 구라파 어디건 자국민이 모욕을 받으면 즉각 폭탄으로 응징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이른바 선진국 언론이 총출동하여 온갖 야비한 언사로 비난의 공세를 펼치지만 결국은 이러한 단호한 응징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은 역사의 교훈이다. 한국은 의열단의 몇몇 사례를 빼면 식민지시기에도 국내에서 일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일이 거의 없는 안전한 지대였다. 항일운동은 성명서 배포나 만세운동 차원의 점잖은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더 나아가 보아도 파업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가해자의 엄청난 폭력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형태로서는 역사의 교훈이 서기 어렵다. 또 구조적이고 전체적인 청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역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응징이 분명하게 행하여질 때, 그런 문화가 널리 퍼져 청산과 교훈을 제대로 살리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첨부자료 4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정신계승과 명예회복을 위한 1998년 제2차 학술회의 중

● 발제

각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 **언제** : 1998년 9월 1일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 **주최** :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 **주관**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외국사례에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이창수 (한국국제문제연구소 대표)

1. 문제제기

과거 문제를 현실의 문제로 다시 재정립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중요한 지표이다. 그리고 과거 문제가 부도덕하거나 반인륜적인 폭압과 결부된 정치적 문제라면 그것은 미래 이전의 문제가 된다. 특히 군사통치를 경험한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인권이 유린된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박제화된 과거의 문제로 둘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군부세력을 제거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많은 피해자(victims)[1]가 나타났다. 군사정부가 민중의 투쟁과 저항으로 물러나고, 문민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이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정당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소위 재야라고 불리는 민중민주민족운동 진영은 반독재·반파시즘 투쟁을 벌여 왔지만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대단히 천박한 수준이다. 특히 일반 대중의 이익을 수렴, 조정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정치권의 과거청산 의지는 매우 미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청산의 문제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진실을 공식적[2]으로 조사하고 규명하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런 진실을 근거로 역사적인 왜곡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개편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도 과거청산 문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 군부와 자본 중심의 경직된 사회정치 구조 속에서 다수의 민중들이 민족적 자존심과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 사회적인 원상회복과 제도적인 정당한 배상(just

1) 민주화 운동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개념규정은 아직도 여러 의견들이 있다.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산하 희생자 배상 및 명예회복 소위원회(Committee of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가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Bill)에 따라 96년 9월 작성한 긴급 잠정보상 조치상의 정책 개요(Policy Framework for Urgent Interim Reparation Measures)에서 정의한 피해자에는 총체적인 인권침해 또는 사면을 보장하는 정치적인 목적과 결부된 법률 또는 고통받았던 자를 돕거나 이런 사람의 희생을 막고자하는 일을 방해한 자의 행위로 인해 물리적인 위해(危害), 정신적 위해, 정서적 고통, 금전상의 손실, 인권의 실체적인 축소(substantial impairment) 등의 형태로 손해를 경험한 개인과 그 친척 또는 가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식적인 조사란 국가기관에 의한 전면적 객관적 사실조사를 뜻한다. ; 박원순,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 부당한 권력의 '불처벌(IMPUNITY)'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열사희보>> 98년 4월호 통권 제18호, p23.,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서울

measures of reparation to victims)[3], 그리고 정치적 명예회복으로 종결된다.

이 글에서는 남아공과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문제를 국가권력과 사회세력간의 갈등과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과거청산의 과제는 역사적 실천에 대한 평가이며 이것은 당시 수구세력과 이를 타개하려는 진보세력간의 투쟁으로 반전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과거청산이 사회적 이슈 또는 진보진영의 합의된 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군사정권의 몰락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민정부 또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단순히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미래를 창출하지 못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뿌리를 그대로 두고 가지치기만으로 포장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이 글에서는 대항세력이 우세한 정치적인 힘을 바탕으로 구세력과의 타협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있는 남아공이 검토될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사후 보장을 위해서 제도개혁을 통해 민주화를 추진했던 아르헨티나로 대표되는 남미의 경험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무장투쟁을 통해서 대항세력과 수구세력간의 대등한 경쟁을 벌인 바 있는 북아일랜드의 청산 방식은 우리 사정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는 한 국가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한 국가와 그 집권자들을 단죄하고 청산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겠다. 일국적인 차원의 독재자나 군사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행한 반인륜 범죄와 2차세계대전 이후 전범재판의 대상을 삼았던 경험들이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적인 힘의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미래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appropriate measures of reparation)을 추구하고 있다. 남아공의 국민화합과 화해 촉진법에서 말하는 적절한 배상이란 보상(compensation), 호의적 변제(ex gratia payment), 반환(restitution), 명예회복(rehabilitation) 또는 표창(recognition)의 형태를 말한다. 남아공은 피해자 면에서 우리 사회에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협소하게 얘기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청산에 대한 전면적이고 일반적인 논의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미하고, 따라서 과거 군부정권이나 부당한 사업주에 대항한 개인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에 대한 배상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피해자에 정당한 배상은 손해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대상(代償)(full and fair equivalent)을 의미한다.

2. 과거청산은 당위인가 현실인가?

'과거청산'이라는 용어속에는 한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사회적이고 정치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 이것은 통상 정치권력과 민중 또는 시민 사회간의 현실에 대한 타협이나 과거나 미래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전제로 한다. 이 경우 필수적인 요소는 정치권력이다. 정치권력이 빠진 과거청산은 없다. 시민사회가 아무리 '과거청산'을 말을 해도 정치권력에 접근하지 못하면 그 과정상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과거청산에 대한 어느 정도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청산되어야 할 과거의 희생자들을 어떤 위상으로 위치지우냐의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논리적·사변적인 방식을 취하기 보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들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이행기의 복잡성을 민중 주도로 극복한 남아공

남아공은 94년 4월 다인종 참여 총선을 계기로 흑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종주의적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의 유과제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아공의 과거청산은 여러 가지 복잡하다. 남아공은 86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흑인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과 EU 국가들은 대남아공 경제제재를 단행했다. 국민 대다수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거부투쟁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90년 데 클레르크는 ANC를 비롯한 60개 이상 반정부단체 합법화와 넬슨 만델라 ANC 의장 석방, 비상사태 해제조치를 취했다. 1992년 백인만의 선거를 통해서 백인 통치의 종식을 인정하고, 1993년 7월에는 인종평등, 3권분립, 연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에 따라 다인종 임시행정위원회가 구성되고 94년 4월 다인종 총선이 실시되어 흑인정권이 수립되게 되었다.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위원회'(TRC,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라는 헌법기구를 설치하여 과거 청산 과제를 수행했다. 법적 근거는 잠정헌법 마지막 조항과 국민 통합과 화해 촉진법(The Promotion of National Unity and Reconciliation Bill)이다. 주로 이 위원회는 1)인권 침해에 관한 조사 2)정치적 동기와 연관된 인권 침해, 묵인, 가해 행위에 대한 사면허가 3)희생자들의 인간적, 국민적 존엄성 회복을 위한 보상 조치의 권고를 수행한다. 이런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3개의 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인권 침해 소위원회(Committee of Human Rights Violations), 사면 소위원회(Committee on Amnesty), 희생자 배상 및 명예회복 소위원회(Committee of Reparation and Rehabilitation)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 활동이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인종갈등을 실재로 해결했느냐의 문제 대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Business Day지가 MRA (Market Research Africa)를 통해서 전체 소득수준과 인종 그룹의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TRC 활동이 오히려 인종갈등에 유해한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 있다.[4] 하지만 남아공 TRC의 활동을 2년의 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다.[5]

4) <<Business Day>>, 1998년 7월 27일자 재인용, http://www.truth.org.za/reading/s980727a.htm ; 이 조사에 따르면 도시에 거주하는 남아공 국민들의 2/3이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총체적인 인권침해에 관한 이 위원회가 행한 청문회가 인종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39%가 위원회 청문회가 인종 갈등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악화시켰다고 보는 입장도 38%를 나타냈다. 그리고 인종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8%에 불과하다.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도계는 위원회가 인종간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74%가 이에 찬성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 가운데 이같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비율은 72%로 흑인과 유색인 응답자 62%도 부정적이었다. 백인 70%는 위원회 활동이 인종간의 공생관계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인도계도 50% 이상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흑인 및 유색인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50%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흑인 응답자의 22%만이 긍정적인 답을 보였다. 그리고 흑인 60%만이 위원회 활동이 공정했다는 쪽에 찬성했다. 특히 동케이프, 북 케이프 및 북서 케이프에서는 응답자 70%가 위원회 목표 달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런 기능을 하는 새로운 위원회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약 43%이고 계속 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만약 이 면접조사가 정당하다면 과거 청산의 주체와 이를 대행하는 국가 기관간의 상당한 차이를 보게 된다. 이것은 진실규명 자체를 규명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을 넘어 이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유, 즉 과거를 인정하고 처벌 없이 국민적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남아공과 같이 과거 청산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전제로, 그것도 그 피해자들이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과거 인권침해나 국가 권력의 권력남용을 규명하는 일과 사회구조적인 인종간의 불신과 대치 상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재로 이렇게 혁명적인 상황이 결려된 제도 아래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아주 복잡하다. 이것은 결국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겪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런 이행기의 복잡성은 현재 권력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의 이해가 걸려 있기도 하지만 그 보다도 중요한 점은 권력 변경과 이에 근거한 진실규명 작업은 또 다른 정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감정과 국가주도의 과거청산 활동간에 일정한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정치세력간의 타협성 때문이다. 특히 ANC 정권과 국민당 등 주요 정당들은 이 위원회의 활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수년 동안 ANC의 폭파 등으로 죽은 백인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의 정책의 수혜집단인 백인 중산층들은 이 위원회의 활동이 지극히 편파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흑인 대중들도 진실과 화해 위원회 활동이 국민화합에 순기능했다는 입장을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과거 보안군의 인권침해는 침해 정도가 공포수준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사면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인종적 지역 벌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서 자신의 과

5) 남아공 지식인 사회에서도 이번 조사에 대해서 공통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이번 조사의 결과의 해석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이 전개된다. 이번 결과가 의미하는 것이 남아공 국민들이 이 위원회의 존재성을 거부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면 이번 조사를 수행했던 Business Day지의 Drew Forrest 정치부장처럼 이 조사 결과의 함의가 '위원회에 대한 태도가 인종간에 깊고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이번 조사 결과는 백인들은 위원회 설치 자체가 나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흑인의 과반수는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Business Day>>, 98년 8월 3일자를 보라. ; http://www.bday.co.za/98/0803/comment/e8.htm.

거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힘과 국제사회의 여론에 힘입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남아공의 과거 청산 과제는 이제 일단락 되었다.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과거 피해사례에 대한 진술서 2만 1천 건을 접수하고 대대적인 사면을 이루었다. 아직 1천 건 이상이 사면청문회를 거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임무를 종결하고 10월까지 활동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과연 화해라는 사회적 합의가 성공을 거두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즉 흑빈백부의 구도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정권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인종차별 정책을 해소시키는데는 법적인 해결과 진실규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통합에 저해하는 결과를 낳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과거 청산의 과제만큼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와 공동체내의 빈부 격차 해소 등과 같은 경제적이면서 정치적인 문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2 정치권력의 개편은 과거 청산을 위한 전제임을 증명한 아르헨티나

남미 지역의 과거 청산과제는 주로 실종(disappearances) 관련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남미의 특정 국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남미 전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가운데 칠레와 아르헨티나 가운데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곳은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실종자 가족들 중심으로 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며, 국제사회에 소위 '불처벌'(impunity)을 직접 제기하여 대대적인 지원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유심히 볼 문제가 있다.

195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는 군사쿠데타로 정정이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낙후하게 되었다. 군사독재로 인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납치, 고문, 살해, 강간 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냉전질서가 강화되고 쿠바혁명으로 중남미는 미국의 국제안보질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안보지상주의가 횡행하게 되었다. 1976년 군부는 정권을 장악하고 인권침해를 조직적으로 자행하기 시작했다. 실종자 수는 3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실종자들 가운데에는 부모와 함께 납치되었거나 비밀 구금장소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수백명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월 광장 어머니회(또는 할머니회)를 중심으로 실종된 어린이들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법원에 탄원하고 일반 대중 앞에 직업 탄원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의사 및 심리학자 등 18명이 기술적인 팀을 만들어 이 활동을 지원했다. 이런 일련의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활동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의 시민사회는 급격히 성장하였다. 과거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을 주도했던 오월광장 어머니회 소속 간부들은 국회에 진출하기도 하며 대선도 꿈꾸고 있던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1983년 9월 22일 비뇨네 과도정부는 '국민화해법'을 통과시켜 1973년 5월 25일부터 1982년 6월 17일 사이에 벌어졌던 정치적 동기와 목적에 의해 군부 또는 정치적 반대자에 의해서 저질러진 모든 형사적 범죄에 사면을 가했다. 이후 알폰신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사면법을 무효화시키고 대통령 직속 전국실종자위원회(CONADEP)를 설치했다. 그리고 1987년 군부와 타협책으로 '직무준수법'을 만들어 명령이행을 한 중령이하의 군인들의 직무상의 행동으로 저지른 범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30일 이내의 반대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고위 장교도 무죄로 추정했다. 그리고 이후 1989년 메넴 정권은 거의 대부분의 군인들을 사면했다.[6]

아르헨티나의 과거 청산 문제가 군부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결국 국가안보와 인간안보라는 두 명제사이에 국민적인 혼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군부의 영향력이 상존한 상태에서 민주이행을 했다는 점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지점이다. 이것은 마치 김영삼정부가 과거의 집권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 집권하여 결국 과거청산이나 학살 책임자 처벌 그리고 희생자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구제를 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6) 박원순, <세계 각국은 과거사를 어떻게 심판했는가 : 부당한 권력의 '불처벌(IMPUNITY)'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열사회보>> 98년 5월호 통권 제19호, pp. 11-13,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서울

남아공과는 달리 남미의 거의 모든 나라는 군부 중심의 구세력이 정치적인 실세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간정부로 권력을 이양하기 전에 이미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된 모든 부당한 국가권력 행사자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7]

따라서 남미형 과거청산 모델은 민주화 이행이 곧 과거 불법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단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 논리와 군부 또는 군부 출신의 정치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과거 군사정부하에서 피해받은 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의 문제는 정치권력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여론이나 시민사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각국의 민주이행이 이루어 졌다. 물론 이것은 자체적인 민중적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거 청산이 기존의 정치권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를 통제할 만한 대중적 정치력도 적었다. 따라서 여론에 밀려 민간정부가 과거에 자행된 초국가적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둘 때도 언제나 그것은 형식적이면서도 정치적일 수밖에 없었다.[8]

따라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형 과거 청산과제는 실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것은 입법, 사법, 행정 등의 분야를 과거 억압세력이 주도하는 선상에 있는 남아공과 다른 위치에서 과거 군부세력[9]이 입법과 사법을 그대로 장악하고 있는 남미의 상황을 고려하면 정권이 피해자[10]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그대로 묻어 두자는 말과 상통한다. 따라서 피해사례가 조사되어도 그것은 불처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유의해야 한다.

남미의 과거 청산에 핵심인 인권 가해자 즉 과거 군부 인사에 대한 처벌 문제는 곧 현 정치권력의 개편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처벌하지 않는 문제는 실제로 이 불처벌[11]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원회 소수자

7) 남아공에서도 백인정권이 정치적 타협을 하면서 이미 사면법을 공포하여 과거의 인종적 편견에 의한 국가공권력 남용자들에게 대한 사면을 단행했지만, 다수 흑인대중들이 힘에 기반한 협상에서 '국민통합과 화해촉진법'으로 대체되었다. 물론 남아공에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세력의 조직적인 반대를 제어할 수 있었으며, 남아공의 정치지형이 뚜렷하게 인종적인 갈등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후 선거에서도 대중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부각될 수 있었다. 반면 남미의 여러 나라에서는 구세력인 군부가 자신들의 초헌법적 행동에 대해서 법적 사면을 단행하고 이를 전제로 권력의 민간 이양을 하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 민간 정부의 성격이 군부가 아니라는 점과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군사정부와 차별될 만한 정치경제적인 대표세력이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한다. 예를 들어 칠레에서도 1978년 과거의 각종 실종사건에 대해서 사면령을 발표했다. 그리고 피노체트 집권기의 모든 범죄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종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칠레에서는 이 사면에 관해서 개정권을 갖고 있는 상원을 군부가 다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지 못하게 한다.

8) 알폰신 정부하에서 설치된 전국실종자위원회(CONADEP)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별 기구로 설치되어 자체에 소환권, 기소권이 없는 기구였다. 따라서 남미형 과거 청산에서 중요한 처벌의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남겨 두었다. 또 칠레의 아일윈 정권도 1990년 5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설치되어 법적인 구속력 면에서도 과거 군부들의 '사면조치'를 부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배상의 공정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이루어 졌다.

9) 최근 칠레의 피노체트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들은 사면을 전제로 과거의 진상규명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0) 과거 군부정권하에서 피해자들 즉 실종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세력 중심의 새로운 정치권력을 수립하지 못한 과정에서 과거를 청산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거 청산 의지와 관련해서 정치권이 주로 진상규명에 기초하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교훈을 도출하기보다는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기념사업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치세력화 하지 못한 정치적 반대자의 실력에도 문제가 있다.

11)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불처벌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그중에서도 1997년 8월 소수자보호와 차별방지 소위원회(Sub-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에서는 Guisses가 경제 · 사회 · 문화적 권리측면에서 불처벌의 문제를 보고(E/CN.4/Sub.2/1997/8) 있으며, Joinet는 이 문제를 시민 · 정치적 권리 측면에서 보고했다. (E/CN.4/Sub.2/1997/20).

Guisses는 이 최종 보고서에서 △ 노예, 식민, 인종차별, 제3세계의 문화적 약탈, 부채, 구조조정프로그램, 경제제재, 부패, 국가 재정과 관세 부정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인 침해 관행을 검토하고 △ 이들 관행의 결과 즉 개인적인 일할 권리, 충분한 양식권, 적절한 주거권과 교육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보건환경, 개발과 같은 집단적 권리의 침해를 분석하고 △ 이들 침해를 소멸시효가 없는 국제적인 범죄로 선언할 것,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에 관한 수용가능한 의정서를 채택할 것, 각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사항을 비준할 것, 공공문제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할 뿐아니라 분명한 국제적인 기준을 채택할 것 등, 이런 현상에 대응할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보고했다.

Joinet 보고서는 민간단체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수정된 첨부자료 2에는 '불처벌에 맞선 행동을 통한 일련의 인권보호원칙들'(Set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rough Action to Combat Impunity)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불처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비사법적 사문(査問)위원회의 위임명령(원칙 제7조); 혐의자에 대한 보증(원칙 제8조), 자신들을 위해서 조사하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보호(원칙 제9조), 비사법적 사문위원회의 보고서 발행(원칙 제12조), 사법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무(원칙 제18

차별방지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3. 두 사례에 나타난 과거청산의 문제점 검토

앞에서 남아공과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과정을 개괄해 보았다. 남아공은 과거청산 과정을 종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국민적인 화해를 이루는데는 실패했다고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많은 남미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 또는 퇴행하는 단계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두 나라의 과거청산 방향이 올바로 정립되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두나라는 모두 사법적인 처벌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못한 상태에서, 과거의 진실규명만으로 청산을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과거 청산에서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의 문제와 피해자의 배상문제는 또 과거 청산 과정에서 어떻게 위치지워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또 어떤 조건하에서 올바른 과거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재검토하려 한다.

먼저 가해자 처벌이 과거 청산 과정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검토해 보겠다.

남아공은 기본적으로 인종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과거 청산의 주된 과제였고, 이를 위해서 과거의 진상규명과 이를 바탕으로한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사면이라는 형태로 일괄처리하고 대신 가해자들의 자기고백과 사실적 진술을 요구했다. 따라서 남아공의 과거청산 과정은 그 목표가 국민적 화해와 통합에 있었다. 이런 남아공의 과거청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인종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흑인이 광범위하게 피해대상자였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흑인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로의 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백인정권과의 과거청산 방식에 대한 합의는 곧 과거 피해자 그룹이 권력의 담당 주체로서 국민적 통합의 의무를 남겼다. 따라서 정치적 과제로서 국민통합이 새로운 정치권력을 맡은 흑인집단의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남아공식 과거청산 방식인 '진실을 밝히되 처벌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피해자 집단이 광범한 다수를 차지하고 이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조건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보복적 수단으로서의 처벌문제는 개별 수준에서 인내해야 할 문제로 간주되고, 피해자 개인 수준에서는 결국 배상이나 명예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에서 본대로, 과거의 가해자 그룹이 법적으로 떳떳한 상태에서 이를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적인 통합 때문에 처벌하지 않고 사면한 것이 오히려 국민 화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아르헨티나형 과거 청산 방식은 군사정권이 기존 야당 세력과 정치권력을 공유하는 전제로 불처벌을 요구했고, 또 과거의 모든 사건을 정치적 또는 안보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이 다수라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한 사람들에 국한된 것처럼 보였다. 과거 청산의 주체는 주로 민간정부가 되면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정치권력이 과거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군부출신 정치권과의 긴장과 타협을 거쳐야 하는 정치권의 문제가 된다. 특히 불처벌의 문제를 줄기차게 주장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총체적으로 불처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민사회는 처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와 같이 아르헨티나에서 과거 청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통합이나 화해보다는 과거 군부의 처벌 또는 불처벌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시민사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커져 있지만, 권력을 담당할 정치세력으로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제도권들에게 과거 청산과제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과정은 주로 이를 제기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시민사회의 도전에 대해서 제도권의 응전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정부도 결국은 경제논리, 안보논리, 군부 재등장 논리 등을 들어 과거 청산 문제를 포괄적인 명예회복 수준에서 종결하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로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정치질서의 파괴를 요구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최근 오월광장 어머니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독자적인 대선준비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피해자들이 과거에 대한 진상 요구투쟁이나 처벌 요구투쟁에서 정치적인 독자적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배상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보자. 남아공은 이 배상문제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적절한 배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그 소요자금은 정부 출연과 민간 모금을 통해서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수많은 피해자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배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결국 경제적인 담보능력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남아공은 오히려 생산력을 높이는 과제를 흑인정권이 안고 있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자이면서 과거 아파르트헤이트의 가해자인 부자들의 자발적인 모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중에 기반한 정권은 사회복지정책의 강화나 재분배정책의 강력한 수행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기 쉽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아직까지 피해자의 배상이나 명예회복 문제는 과거 청산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불처벌의 문제와 진상규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인 조건에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남아공의 경우처럼 처벌의 문제를 사면을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된 상태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의 문제로 과거청산의 경로를 밟게 되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피해자와 과거 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의 정치적 진출이 종결되는 시점 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거청산 과정에서 피해자 배상과 명예회복 등의 문제는 완전한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 또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즉각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배상문제는 과거청산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권의 문제 또는 경제적인 재원의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 두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제도 정치권의 제도적인 타협만으로 과거청산의 중요한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과거를 극복하겠다는 비전이 국민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4. 외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올바른 과거 청산 방식

우리 나라의 과거 청산 과제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른 나라와 다른 경험이 있다. 과거청산의 시점에 대해서도 합의된 의견이 없을 뿐더러, 청산의 내용도 단순한 인권의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문제와 계급문제 그리고 민주주의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12] 또 청산할 과거 문제에 대해서 의혹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해서 공유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운동을 벌여 왔다. 특히 지난 96년 12월 16일 결성된 사회시민단체 15개로 구성된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과거청산 국민위원회)는 우리 나라의 과거 청산 문제를 사회적으로 전면적인 문제로 부각시켰다. 하지만 그 활동이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 과거청산 국민위원회는 그 방향을 △ 인권침해 진상규명 △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요구 운동 △과거 부정적인 제도와 법령에 대한 개폐운동을 주요사업[13]으로 잡았다. 그러나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미흡했다. 이 위원회 활동이 미흡했던 원인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과거 청산에 대한 내용

조), 사면에 관한 제한과 기타 조치(원칙 제25조), 배상 의무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원칙 제33조) 등이다.

12) 손호철 교수는 우리나라의 열사들을 두 분류로 하고 있다. 하나는 민족민주운동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과 그 과정에서 여론과 시대의 양심에 호소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서 분신을 한 열사로 구분하고 후자를 한국적 특징이라고 했다. ; 손호철, <민족민주열사 주장의 정당성>,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1997년.

희생자의 범위도 소극적으로 협의의 피해자라고 볼 때와 광의의 피해자 나눌 수 있는데 후자에 대한 연구나 규명은 아주 미약한 실정이다.

13) <<인권하루소식>> 1996년 12월 17일자, 1면, 인권운동사랑방, 서울

적 합의가 부족했으며 대중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에서의 실패가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다.

위의 두 나라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들의 정치적인 진출 또는 세력화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청산의 문제는 제기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특히 공식적인 진상규명이라는 과제는 언제나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사항에 있었지 어떠한 정치세력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학살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남미형 모델과 진상규명이라는 남아공형 청산모델을 조합한 우리의 과거청산운동은 현실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없었다. 게다가 시민사회단체들은 과거 청산을 통해서 얻고자하는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 또는 공공재(public goods)를 제공하지 못했다. 즉 무엇 때문에 과거 청산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 예를 들어 국민통합, 지역적 화해, 또는 민족통일, 계급적 갈등 해소 등과 같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과거의 것에 대한 청산을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거 청산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에 앞서 이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치세력 또는 정치적인 뚜렷한 흐름이 있어야 가능해 진다. 제도 정치권이 과거 청산 문제에 대해서 가해자의 처벌 문제나 진상조사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관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피해자의 즉각적인 구제와 명예회복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뚜렷한 과거 청산 운동은 정치권에 대한 요구 수준을 벗어나 이를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화[14]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

일각에서 이른바 '포괄적 청산론'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없고, '과거의 것'에 대한 방치를 전제로 미래를 정치권 중심의 '새롭게 시작한 것'으로 돌리자는 의견에 다름아니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은 전문적 능력의 문제나 제도적인 강제조사권 부여 등등과 같은 제도적인 문제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과거 청산 문제는 가해자의 처벌 문제나 진상 조사 문제는 뒤로하고 자칫 피해자 또는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의 문제로 흐르기 쉬운 상태에 있다.

진정한 과거 청산을 위해서는 청산할 과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정치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시키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14) 아르헨티나에서는 최근 인권단체 구성원들이 특정 정당에 편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인 진출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첨부자료 5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토론회 '이제 살아남은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중

● 발제

1. 민족민주운동과정에서 열사의 역할 및 의미

(문병란, 교수, 조선대학교)

2.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정치적 의문사와 진상규명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 **언제** : 1998년 9월 17일 · **장소** : 광주 가톨릭센타 7층 소회의실

· **주최** : 민족민주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호남지회,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호남지구(건)

· **주관** :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호남지구(건)

· **후원단체**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환경운동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남도연맹, 인권지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노점상연합회, 전남대 용봉동우회, 조선대 민주동문회,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청년연맹 광주지부, (사)5 · 18민중항쟁 부상자회, (사)시민생활환경회의, 겨레사랑청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대 민주동문회

민족만주화 운동에 나타난 열사의 역할 및 의미 고찰

문병란 (조선대 교수 ·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장)

1. 열사의 정의

열사라 하면 흔히 '물질의 유혹이나 불의의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절의를 굳게 지킨 사람' 을 일컫는 말이다. 봉건왕조 치하에서는 충신이라 칭송 받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충신열사란 댓구가 바로 그것을 입증한다. 예를 들면 신라시대 왜구에 볼모로 잡혀간 왕자를 구하러 갔다가 왜왕의 온갖 유혹과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신라의 신하로서 절의를 지키려다 왜왕의 악형에 숨진 박제상 같은 사람. 고려말 혁명에 의한 정권탈취를 꿈꾸던 이방원의 회유를 거절하고 선죽교에서 이방원 무리의 철퇴를 맞아 순절한 단심가의 정몽주. 조선조 왕위찬탈을 인정하지 않고 단종 복위를 꾀하려다 참형 당한 성삼문등 이른바 사육신 같은 사람들이 봉건왕조에 나타난 열사일 것이다.

그러나 참된 의미에 있어서 왕조의 충신과는 조금 다른 '민주시대의 열사' 란 근대 이후 외세와의 투쟁과정, 즉 일제시대 일본의 한국 침략사 속에 나타난 것이 민족운동과 관련된 열사가 아닌가 한다.

1905년 일제의 강압에 의한 을사보호조약 당시 그 협약의 부당성과 무효를 주장하여 혹자는 음독, 혹자는 자결로 그 의사 표시를 했고, 그 다음 해 그 조약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고종황제의 밀서를 가지고 당시 유럽주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려다 거절당해, 몇만리길의 노독과 충격으로 분사(일설엔 자결했다고도 한다)한 이준 선생 같은 분을 우리는 민족사에 길이 기억할 열사라 한다.

열사와 비슷한 말로 의사란 말이 쓰이는데, 이 말은 정의감이나 의협심이 강한 의인으로서 지절만 지키는 게 아니라, 협객과 같은 정의의 행동으로써(무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불의지인이나 불의의 단체에 대하여 힘으로 응징하여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 1909년 대한반도를 일제 식민지로 전락시키려 기도하는 이토오히로부미를 하얼빈 역두에서 육혈포로 저격 사살한 안중근 선생이나 대한임시정부 백범 김구주석의 명을 받아 대한반도와 중원침략을 꾀하는 일제의 침략군 대장 히라까와요시노리 등 적장을 폭탄으로 응징한 윤봉길 선생 등을 의사라 부른다.

그렇다면 열사와 의사의 공통점은 애국애족을 표방하여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면서 적이나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고 절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민족수난을 많이 겪은 나라로서 수많은 열사와 의사·의병을 가지고 있다. 의병은 정의의 군대로서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자위적 성격의 군대이다. 조선조말기 일제 침략에 맞서 수많은 의병이 궐기하였고 그 의병장만도 수백 명에 이른다. 평민의병장으로 구한말 신돌석이나 안규홍은 유명하며 위정척사파인 면암 최익현은 의병장으로서 체포되어 대마도에 유배되어 왜인의 음식을 거부해 굶어죽었다. 그가 굶으면서 쓴 우국시는 일종의 애국심을 노래한 지절시의 일종이다.

이와는 달리 민족의 내부 모순과의 싸움에서 희생당한 열사나 의사를 생각할 수 있다. 민족의 내부 모순이란 지배계급의 폭정에 대항하여 싸운 인권운동, 계급타파 운동과 관련되는데 이것은 봉건왕조에선 민란으로 기록하지만 큰 안목으로 보면 민족운동·민주화운동의 시발이 되는 것이다. 동학혁명 같은 것이 그것인데 전봉준 선생은 당시 동학란의 수괴로 몰려 역적으로 처형당했지만, 오늘날의 개념에서는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민중을 도탄에서 구하고자 한 의혈투쟁으로 볼 수 있어 녹두장군·전봉준대장으로 호칭하여 그 이름을 기리고 있다. 민족은 그 민족마다 내적 외적 모순이나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왜적과 싸운 것이 외적 모순이라면, 지배계급의 폭정과 싸운 것은 내적 모순과의 싸움이다. 을사조약의 원흉이고 오적의 한 사람이인 당시 외무대신 이완용을 명동 성당에서 죽이려다가 실패하여 일제에게 매맞아 악형으로 숨진 이재명선생은 내적 모순인 민족반역자를 처형하려 한 것으로 그 장한 기개는 외적 모순의 원흉인 이등박문을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그 행위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봉건왕조가 깨어지고 근대 이후 민주주의시대에는 그 열사나 의사가 단순히 외세와의 싸움에서 희생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적인 모순(계급모순이나 독재 등)과의 싸움에서 희생당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애국투사는 외적과의 싸움에서 쉽게 식별이 되지만 내부적인 싸움에선 적과 동지의 개념이 혼란되어 그 의의나 가치판단에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싸움은 내적으로 좌우익이 있어 그것이 1945년 이후 남북분단으로 이어지면서 역시 민족민주운동자에 대한 역사적 판단도 이념적으로 갈라지고 있다. 애국애족등 민족운동에도 좌우익에 따라 남북이 역사에 기록을 달리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불행 속에 1945년 이후 각종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마다 수많은 사람이 장렬한 죽음을 맞았다. 여순반란사건, 제주4·3항쟁, 거창양민학살, 수많은 빨치산 희생자, 4·19혁명, 유신시대의 희생자, 5·18의 희생자 등 굵직굵직한 사건만도 엄청나다. 여기서는 분단하의 박정희유신정권, 전두환·노태우 군부정권 30년을 배경으로 그 사이에 나타난 민족민주화 투쟁과 거기에서 희생당한 열사 340여명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 군부정권과 민족민주화운동

6·25동란 한국전쟁은 분단을 완전 고착화시키면서 첨예한 대결구도를 구축했다. 남쪽에는 멸공·북진통일의 기치아래 자유당 리승만 독재정권이 수립되었는데 그의 종신 대통령을 꿈꾸는 야심 속에서 정치적 폭압이 시작되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진보당 사건, 3·15부정사건 등 자유당 정권의 말기적 단말마 속에서 결국 3·15부정선거 규탄 데모가 마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최루탄을 맞고 죽은 김주열(金朱熱)은 꽁꽁 묶인 시체로 바다에 떠올랐고 그 무언의 절규는 결국 4·19혁명으로 번졌다. 4·19의 일등공신 열사가 바로 그가 아니겠는가. 4·19의거는 정식 혁명으로 인정되었고 국립묘지화 되어 광복 후 내부 문제로 일어난 시민혁명이 된 셈이다. 자유당 정권의 억압을 물리치고 터져나온 4·19는 6·25이후 억눌린 자유 민주주의와 민주의식의 발로로 독재자의 눈으로 볼 때는 민주화가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한 유화책으로 민주화에 주력한 장면정권을 무능하고 위험한 개혁으로 간주한 반민주 반민족적 극우 군사정권이 쿠데타로 등장하였다. 4·19로 인하여 모처럼 싹튼 민주의 싹은 꺾이었고 반공을 국시로 삼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유보한다는 군부독재정권, 이른바 박정희 유신독재가 시작되었다. 그날부터 이 땅의 감옥은 정치범으로 만원을 이룬다. 바야흐로 민족민주운동의 열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관제공산당도 많이 생겨난다. 역시 종신을 노리는 박정권은 정적과 진보적인 민주세력, 수많은 학생들을 탄압하고 가둔다. 통일세력을 용공세력으로 조작하기도 한다. 반공법으로 처형당한 사람에 대한 역사적 위상은 먼 훗날로 미룰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민족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다 희생되었다는 것은 모두 민족열사의 계열에 속하게 한다. 친북 용공 분자로 몰린 표면상의 죄명이 그 진실성이 유보된 채 수없이 역사의 혼미 속에 표류하고 있다. 그만큼 남북의 이념적 대결은 커다란 희생은 필요로 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반민주적 박정희 유신정권은 인권유린이 극에 달하면서 부마항쟁에 부딪쳤고 그것을 무력진압 했으나, 곧이어 10·26의 총성으로 일단 막을 내린다. 박정권을 종식시킨 그의 측근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박정희 저격은 그 성격 규명이 매우 어려워진다. 당시 민중들의 입에선 박정희를 사살한 김재규를 안중근의사의 이등박문 저격날짜와 똑같아 흔히들 김의사라 하였다. 그를 안의사와 비교한 것이다. 그가 대통령을 저격한 범죄자인가. 이것은 미래의 소관이다. 아무튼 근자의 박정희 신드롬은 잘못된 것이고 유신을 종식시킨 것은 중대한 고비요 전환점이였다. 그러나 역사의 뜻은 더 많은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으로 이어지는 18년의 장기 군부독재 정권으로 이는 80년 5·18로 절정을 이룬다. 반민족 반민주 반인권 정권이다 보니 그 모순이 너무 팽배하여 작고 큰 희생자가 수백 수천을 헤아리게 된다. 광주에서 대량학살은 혁명묘역 망월동이 등장하면서 이 나라는 민족민주열사가 감옥과 공동묘지를 가득 채우게 된다. 4·19에서 시작된 민족민주 열사의 대량 속출은 1980년 5·18을 겪으면서 그 봉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계속된 투쟁으로 이어져 과도적 문민정부를 창출했고, 그로 인하여 5·18이 법정으로 나아가 마침내 폭압과 비리와 살인정권을 세운 전직 대통령을 재판대에 세워 중형을 구형한다. 이 과정에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의 뜻이 담긴 5·18희생자 보상이 이루어져 광주 시민의 승리로 끝난다. 특히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지난 18년 동안 주도적 역할을 한 이 지역의 투쟁적 에네르기는 그것이 곧 광주 5·18의 민주정신이었다. 18년 동안의 피흘림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열사, 애국혼을 지닌 민주투사들이었다. 제국주의의 잔재가 분단이었고 그 분단을 통해 안보제일주의를 부르짖는 군부독재정권이 판을 쳤다면 그에 항의하여 싸우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희생당한 분들은 모두 민족민주화 투쟁의 선봉으로 그 숭고한 정신이 열사의 개념이나 칭호에 걸맞는 것이라 여겨진다.

3. 열사의 투쟁과정 및 죽음

전 단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열사들은 그 장엄한 투쟁으로써 역사의 모순을 해결하는 직접적인 촉매작용을 했다. 1960년대 마산의 김주열의 죽음이 바로 그러했고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광주의 죽음이 바로 그러했다. 광주5·18 도청 앞 분수대에서 민주성회를 주도한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은 당시 전사하지는 않지만 몇 년후 감옥에서 장렬하게 옥사했고 도청의 시민군 본부 탈환시 그에 항거하다 전사한 윤상원의 죽음이 그 피 위에 세운 군부 독재정권을 붕괴시켰다. 87년 박종철·이한열의 죽음이 6월혁명을 가져왔고 그 군부정권을 종식시킨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우리는 열사로 찬미하며, 그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민족민주화운동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열사의 죽음과 투쟁은 어떠하였는가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보자.

(1) 시위투쟁 : 시위는 민주주의에 있어 법률로 보장된 저항권이다. 이 저항권(Right of resistance)은 근대 시민적 민주주의에 선 최고의 권리이며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다. 반농담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는 학생들의 '돌멩이' 와 '화염병' 이 지켰다고 한다. 그것은 최루탄(그 종류만도 어마어마하며 그 발사총을 위시하여 최신식 지랄탄 다탄두 화염방사기식 발사차등 다양하다)의 위력을 막기 위한 대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위라기보다 일종의 전투나 혈전을 연상시킨다. 이런 시위 현장에선 쌍방이 모두 희생자가 나오기 마련이다. 그 시위 현장의 희생자는 김영삼 문민정부하에서까지 일어났다. 조

선대의 류재을이 그 예가 된다. 이전에는 이한열·강경대를 필두로 무수한 열사가 탄생하였다. 그 숭고한 희생자에게 열사 칭호를 부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그들의 죽음은 민주화로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5·18의 희생자도 바로 이러한 저항권을 통한 헌정수호, 애국애족의 투쟁을 전개하다 전사한 것이므로 바로 열사요, 민주영령인 것이다.

(2) 옥중투쟁과 옥사 :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치하나 독재 폭정 하에선 수많은 사람이 검거 투옥 옥살이를 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도 수백 수천을 헤아리는 양심수 양산의 나라였다. 감옥의 뜰이 풀이 무성해야 태평성대란 말이 있다. 우리 나라는 그와 반대로 감옥의 문턱이 닳아질 정도로 감옥이 만원인 나라이다. 한 해에 3백명을 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난 6개월만 해도 노동자·학생 등 구속자가 2백명을 육박하고 있다. 0.5평의 좁은 독방, 문인 지식인에겐 고문이나 다름없는 집필금지, 충분치 못한 식사, 건강을 해치는 환경, 전향 등을 강요하는 정신적 압박에 의한 고통 등 생명을 병들게 하고 단축시키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지난 80년대 광주항쟁의 주범으로 감옥에 갇힌 박관현은 식사에 섞여오는 나팔꽃씨 파동으로 식사를 거부하는 옥중투쟁(단식) 끝에 결국 옥사한다. 나팔꽃씨가 생명의 표상인 정력을 감퇴시킨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것은 아니나 영원한 미스테리로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을 던진다. 왜 밥에다 나팔꽃씨를 넣는가. 일제 시대에도 적의 감옥에서 약명 미상의 독물을 주입시키는 주사를 맞고 죽었다는 시인 윤동주나 이육사 모두 옥사한 분들이다. 옥에 갇힌 자가 옥사하지 않는다 해도 그 후유증으로 병을 얻어 석방 후에 죽는 것도 일종의 옥사가 아닐까 싶다.

(3) 수배와 검거 구속 : 누구나 수배령이 떨어지고 현상금이 붙으면 그날부터 그는 사는 것 같지 않는 삶을 산다. 즉 모든 자유와 삶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숨어사는 고통의 쓰라림은 겪어 본 사람만이 아는 아픔일지 모른다. 그런 도피 생활을 몇 달 몇 년을 겪었다 생각해 보라. 육신과 정신이 모두 병들게 되며 정상인의 경우를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도 뻔하다. 광주항쟁으로 도피한 이성학장로는 도피처 천막 속에서 운명했고 김천배장로는 도피생활로 지병이 악화 운명한다. 그 외에도 광주항쟁 구속자 중에는 석방 후 지병을 얻거나 정신병으로 10년, 20년을 고생하다 결국 죽은 경우가 허다하다. 금번 광주에서 서거한 김영철동지, 박효선동지 모두 그러한 희생자이다. 앞으로 그러한 비극적 죽음은 계속될 것이 너무도 뻔하다.

(4) 고문의 후유증에 의한 옥사 : 박종철의 경우 신문조사 과정에서 강제로 조작된 죄상을 자백 받기 위한 비민주적 살인적 고문으로 치사케 한 옥사의 예가 될 것이다. 민주시대에선 수사를 위한 고문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 살아 남은 유명인사 중에도 고문으로 인하여 치명적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도 많다. 고문으로 그 당시 죽지 않는다 해도 그 후유증에 의하여 출옥 후 사망한 경우는 너무도 많다.

(5) 분신·자결·음독 : 80년대 말기 6월항쟁을 전후한 시기 이 땅에는 독재와 인권탄압에 항거하는 분신이 잇따랐다. 인명의 소중함을 모른바 아니지만, 그 강도 높은 저항의 방법은 구한말의 애국열사 민영한, 황 현 등 무수한 전례가 있고 그 중에도 국제적 무대 위에서 행한 이준열사의 분사(혹 자결이라 주장)등 모두 죽음으로 진실을 밝히려 항거한 예가 될 것이다. 이 분신이나 자결 등의 방법을 택한 비장한 저항은 그 누구도 그것을 비하하거나 나무라지 못할 것이다. 유일한 목숨을 던져 항의한다는 것은 그만큼 장엄하고 지고한 결단이기 때문이다. 또 간접적 고통을 가해 자살케 한 경우도 있는데, 흔히 군대나 어떤 집단의 탄압방법에서 이런 죽음은 흔했다. 인간은 궁지에 몰리면 최후의 저항수단으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의문사·실종사 : 마지막으로 의문사와 실종사를 들 수 있다. 수배중인 사람이 의문의 죽음으로 그 시신이 버려진 경우를 의문사라 할 것이다. 조선대의 이철규가 그 예가 된다. 수배 중이던 그가 검문을 받는 중 도주한 뒤로 소식이 뚝 끊겼다 일주일 후 험한 몰골로 그 시신이 수원지에 익사체로 떠오른다. 이 의문사를 두고 6개월간의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 익사로 규정하고 장례를 치른다. 그러나 10주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그 의문의 죽음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으며 진실이 규명되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대 총학생회장 이내창의 죽음 등 그 외에 수많은 죽음이 아직도 의문 속에 묻혀 있다. 대체 죽인 자도 죽을 이유도 없는데 왜 사람이 죽는가. 죽인 자도 없고 자살도 아닌데 왜 살인자는 없는가. 이 의문이 해결되는 그날이 와야 이 땅의 진정한 민중해방과 민주화는 이룩될 것이다.

그 다음은 실종사다. 시체도 흔적도 없이 증발된 죽음, 그 시체가 암매장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광주항쟁 당시 실종되어 그 죽음이 인정된 경우만도 기백을 이룬다. 앞으로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의문사·실종사를 확인하여 그들을 신원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산 자의 몫이다. 그것이 곧 민주화이다.

이상과 같이 대강 분류한 바 그 열사의 투쟁과 죽음이 얼마나 처절한가 알았을 것이다. 바로 이 열사들의 죽음과 피흘림이 바탕이 되어 우리가 누리는 인권과 자유가 그리고 이른바 국민정부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열사들은 죽었으되 죽지 않는다. 산 자의 투쟁과 그 정신 계승 속에서 부활한다. 성경에서는 의인이 열 사람, 아니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회는 멸망하지 않는다 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권리를 누리며 자유를 획득한 것은 열사들의 죽음과 피가 얻어낸 성과이다. 자유는 열사들의 피를 먹고 자란 것이다. 5·18의 승리도, 국민의 정부를 얻어낸 50년만의 정권교체도 모두 열사들의 피 위에 일궈낸 성과이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모두 열사들의 죽음 속에서 부활하는 자유의 정신이다.

4. 민족민주열사들의 현실적 위상

민족운동 민주화운동 과정에 나타난 열사들의 투쟁과 죽음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의 그들은 커다란 역할과 숭고한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현실 속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대다수의 영령들은 그 대접이나 참다운 위상은 커녕, 아직 사인도 규명되지 않았거나 범법자의 누명마저 벗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 중 4·19나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어 법정 기념일이 된 것은 근현대사의 아픔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지만 그와 관련이 된 무명의 전사들, 학생 노동자 시민들은 아직 변변한 위령탑 하나 없고 죽어서도 그 안식처 하나 얻지 못하고 있다. 의문사나 실종사는 그 증거나 증언이 부족하고, 거기다 망각의 피안으로 사라져가는 세태의 무심함이나 당국의 무성의, 교묘한 기피작전으로 인하여 역사의 심판에 맡겨지는 형편이다.

그 가족들 중심의 조그만 협의회로서는 심히 역부족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 전문적인 수사와 특검제를 도입, 개혁작업 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중대한 결단은 국민의 정부가 좀더 강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투쟁한 열사들은 망각 속에 묻히고 그 성과물은 정치적 모리배나, 오히려 역사 속에서 진실과 정의를 짓밟은 반동들이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금후 산 자들의 몫으로 남은 영령에 대한 진정한 신원은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 잡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다. 이러한 불의의 변고가 없는 그 참다운 민주 공동체 건설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의 그날까지 열사가 흘린 값진 피의 대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보다 더 가열찬 정신계승 투쟁이 요청된다. 유가협·민가협을 중심으로 민민운동의 제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국민의 정부의 소신 있는 개혁을 촉구하자.

정치적 의문사의 해결방향에 대해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1. 인권의 관점에서 본 의문사

의문사는 말 그대로 의문의 죽음을 당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죽음들을 일컫는 말이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게 한 배경과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죽음은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도 진행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런 죽음으로 인해서 비록 타살의 의혹이 있손 치더라도 그것은 대체로 심증이나 정확적 증거만이 존재할 뿐이며, 이로 인해 법정에서도 진실을 밝히기가 어려운 죽음들이다.

정리하자면 의문사는 심증이나 정황상 타살의 의혹이 매우 짙으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 있는 죽음을 통칭한다.

이런 의문사는 정치적 의문사와 일반 의문사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의문사의 경우는 그 배경이 현저히 정치적 의도를 짙게 깔고 있는 것들로 과거 반독재 민주화 투쟁, 반미 자주화투쟁, 통일투쟁을 전개하던 운동가들에게 가해진 것들이다. 이들의 죽음에는 늘 권력의 어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일반 의문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인권침해의 구조가 낳은 것들이다. 경찰이나 군대가 다반사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왔던 상황에서 이에 의한 타살 혐의가 짙지만, 자살 등으로 위장되어 있는 경우다. 일반 의문사의 경우는 권력기관의 일상적 비민주성이 무차별적으로 누구나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문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다.

어느 경우나 경찰·군·안기부(80년도 이전 중앙정보부)·기무사(전 보안사) 등 일선에서 국민들의 인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권력기관이 이런 의문사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지만, 의문사는 죽음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죽음이 발생한 뒤 이를 규명할 책임이 있는 기관에서 책임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혔다면, 의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책임 당국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가해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여 대체로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태도로 일관하게 된다. 여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군에서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가 과학의 이름으로 당국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런 이유로 대체로 의문사 사건은 법정에 가기 전에 검찰 단계 수사과정에서 좌절하게 되며, 이로 인해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의문사는 생명권을 악랄하게 짓밟는 인권침해의 극단적인 형태다. 인권의 관점에서 의문사는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인간의 생명을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또는 권력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시킨다는 일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음으로 의문사는 죽음 당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체로 수사기관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당사자를 자살자로 위장하게 되는데, 이는 죽임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죽은 당사자에게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 된다. 이는 죽은 자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유족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유족은 가족의 죽음에 대해 일차적으로 그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들도 언론보도를 통하든 법정을 통하든 그 죽음의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의문사는 그 진실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매우 깊은 절망과 공포를 낳게 된다. 유족들은 그 절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자살이나 병사하게 되기도 하거니와 이는 의문사로 인한 또 다른 죽음을 야기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의문에 쌓인 죽음을 접하면서 누구든지 의문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갖게 되며, 불의와 부정을 보고도 이에 대해 침묵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권리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굴종적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

넷째, 결국 이를 통해 국가권력이 가해자를 보호하게 됨으로써 인권의 신장을 가로막게 된다. 국가권력이 나서서 인권침해를 일으킨 장본인을 국가의 이름으로 보호하게 되어 폭력성을 구조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서 국가권력의 민주화나 '법에 의한 통치'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인권신장의 중대한 장애물로 국가권력이 기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이러한 살해는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심각성이 있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에 의해 살해되는 사람은 대개 국가권력을 감시, 통제, 폭로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살해는 권력을 통제하려는 국민의 눈, 귀, 그리고 수족을 자르는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국가권력을 감시·통제하려는 일반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살해는 사실상 전국민에 대한 통제이며 억압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 활동가의 죽음은 일반 사건·사고에 의한 죽음과는 질적으로 다른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복지국가 운운하는 이 시대에 국가권력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국가권력의 무제한적이며 생명경시적인 행사가 곧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비천화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의 생명침탈은 그 건수의 다소에 상관없이 아주 심각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희생자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뿐 아니라, 국가권력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장치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러하다.(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엮음,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210쪽, 서울, 1997)

따라서, 의문사의 해결은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70년대 이후 정치적 의문사의 현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에 접수되어 있는 70년대 이후 의문사는 42건이고, 이중 절반 정도는 정치적 의문사로 분류된다. 여기에서는 일반 의문사의 경우는 배제하고 정치적 의문사의 경우만을 문제삼기로 한다.

유가협에 접수된 70년대 이후 정치적 의문사가 전부는 아니다. 유가협에 접수된 건수는 유가협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접수된 것일 뿐이다. 더욱 많은 경우의 의문사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묻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따라서, 정치적 의문사가 20여건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는 유가협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볼 수밖에 없다. 또, 유가협에 접수된 사건들 중에서도 일반 의문사인지 정치적 의문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우선 확실히 정치적 의문사로 볼 수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해보자.

<사건 발생에 개입한 기관별 분류>

- 안기부(옛 중앙정보부) : 최종길(72), 장준하(75), 김성수(86), 이내창(89), 박창수(91)
- 경찰(대공분실 포함) : 우종원(85), 신호수(86)
- 군대(보안사 포함) : 임기윤(80), 정성희(82), 이윤성(83), 김두황(83), 한영현(83), 최은순(83), 한희철(83), 이이동(87), 정연관(87), 최우혁(87), 김용권(88),
- 기타 ; 정경식(회사와 어용노조·87), 김용갑(학원의 사주에 의한 조직폭력배·90), 이덕인(인천시 당국이 고용한 철거폭력배 또는 경찰·95)
- 2개 이상의 기관의 개입 : 이철규(89)

<연도별 발생 건수>

72년-1건, 75년-1건, 80년-1건, 82년-1건, 83년-5건 85년-1건, 86년-2건, 87년-4건, 88년-1건, 89년-2건, 90년-1건, 91년-1건, 95년-1건

<신분별 분류>

- 학생(재학중 또는 직후 군입대자도 포함) - 14건
- 노동자, 빈민 - 4건
- 군인 - 1건
- 재야인사 - 3건

위의 분류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의문사가 명확히 규명된 다음에야 그 일차적인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사건에 일차적인 개입은 개별 기관이 작용했겠지만, 2차적인 개입은 거의 모든 수사기관, 정보기관이 개입한다. 특히 안기부의 경우는 경찰에서 발생한 사건이란 하더라도 사건 발생 직후부터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의문사로 남을 뻔한 사건인 박종철 열사의 경우를 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즉,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주도했던 안기부가 경찰 대공분실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검찰마저도 통제한다.(당시 안기부 책임자는 현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임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안기부는 거의 모든 의문사에 직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또, 의문사를 일차적으로 진상 규명할 책임이 있는 검찰당국의 책임도 중대하다.

위의 분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의문사가 정치적 반대세력 거의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전두환 정권 시기에 정치적 의문사가 집중되어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전두환 정권 시기가 박정희 정권 때보다 민주화가 되었다는 것이기보다는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거세었다는 점의 반증이다. 광주학살로 등장한 전두환 정권은 정권의 정통성을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폭압적인 통치로 일관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는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족민주운동의 활성화가 바로 80년대에 정치적 의문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이유일 것이다(조작간첩 사건도 80년대에 집중되었다).

3. 정치적 의문사의 해결을 위한 노력

정치적 의문사를 비롯한 과거 인권침해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 제대로 된 과거청산 노력 자체가 지금껏 거부되어 왔던 정치상황에서 정치적 의문사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기본적으로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재야민주단체들에 의한 다각적인 투쟁들이 전개되었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의 처벌도 이어질 수는 없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경우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폭발성 사안에 대해서 권력 전체가 나서서 미봉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도리어 국가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는 민주인사나 세력들, 유족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국가권력의 의문사에 대한 입장은 수사결과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고, 자살로 결론을 짓는 것이었다. 자살로 결론짓기 위해 법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였고, 권력의 억압에 눌린 법의학자들은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법의학적인 소견을 발표한다. 이를 근거로 수사기록은 짜맞추어지고, 수사는 종결된다. 비록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한다고 해도 몇 번의 추궁 뒤에는 사건의 진전을 이뤄낼 없었다.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80년초 군대에서 강제 징집된 학생운동가 6명이 녹화사업 뒤에 사망한 사건이 알려지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84년 전국의 대학에서 시위와 공대위 활동은 군 당국의 공식적인 녹화사업 종결 발표를 끌어내게 된다. 물론 이후에도 군에서 녹화사업이 진행되었다는 흔적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 대표적인 의문사로 일컬어지는 우종원, 김성수, 신호수사건에 대해 재야민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한때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의문사의 해결을 위해 투쟁한 것은 유가협에 의해서였다. 88년도의 상대적으로 넓어진 정치적 자유의 공간을 활용하여 135일간 농성을 전개하면서 의문사 문제는 당시 5공특위에도 상정되었다. 그후 유가협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문사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유가협의 노력은 농성과 사건 발생 직후의 투쟁에 결합하면서 지속되었다. 93년에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의문사 문제를 알려냈고, 94년에는 10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청원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성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유족들 개인적으로도 집요한 권력기관의 협박과 회유, 감시를 이겨내고 진실규명을 위한 비타협적인 자세를 견지해냄으로써(10년 넘게 유골을 장례지내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의문사가 역사 속에 묻힐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의문사 문제가 지금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유가협과 민주세력에 의한 줄기찬 노력은 개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나 책임자의 처벌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과거 80년대와 같은 정치적 의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막는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 의문사가 발생하고도 여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권력은 지금도 정치적 의문사를 계속 양산해냈을 것임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 민주화, 인권신장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해결 방향

현 정부 들어와 의문사 문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정부가 의문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일이다.

의문사의 해결방향을 둘러싸고는 몇 개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한겨레신문 98년 9월 15일자 참조)

먼저, 특별법에 의한 해결이다. 최근 유가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뢰해 초안이 작성되고, 국회의원 58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특별법을 청원했다. 이 법안은 별도의 조사기구를 구성해 조사기구가 신고를 받아 사건 조사를 벌이고, 이를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은 이를 기초로 재수사를 하여 기소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 중 가장 강력한 해결 방안이다.

다음으로는 여당과 민간이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법적인 권한이 없는 조사기구의 한계성 때문에 유가협이나 여당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세 번째 방안은 정부와 여당 측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인권위원회에 의한 해결 방안이다. 김대중 정부가 100대 과제로 선정하였고, 유엔이 권고하고, 오는 12월 10일 출범할 것이라고 하는 국민인권위원회 안에 한시적인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다룬다는 것이다.

현재는 특별법에 의한 해결을 원하는 유가협측과 국민인권위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정부와 여당의 안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법에 의한 해결책은 가장 나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으로서는 받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특별검사제 유보에서 보여지듯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자신들의 권력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수족처럼 부려야 하는 경찰, 안기부, 검찰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위원위 안을 유가협 측이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강 드러난 정부의 국민인권위 안은 유엔과 민간에서 요구하는 수준과는 멀다. 독립성이 보장된 특수법인이라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강제조사 내지는 수사권이 보장되지 않는 권고권을 갖는 국민인권위가 권력기관의 범죄행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